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 업 설 명 자 료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국가기술표준원)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무역위원회

2015.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무역위원회 ····· 1

<일반회계>

(1) 무역구제지원사업 ····· 4

2.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15

<일반회계>

(1)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 18
(2)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 23
(3) 자유무역지역관리 ····· 32
(4)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 37

<지특회계>

(5)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 41
(6)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 47
(7)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51
(8) 주요 기반시설지원 ····· 55
(9) 기타 기반시설지원 ····· 59

2. 국가기술표준원 ····· 63

Ⅰ. 세입(혁특회계) ····· 65

(1) 건물매각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68
(2) 토지매각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69

Ⅱ. 세출 ····· 71

<일반회계>

(1) 국가표준활성화 ····· 74
(2) 국제표준활동지원 ····· 90

(3)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R&D) ····· 101
(4)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 113
(5) 기술표준정책 ····· 121
(6) 안전제도기반조성 ····· 127
(7)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 136
(8)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신규) ····· 145
(9)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152
(10)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167
(11) 신기술제품인증 ····· 176
(12)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사업 ····· 186
(13) 표준・안전기반구축(R&D) ····· 199
(14)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 213
(15)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226
(16)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231
(17)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 238
(18)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 260

무역위원회

무역위원회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1,465	1,397	1,327	△70	△5.0
○무역구제지원사업	1,465	1,397	1,327	△70	△5.0

무역구제지원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무역구제지원사업	1,465	1,397	1,327	△70	△5.0

* 사업코드 : 110 - 113 - 1200 - 1233 - 301

* 담당자 : 무역조사실장(공석), 무역구제정책과장(정경회, 044-203-5850), 사무관(오재열, 585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0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2. 사업목적

○ FTA 확대 등 시장의 지속적 개방에 따라 덤핑·지재권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 증가가 우려되는 여건에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무역구제기능을 활성화하여 공정한 국제무역질서 확립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무역구제 진흥 : 290백만원

- 중소기업 등의 무역구제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학술세미나 등 홍보 및 미래 무역구제 인력양성을 위한 논문대회·경연대회 개최 등

* 무역구제지발간 및 학술세미나(80백만원), 논문대회 및 경연대회(80백만원), 홍보(80백만원), 간담회 및 기타 행사비 등(50백만원)

②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390백만원

- 최근 FTA확대 등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 및 무역피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국내산업 보호

* 감시·발굴 등 조사활동 및 전문가 자문료(130백만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80백만원), 무역조정지원 피해진단(40백만원), 법률자문료 등(140백만원)

③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 : 300백만원

- 산업피해·덤핑·불공정무역행위 관련 국내외 조사제도 연구, 조사사례별 이슈 및 시사점 분석 등 무역구제제도 연구

* 산업경쟁력 조사(100백만원),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40백만원), 무역구제제도 연구(160백만원)

④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 347백만원

- 양자간·다자간 무역구제 협력회의 참여,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참여 및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등 국제협력행사 개최

*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행사 개최(190백만원), FTA 무역구제분야 협상 및 회의 참석(107백만원), 직원교육 및 해외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등(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FTA 등 시장의 지속적 개방으로 관세율이 인하되고 무역량(수입)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덤핑·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의 증가 우려

- 불공정한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역구제지원사업의 예산지원 필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등

○ 특히, 기반이 열악하고 법적 대응능력이 미비한 국내 중소기업이 덤핑 등 불공정 무역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무역구제제도의 확산 및 실효성을 강화 위한 간담회·세미나 등 홍보, 산업피해 진단,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판정 및 관련 정책 연구 추진 필요

○ FTA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심의 예산 확보 필요

○ 국내·외 기업 간 특허권 분쟁 등과 같은 지재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수요 증가가 예상

-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을 위한 현지조사, 외부전문가 감정, 기술설명회 등의 소요예산 지원 필요

- 업종별 협·단체 등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실태조사와 상담, 감시 및 조사, 자문기능 강화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무역구제지원사업	1,465	1,397	1,327	△70	△5.0
▪ 무역구제진흥	427	400	290	△110	△27.5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	220	250	390	140	56.0
▪ 산업경쟁력 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	498	400	300	△100	△25.0
▪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320	347	347	-	-
□ 비목	1,645	1,397	1,327	△70	△70
▪ 일반수용비 (210-01)	761	761	623.5	△137.5	△18.1
▪ 위탁사업비 (210-15)	-	-	190	순증*	-
▪ 국내여비 (220-01)	11	10	20	10	100
▪ 국외업무여비 (220-02)	97	98	102	4	4.1
▪ 사업추진비 (240-01)	8	8	11.5	3.5	43.8
▪ 연구개발비 (260-02)	498	400	300	△100	△25.0
▪ 민간경상보조 (320-01)	90	120	80	△40	△33.3

* '14년 결산검토시 예결위 권고에 따라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사업비를 위탁사업비로 신설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덤핑,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우리 수출업계의 대응능력 제고

- FTA의 피해를 사전에 진단하고 신속히 지원하는 선제적 무역피해 방지체제 구축, FTA 시대에 맞는 국제협력 전략의 재정비

○ 국내 산업피해구제 수준의 합리화 및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구제제도 운용

- 특허·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커지는 새로운 무역구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기법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추진

○ 특히 사업적 기반이 열악하고 법률적 대응 능력이 미비한 국내 중소기업이 불공정 무역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3.97	▪ 무역구제진흥(4.0),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2.5),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4.0),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3.47)
'16	13.27	▪ 무역구제진흥(2.9),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3.9), 산업경쟁력조사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3.0), 전세계 무역구제기관간 협력(3.47)
'17	12.34	▪ 무역구제지원사업 12.34억원
'18	11.60	▪ 무역구제지원사업 11.60억원
'19	11.02	▪ 무역구제지원사업 11.02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제6조(직권조사), 제25조(산업경쟁력영향조사) 등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등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무역조정 지원기업의 지정 등)

○ 추진경위

- 미국 ITC의 개별산업 경쟁력조사 및 무역정책연구(미관세법332조)를 벤치마킹하여 '02년 산업경쟁력 조사 예산 확보(3억원) 및 자동차변속기 등 4개 과제 조사
- '05년 제5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 개최
- '06년 무역구제포털시스템 구축
- '07년 지재권 침해조사 기능 확대방안 및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 보고
- '08년 지재권 침해 조사 활성화 방안 발표
- '09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 강화사업 수행
- '10년 EU의 아국산 폴리에스터강력사 반덤핑조치 무혐의 판정
- '11년 대학(원)생 논문발표대회, 무역구제경연대회 개최
- '12년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 현행화
- '13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강화를 위한 무역위·경찰청간 공조체제 강화
- '14년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 무역위원회·WTO 공동 개최
- '15년 덤핑 및 지재권침해 등 조사자료 DB구축 및 홈페이지 공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무역구제지원사업	11.5	12	14.7	13.97	13.2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 경상비로 분류되어 정부 전체 예산절감(10%) 차원에서 99백만원(8.3%) 불용 및 무역구제제도 연구개발비 15백만원 이월

○ 2014년 : '14년 하반기까지의 WTO 분쟁사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비 12백만원 이월 및 집행잔액 8백만원 불용

○ 2015년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2	-	-	12	10.86	0.15	0.99
	( )	( )	( )	( )	( )	( )	( )
'14년	14.7	0.15	-	14.85	14.65	0.12	0.08
	( )	( )	( )	( )	( )	( )	( )
'15년	13.97	0.12	-	14.09	14.09	-	-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사업 확대·추진 필요('13년 결산 산업위 검토보고서)

- 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경쟁력강화 사업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편성

* 2014년(220백만원) → 2015년(250백만원) → 2016년(390백만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사항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무역구제진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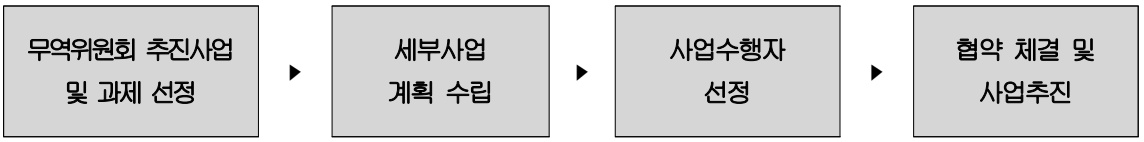

○ 산업경쟁력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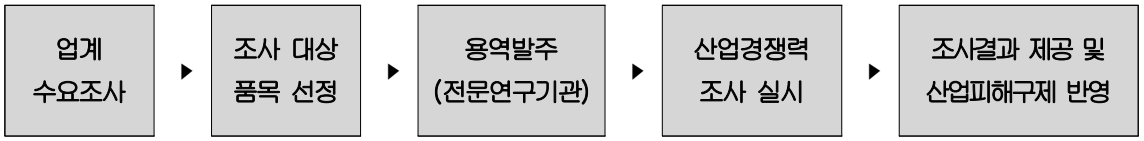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무역구제 제도 관계 법령

참고 무역구제제도 관계 법령

법령명	조 항	비 고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직권 조사)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職權)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판정 및 통지 등) ① 무역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끝내고 판정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1.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사 내용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의3(포상금의 지급) 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 2.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 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 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 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 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연구 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무역구제등의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 ③ 무역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무역구제등 관련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구제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운영하는 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제9조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것일 것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을 한 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22,288	15,645	5,832	△9,813	△62.7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45,978	16,678	511	△16,167	△96.9
○자유무역지역관리	3,029	3,628	4,543	915	25.2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537	639	685	46	7.2
소계	71,832	36,590	11,571	△25,019	△68.4
<지역발전특별회계>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13,583	7,690	8,185	495	6.4
○구역청투자유치지원	4,950	5,050	4,450	△600	△11.9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06	970	952	△18	△1.9
○주요기반시설지원	50,607	22,910	43,503	20,593	89.9
○기타기반시설지원	53,023	44,122	14,723	△29,399	△66.6
소계	123,269	80,742	71,813	△8,929	△11.1
총계	195,101	117,332	83,384	△33,948	△28.9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22,288	15,645	5,832	9,813	△62.7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

* 담당자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박흥석, 063-545-4811), 주무관(유근상, 063-545-481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부지조성)'09 ~ '16, (표준공장신축)'12~'16
총사업비	- (부지조성) 987억원(국비740억원, 지방비247억원) - (표준공장) 353억원(국비228억원, 지방비125억원)
사업규모	- (부지조성) 991,740㎡, 청사동 2,446㎡, 경비초소 64㎡, 울타리 5.2km, CCTV, 외부보안등 - (표준공장) 35,150㎡, 3동(중공업 1동, 경공업 2동)
지원조건	- (부지조성) 국비 75%, 지방비 25% - (표준공장) 국비 65%, 지방비 35%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 진흥, 조세감면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부지조성사업

- 부지조성 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 **4,834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사업은 '16년상반기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가 98,742백만원으로 조정되어 증액된 총사업비중 국비부족분 4,834백만원 예산편성

- 산출기초 : 토지매입비 16,193평×398천원(75%)

② 표준공장 신축사업

- 표준공장 준공을 위한 잔여사업비 : **998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신축사업은 '16년상반기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가 35,294백만원으로 조정되어 증액된 총사업비중 국비 부족분 998백만원 예산편성
- 산출기초 1) 시설비 1,520㎡×887천원(65%)
- 산출기초 2) 감리비 184백만원(65%)

□ 지원 필요성

○ '16년상반기 부지조성 및 표준공장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22,288	15,645	5,832	△9,813	△62.7
▪ 부지조성	7,218	14,645	4,834	△9,811	△66.9
▪ 표준공장건축	15,070	1,000	998	△2	△0.2
□ 비목	22,288	15,645	5,832	△9,813	△62.7
▪ 토지매입비(410-00)	6,920	14,645	4,834	△9,811	△66.9
▪ 시설비(420-03)	15,090	627	878	251	40.3
▪ 감리비(420-04)	237	373	120	△253	△67.8
▪ 시설부대비(420-05)	4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종별 적정예산 투입으로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56	▪(부지조성) 토지매입비 146, (표준공장) 표준공장 건축공사비 10
'16	58	▪(부지조성) 토지매입비 48, (표준공장) 표준공장 건축공사비 10
'17		▪
'18		▪
'19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및 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자유무역지역 지정·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 추진경위

【부지조성사업】

▪ 2007.07.	: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수요조사 공고
▪ 2007.08.	:	전라북도 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 후보지 신청
▪ 2007.09.	:	김제자유무역지역 예비후보지 선정
▪ 2008.03~2008.09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KDI)
▪ 2008.11.	:	관계부처 협의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 2008.12.08.	:	김제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 2009.01.06.	:	김제자유무역지역 본지역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 2009.09.29.	:	조성원가 매입방식으로 조성방식 변경 * 김제시 조성, 지경부 매입
▪ 2009.12.24.	:	김제자유무역지역 토지매매계약 체결 * 지경부-전북도, 김제시
▪ 2010.01.20.	:	김제자유무역지역 기공식 개최
▪ 2010.08.	:	부지조성 공사 착공
▪ 2011.10.28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
▪ 2012.03.30	:	기재부협의 조정결과 사업기간 연장 * '09 ~ '11 → '09 ~ '13
▪ 2012.05.25	:	총사업비 자율조정 70,532백만원 → 76,569백만원 * 감정평가결과 반영한 직접보상비 및 부대경비 등 간접보상비 6,066백만원 증
▪ 2012.06.14	:	총사업비 조정요구 * 당초 76,569백만원, 조정요구 102,560백만원
▪ 2012.11~2013.5	:	총사업비 조정요구액 적정성재검토 실시(기재부, KDI) * 요구액 102,560백만원, 검토액 100,630백만원
▪ 2014.09	:	총사업비 협의조정 : 76,569백만원 → 96,096백만원 * 적정성 재검토 결과반영 : 기반시설공사비·부대비 및 자본비용 등 증액 * 사업기간 1년 연장 : '09년～'13년 ⇨ '09년～'14년
▪ 2015.01.20	:	총사업비 자율조정 : 96,096백만원 → 98,742백만원 * 보상비 감정평가액 최종반영(증액) 및 공사비 집행잔액, 낙찰잔액 감액 * '15.12월 사업기간 연장 : '09년～'14년 ⇨ '09년～'16년
▪ 2016상반기	:	부지조성 완료 예정

【표준공장 신축사업】

- 2012.09. : 표준공장 신축사업 총사업비내역사업으로 선정
- 2013.11 : 표준공장 설계완료(설계 및 공사입찰 : 조달청 의뢰)
- 2014.5 : 표준공장 공사착공
- 2015.06 : 총사업비 자율조정 : 39,402백만원 → 34,220백만원(낙찰잔액 등 감액)
- 2015.08~2015.12 : 총사업비 자율조정 : 34,220백만원 → 35,294백만원
  * 사업기간연장 : '12년～'15년 ⇨ '12년～'16년
- 2016상반기 : 표준공장 준공 예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174	318	118	156	5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7,435	143	-	17,578	13,663	3,915	-
	(5,432)	( )	( )	(5,432)	(5,432)	( )	( )
'13년	31,828	3,915	-	35,743	20,052	15,368	323
	(6,566)	( )	( )	(6,566)	(6,566)	( )	( )
'14년	11,814	15,368	△4,894	22,288	22,288	0	0
	(2,500)	( )	( )	(2,500)	(2,500)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부지조성

○ 자유무역지역지정 수요조사, 전문기관 평가 및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정 고시 후 추진

- 지정절차 및 사업시행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검토 및 작성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	
지정신청	(중앙행정기관/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안전행정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관세청 등
↓	
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부지조성공사 시행	(지자체 : 김제시)
부지매입	(김제시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입)

- 부지조성 시행 : 김제시
- 관리청사 및 부대시설 등 건축공사 : 산업통상자원부

○ 김제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될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를 시공업체 선투자방식으로 김제시에서 우선 조성한 후, 대상부지를 조성원가방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입

○ **표준공장 건축**

○ 김제자유무역관리원과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표준공장 시설물을 설계, 시공함에 있어 관련분야 감독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맞춤형서비스제도)에 의뢰하여 시설물 신축

기본계획설계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조달청)
↓	
중간계획설계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조달청)
↓	
실시설계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조달청)
↓	
공사시공 및 감리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조달청)

○ 조달청맞춤형서비스
- 시설공사의 전문인력이 없는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단계별(기획, 설계, 계약, 시공, 사후관리 등)로 대행하는 서비스제도
-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에서 품질・안전・하도급관리 등 전 단계를 일괄대행하는 맞춤형서비스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부지조성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결과요지
- '08. 3.「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예비타당성조사(조사기관 : 기획재정부, KDI)
- 조사기간 : '08.03. ~ '08.09.
- 조사결과 : B/C 1.62, AHP 0.728, 총사업비 705억

○ 표준공장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조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지침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500억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이상
- 김제표준공장 총사업비 : 394억 중 국비 256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45,978	16,678	511	△16,167	△96.9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300 - 3331 - 311

* 담당자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류금렬), 관리과장(박종만, 055-294-2778), 주무관(정진우, 274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16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2~'16 ○ 확대조성 : ('13)'09~'14 → ('14)'09~'16
총사업비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200억원(736억원) ○ 확대조성 : 903억원(604억원) ○ 생산인프라 개선 : 6.4억원(6.4억원)
사업규모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부지면적 46,341㎡, 연면적 121,380㎡ ○ 확대조성 - 표준공장 3개동 81,007㎡, 주차빌딩 4,116㎡, 삼호천변 도로확장 16,160㎡, 간선도로 확장 9,807㎡ ○ 생산인프라 개선 - 표준공장 옥상데크 5,880㎡,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지원조건	○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직접수행(국비 65%, 지방비 35%) ○ 확대조성 : 직접수행(국비 65%, 지방비 35%) ○ 생산인프라 개선 : 직접수행(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노후된 표준공장 9개동 재건축(건령 40년), 도로확장 등을 통한 수출 주목적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확대조성사업 준공을 위한 건축비 511백만원(삼호천변 도로)

-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물량증가(99백만원)
- 폐기물처리비 증가(132백만원)
- 암판정에 따른 물량(공정변경) 증가(2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확대조성사업 준공을 위한 시설비 지원 필요

- 삼호천변 도로 협소 등으로 인한 입주업체 생산 차질 및 기존 업체 이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생산 인프라 개선이 필요

※ 사업내용 : 표준공장 3개동 재건축 81,007㎡, 주차빌딩 4,116㎡, 삼호천변 도로확장 16,160㎡, 간선도로 확장 9,807㎡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45,978	16,678	511	△16,167	△96.9
▪ 노후표준공장재건축	39,546	16,678	-	△16,678	순감
▪ 확대조성사업	5,822	-	511	511	순증
▪ 생산인프라개선	610	-	-	-	-
□ 비목	45,978	16,678	511	△16,167	△96.9
▪ 시설비(420-03)	45,219	15,708	511	△15,197	△96.7%
▪ 감리비(420-04)	709	900	-	△900	순감
▪ 시설부대비(420-05)	50	70	-	△70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차별 소요예산 적기 투입으로 표준공장 재건축사업의 실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67	▪ 시설비 157 ▪ 감리비 9 ▪ 시설부대비 1
'16	5.1	▪ 시설비 5.1
'17		▪
'18		▪
'19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9조

○ 추진경위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0. 12 : '11년 상반기 예타 대상과제로 신청(지경부→기재부)
- '11. 3 : '11년 상반기 예타 대상과제로 선정(기재부)
- '11. 4~9월 : KDI, 예타 용역수행
- '11. 10. 7 : 예타 최종결과 통보(기재부→지경부)
- '12. 12 : 설계용역 업체 선정 및 착수
- '13. 6 : 설계용역 중간설계 완료
- '13. 8 : 실시설계 완료
- '13. 12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

- ’07. 07 :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확대 지정 추진
- ’08. 09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기획재정부, KDI)
- ’08. 12 :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지식경제부)
- ’09. 12 : 설계용역 착수
- ’10. 10 : 총사업비 조정 완료(기획재정부) 및 설계용역 완료
- ’10. 12 : 시공자 선정(조달청)
- ’11. 01 : 조성공사 착수
- ’12. 04 : 주차빌딩 1개동 완공
- ’12. 12 : 표준공장 3개동 재건축 완공
- ’14. 02 : 삼호천변도로확장 설계(변경)용역 완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118	473	169	167	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12년 : 예산 수시배정 지연(10월 배정)으로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가 늦어서 관련예산(설계비 1,600백만원, 감리비 385백만원) 이월, 시설부대비(15백만원)는 미배정으로 불용

○ ’13년 : 설계용역 지연(’13. 8월 완료)으로 재건축 공사 착공이 늦어져 관련예산(시설비 32,884백만원, 감리비 420백만원) 이월, 설계비 낙찰차액 및 사용잔액 3,069백만원 불용

○ ’14년 : ’13년 공사착공 지연(12월 말)에 따른 공정률 미흡으로 시설비 일부예산(9,989백만원) 이월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

○ ’12년 : 레미콘 물량감소에 따른 51백원 불용

○ ’13년 : 총사업비 조정 협의(’13.5월),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등으로 6,816백만원 이월

○ ’14년 : 총사업비 감액에 따른 사용잔액 994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58**	79	△5	233	**210**	21	1.6
	( )	( )	( )	( )	( )	( )	( )
'13년	**473**	21	-	492	**44**	401	31
	( )	( )	( )	( )	( )	( )	( )
'14년	**169**	401	-	570	**460**	10	10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계약 및 용역진행 (조달청, 설계 및 감리 용역업체 등)

↓

공사 입찰계약 (조달청, 시공사 등)

↓

시설공사 착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시공사, 감리사 등)

↓

공사 준공 및 사용개시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주기업체 등)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 조사기관: 기획재정부(KDI)

○ 조사기간: 2011.3.~2011.10.

○ 조사결과: B/C 1.02, AHP 0.539

□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B/C 1.15, AHP 0.604

○ 조사기관 : 기획재정부(KDI)

○ 조사기간 : 2008.3~2008.9

6. 참고자료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마산자유무역지역 노후 표준공장 5개동을 현대식 아파트형 공장(6개동)으로 재건축

○ 사업기간 : ’12~’16년(5년간)

○ 총사업비 : 1,200억원

- 국비 780억원(65%), 도비 210억원(17.5%), 시비 210억원(17.5%)

○ **사업내용 : 표준공장 6개동 재건축**(연면적 121,364㎡)

□ 추진 실적

○ ‘10.12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지경부→기재부)

○ ’11.10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02, 사업성 인정)

○ **’12.12 : 설계자 및 감리자 선정**

○ **’13.1~‘13.08 : 실시설계 용역**

○ ’13.12 : 시공자 선정(조달청) 및 착공

○ ’14.1~7 : 노후 표준공장 5개동 철거 및 기초공사

○ ’14.7 : 표준공장 6개동 재건축 공사 착수

○ ’15.6 : 표준공장 6개동 골조공사 완료

○ ’15.6~ : 표준공장 6개동 외장공사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16.4 : 표준공장 2개동 부분준공

□ 사업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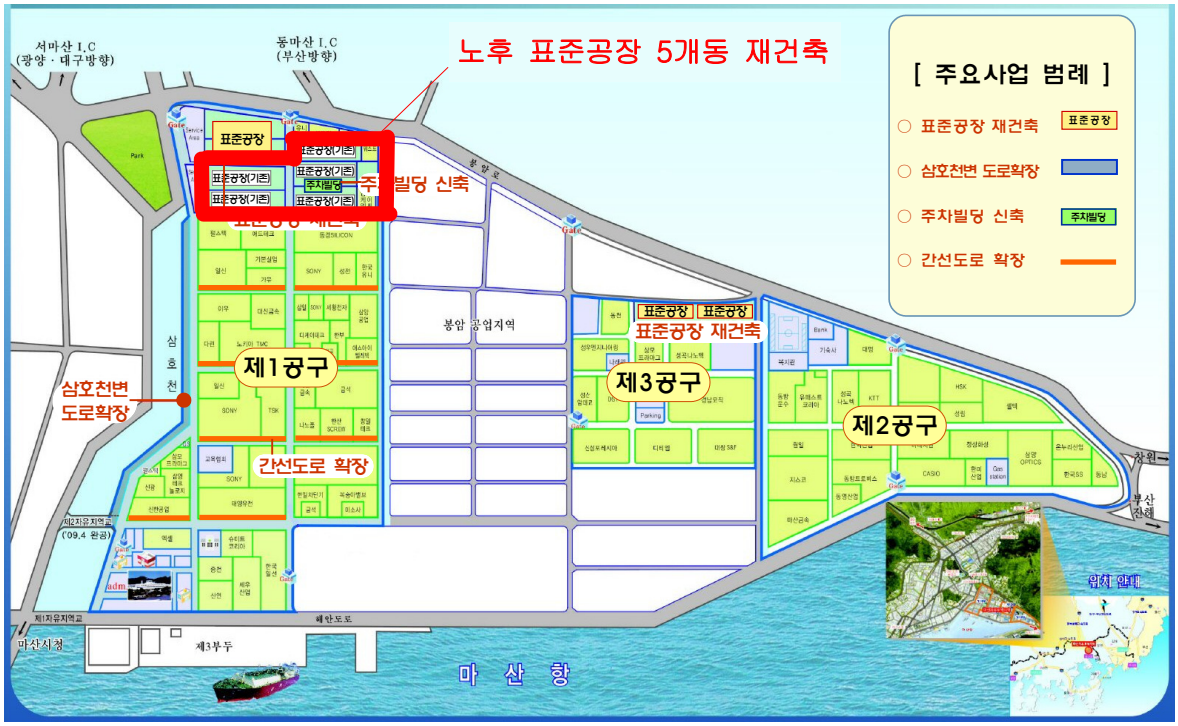

□ 사업조감도(안)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산환경 개선 및 외투 유치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09~'16년(8년간)

○ 총사업비 : 903억원

- 국비 587억원(65%), 지방비 316억원(35%)

○ **사업내용 : 표준공장 재건축**(3개동, 81,007㎡), **주차빌딩**(1개동, 4,116㎡), **삼호천변 도로확장**(16,160㎡), **단지내 도로정비**(9,807㎡)

□ 추진 실적

○ '08.12 :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고시(지식경제부)

○ '10.10 : 설계용역 완료(지경부·조달청·설계자)

○ '11.01 : 조성공사 착수(시공자 : 쌍용건설㈜ 등)

○ '12.04 : 주차빌딩 1개동 완공

○ '12.12 : 표준공장 3개동 완공

○ '13.09 : 삼호천변 도로확장 실시설계변경 착수

○ '13.12 : 삼호천변 도로확장 관련 경남도 하천기본계획 변경

○ '14.02 : 삼호천변 도로확장 및 간선도로 실시설계변경 완료

○ '14.06 : 삼호천변 도로확장 및 간선도로 정비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16.02 : 1단계 구조고도화 사업 (확대조성사업) 완료

□ 사업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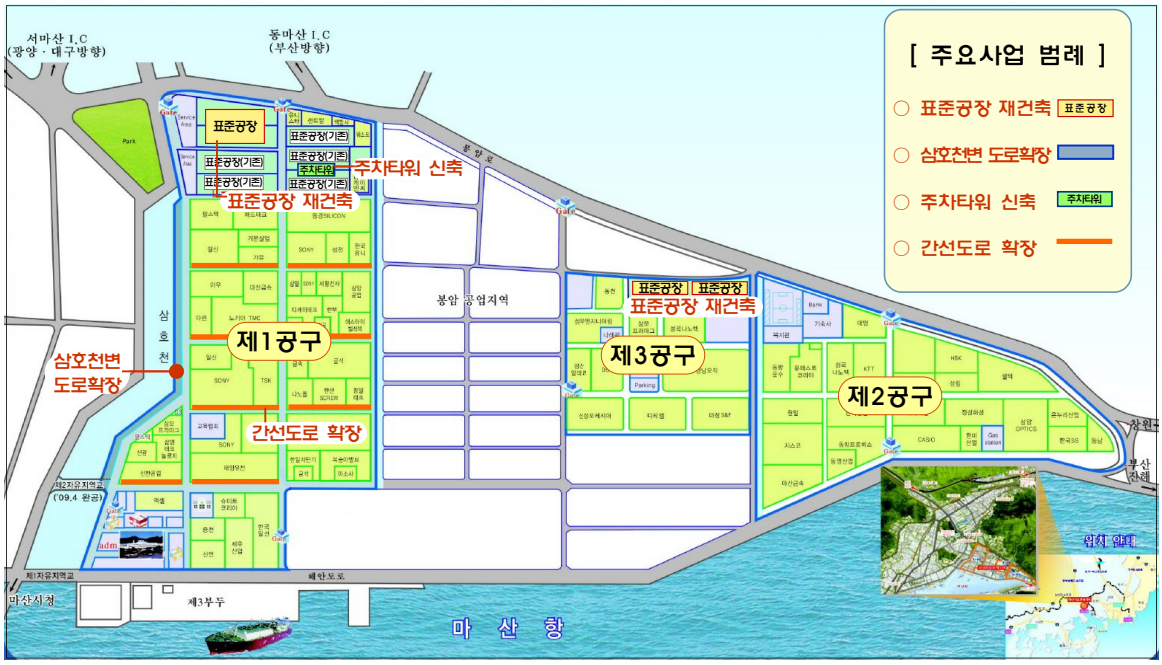

□ 조감도

○ 1공구 표준공장 ('12.9월 준공)

○ 3공구 표준공장 ('12.12월 준공)

○ 1공구 삼호천변 도로확장('16.2 준공예정)

○ 1공구 주차빌딩 ('12.4월 준공)

자유무역지역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자유무역지역관리	3,029	3,628	4,543	915	25.2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5-30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산업물류투자팀장(정재남, 044-203-4630), 주무관(김재학, 46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71~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국유건물(표준공장, 청·관사 등) 및 국유시설물(가로등, 도로·보도 등)의 유지·보수를 통하여 국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유지

○ 시설관리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여 입주기업 생산활동 지원, 자유무역지역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 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1,414백만원)

- 노후 취약사업장 및 역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66백만원, 노후 국유건물 및 기반시설물 유지보수 1,020백만원, 청사관리 및 조경 위탁관리 228백만원

② 군산자유무역지역 관리(793백만원)

- 국유건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용 50백만원, 옥상방수공사 등 유지보수공사비 376백만원,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367백만원

③ 대불자유무역지역 관리(516백만원)

- 국유건물(시설물) 안전관리비용 39백만원, 물류창고동 방수공사 등 유지보수 40백만원,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422백만원,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15백만원

④ 동해자유무역지역 관리(342백만원)

-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242백만원, 국유건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용 50백만원,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50백만원

⑤ 율촌자유무역지역 관리(328백만원)

-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275백만원, 청사동 보수공사 등 53백만원

⑥ 울산자유무역지역 관리(642백만원)

-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375백만원, 국유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용 49백만원,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240백만원

⑦ 김제자유무역지역 관리(358백만원)

- 시설·청소·조경 위탁관리 358백만원

⑧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원 사업(150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홍보책자 인쇄비 등 41백만원,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85백만원, 투자유치 활성화 여비 21백만원, 사업추진비 3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물들을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 국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 시설관리 및 청소,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유재산 유지관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자유무역지역관리	3,029	3,628	4,543	915	25.2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	914	1,133	1,414	281	24.8
▪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	354	552	793	241	43.7
▪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	459	501	516	15	3.0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	198	248	342	94	37.9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	423	251	328	77	30.7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	374	501	642	141	28.1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	307	312	358	46	14.7
▪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원	0	130	150	20	15.4
□ 비목	3,029	3,628	4,543	915	25.2
▪ 일반수용비(210-01)	14	57	60	3	5.3
▪ 임차료(210-07)	175	0	0	0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0	63	190	127	201.6
▪ 위탁사업비(210-15)	1397	1,873	2,336	463	24.7
▪ 국내여비(220-01)	0	10	10	10	0.0
▪ 국외업무여비(220-02)	0	15	11	△4	△26.7
▪ 사업추진비(240-01)	0	3	3	0	0.0
▪ 정책연구비(260-02)	0	90	85	△5	△5.6
▪ 실시설계비(420-02)	37	30	95	65	216.7
▪ 시설비(420-03)	1,235	1,125	1,448	323	28.7
▪ 시설부대비(420-05)	12	15	0	△15	순감
▪ 무형자산(440)	159	347	305	△42	△12.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유건물 및 시설물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가치 유지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36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6
'16	45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45
'17	42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42
'18	40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40
'19	38	▪ 국유 건물·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3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소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마산개원('70.4) 군산('00.10), 대불('02.11), 동해('05.12), 율촌('05.12), 김제('08.12), 울산('09.1) 지정 이래 매년 국유재산(건물, 기반시설물) 및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자유무역지역관리	16.8	25.6	32.0	36.3	45.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 (마산, 군산, 대불율촌) 낙찰차액 47백만원

○ '13년

- (마산, 군산, 대불) 시설공사 낙찰차액 123백만원
- (김제) 관리원청사 신축공사가 '13.8월에 준공되어 집행잔액 불용처리 128백만원

○ '14년

- (마산, 군산, 대불, 울산, 김제) 낙찰차액 106백만원 발생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6.8	-	0.7	16.1	15.6	-	0.5
	( )	( )	( )	( )	( )	( )	( )
'13년	25.6	-	0.1	25.5	23.0	-	2.5
	( )	( )	( )	( )	( )	( )	( )
'14년	32.1	-	0.7	31.4	30.3	-	1.1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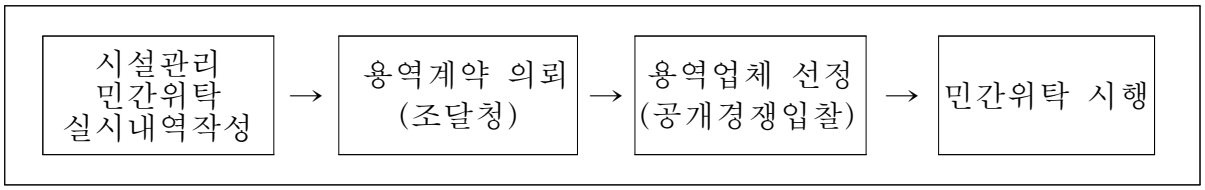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537	639	685	46	7.2

* 사업코드 : 21-11-0-110-116-7100-7136-45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산업물류투자팀장(정재남, 044-203-4630), 주무관(김재학, 46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71~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7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 사업목적

○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물(도로, 가로등, 울타리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기반 여건을 조성

* 공동부담금을 징수하는 수입대체경비 세출 사업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마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428백만원)

-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78백만원, 도로 청소용역비 350백만원

② 군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80백만원)

- 가로등 전기요금 및 국유시설배상책임 보험가입 등 공공요금 18백만원, 도로 청소용역비 62백만원

③ 대불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72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내 단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4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4백만원, 수목관리 및 울타리 등 공동시설 유지보수 44백만원

④ 동해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9백만원)
-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2백만원,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7백만원

⑤ 율촌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10백만원)
-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등 1백만원,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9백만원

⑥ 울산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54백만원)
- 자유무역지역 내 단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3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7백만원, 도로청소 용역비 34백만원

⑦ 김제자유무역지역 공동시설유지관리(32백만원)
- 역내 가로등 전기요금 17백만원, 도로청소 용역비 1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역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및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납부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 및 입주업체 생산기반여건 조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537	639	685	46	7.2
▪ 마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373	400	428	28	7.0
▪ 군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9	74	80	6	8.1
▪ 대불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70	72	72	0	0.0
▪ 동해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5	9	9	0	0.0
▪ 율촌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6	10	10	0	0.0
▪ 울산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2	52	54	2	3.8
▪ 김제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12	22	32	10	45.5
□ 비목	537	639	685	46	7.2%
▪ 일반수용비(210-01)	12	15	10	△5	△33.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8	149	170	21	14.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7	475	505	30	6.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 공동시설물(도로, 보도블럭, 가로등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사업활동 지원 및 투자환경 개선

○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공동부담금(수입대체경비)을 활용하여 공동시설물(가로등, 차도, 보도, 울타리 등) 유지보수 및 운영비로 활용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6.4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6.4
'16	6.9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6.9
'17	6.4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6.4
'18	6.0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6.0
'19	5.7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및 운영 5.7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49조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유지·보수와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하며 그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28조 :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 안의 공동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 추진경위

- 마산개원('70.4) 군산('00.10), 대불('02.11), 동해('05.12), 율촌('05.12), 김제('08.12), 울산('09.1) 지정 이래 매년 공동시설물(도로, 보도블럭, 가로등 등)을 유지・보수하고 있는 계속사업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 유지관리	4.9	6.0	5.84	6.4	6.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이·전용

- 기본경비 부족 : ('14동해)2백만원, ('14울산) 22백만원

○ 불용사유

- 낙찰차액 : 군산관리원 시설공사 낙찰차액 ('12)11백만원, ('13)2백만원
- 경상경비절감 : ('13마산)3백만원, ('14마산)6백만원, ('14군산)3백만원
- 청사 준공연기에 따른 불용처리 : ('13김제)62백만원, ('14김제)12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4.88			4.88	4.77		0.11
	( )	( )	( )	( )	( )	( )	( )
'13년	5.96			5.96	5.29		0.67
	( )	( )	( )	( )	( )	( )	( )
'14년	5.82	0	△0.24	5.58	5.37		0.21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노후·파손된 공동 시설물 점검·파악 → 시행, 원인행위, 요청, 지출결의 → 사업집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계속)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 외국교육연국기관유치지원	13,583	7,690	8,185	495	6.4

* 사업코드 : 21 - 39 - 2 - 110 - 114 - 4900 - 4901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지식서비스투자팀(윤선민, 044-203-4620), 주무관(고안식, 462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유치대상 외국대학 및 외국연구소 초기운영비 지원 등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 매칭지원(국비 25~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으로 동북아 교육허브 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 4,685백만원

-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 5년 범위내, 국비 50%, 지방비 50%

- 외국교육기관(4개) 3,385백만원, 외국연구기관(3개) 1,300백만원 지원

○ 외국교육연구기관 성장기반구축 : 1,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기반인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운영·관리 지원(1,000백만원)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건축비 : 2,500백만원

- 지원대상 : 명지 독일캠퍼스 조성 사업

  * 위치 : 부산시 명지 글로벌신도시 내
  * 시설 : 대학 2개교, R&D센터 4개소, K-12 3개소
  * 면적 : 부지 54,019천㎡, 건축 47,500㎡
  * 사업기간 : 2016~2019
  * 총사업비 : 800억원(국비 25%, 지방비 25%, 민자 50%)

□ 지원 필요성

○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는 핵심 국정과제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의 주요 요건에 해당

○ 비영리기관인 대학·연구소의 특성상 재정적 인센티브가 유치의 필수조건으로 외국도 재정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13,583	7,690	8,185	495	6.44
▪ 창원국제외국인학교 건축비	-	-	-	-	-
▪ 명지 독일캠퍼스 조성	-	-	2,500	2,500	순증
▪ 외국교육연구기관 성장기반구축	1,100	1050	1,000	△50	△4.76
▪ 외국교육연구기관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12,483	6,640	4,685	△1,955	△29.44
□ 비목	13,583	7,690	8,185	495	6.44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3,583	7,690	5,685	△2,005	△26.07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	-	2,500	2,5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해외 유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동북아 교육·연구 Hub 달성

○ 특히,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는 국내 최초로 외국대학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으로서 동북아 지식 cluster 및 FDI 촉진의 Anchor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09.5 국경위 대통령 보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연도	금액	산출근거
'15	77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5억)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66.4억)
'16	82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억)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47억) ▪ 명지독일캠퍼스 조성 건축비(25억)
'17	55	▪ 외국교육연구기관성장기반구축 (10억)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40억) ▪ 명지독일캠퍼스 조성 건축비(5억)
'18	50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40억) ▪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2단계 건축비 (10억)
'19	47	▪ 외국교육연구기관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37억) ▪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2단계) 건축비(10억)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192	154	125	77	8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불용 및 이월

- 로렌스버클리, VTT연구소 등과 MOU체결 이후, 입장 변경 등으로 협약체결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설립준비비 및 초기운영비 3,205백만원 불용
- 조지메이슨대에 대한 교육부의 설립승인 지연과 겐트대의 설립준비비 일부 집행지연으로 950백만원 이월

○ 2013년 불용 및 이월

- 교육부 설립승인 지연(유타대) 및 UCLA 등 협약체결 무산으로 초기운영비 5,556백만원 불용
- 초기운영지원 관련 협의지연(겐트대) 및 광특회계 세수부족(CISCO등 4개 연구소)으로 5,777백만원 이월

○ 2014년 불용 및 이월

- 경남도의 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진해 글로벌테마파크조성 추진)에 따라 창원 국제학교 설립 추진 유보·변경에 따른 2,350백만원 불용
- 외국교육연구기관 집행잔액 발생으로 1,094백만원 불용
- 애버딘대 사업계획서 보완 등에 따른 설립추진 지연으로 600백만원 이월
- 러시아 정부의 외국분교 설립승인 지연에 따른 러시아 국립음악원 추진 지연으로 인한 600백만원 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92 (168)	18 (25)		210 (193)	168 (152)	10 (33)	32 (8)
'13년	154 (50)	10 (33)		164 (83)	50 (72)	58 (1)	56 (10)
'14년	124 (80)	58 (56)		182 (136)	136 (122)	12 (8)	34 (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싱가포르 (World-Class University Program)

- 추진배경 : 경제개발위원회 주관으로 10년간('98~'07) 세계 수준의 10개 대학을 유치하여 Education Hub 조성
- 유치대학 및 정부보조금 : MIT(1억불), 듀크대(3억불) 등

○ 카타르 (Education City)

- 추진배경 : 국가적 고급인력 양성
- 유치대학 및 정부보조금 : 코넬의대, 카네기멜론대, 텍사스 A&M대, 조지타운대 유치를 위해 부지, 건물, 학습용 기자재 제공 및 연간 10억불의 대학 운영비 지원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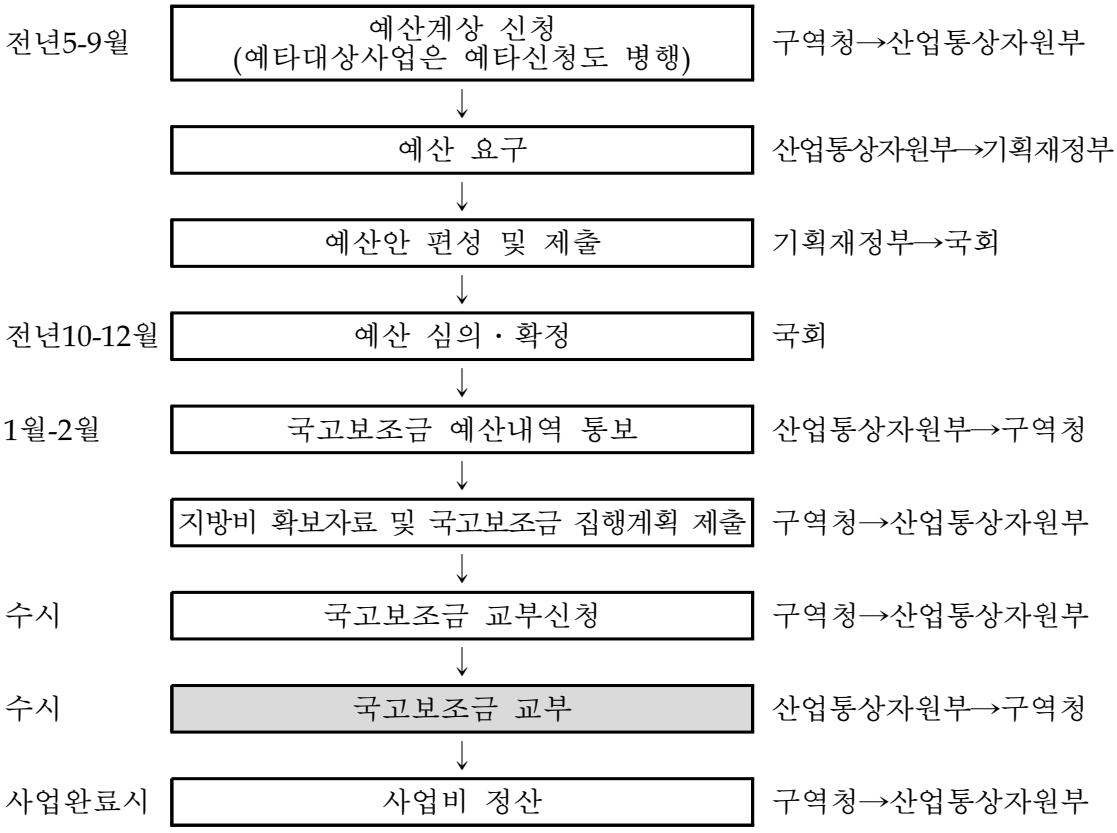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해외 외국대학 유치 사례)

국 가	지 원 내 용	
싱가포르	설립지원	· 30년간 대학부지 무상 제공 ·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 과실송금 허용 경우 법인세 면제대상에서 제외 · 정부가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및 행정적 편의 제공
	운영지원	· 대학 운영비용 및 연구비 50% 지원 (학생 1,200명 시 운영비만 약 650만 달러 상당- 조지메이슨대 재정계획 상 산출시) · 대학의 각종 세금면제 및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지원
	사 례	· MIT와 싱가포르국립대(NUS)에 각각 1억 달러 지원 · 듀크 의대 유치 시 싱가포르 정부가 3억1천만 달러 기부 · 예일대 Liberal Arts College 설립(NUS와 공동)시 운영비, 본교 교수 인건비, 건축비 지원
카타르	설립지원	· 교사, 교지, 건물, 학습용 기자재 등의 교육용 인프라 제공 ·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운영지원	· 해외 교수들의 봉급, 보너스, 주택 등 제공 · 유치된 5개 해외대학 운영비로 연간 10억 달러 지원 * 코넬 의대 유치를 위해 11년간 7.5억달러 지원 · 재단이 학생의 학비 무이자대출 지원
	기 타	· 입주 분교의 교육프로그램은 본교와 동일하게 운영 · 외국대학 유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과학기술재단 건설
두바이	설립지원	· 대학부지 장기임대 및 50년간 무상 제공 ·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 ·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운영지원	·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모든 세금의 50년간 100% 감면
	기 타	· 비자, 업무승인, 통신 등의 서비스 제공 · 이민지원, 동반가족 취업 알선 등 · 뉴욕대에 5천만 불을 기부 조건으로 분교설립 계약
중 국	설립지원	· 학교부지 및 건설비용 무상 제공 · 과실송금 허용 및 영리학교법인 설립 인정 ·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운영지원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혜택 및 의료보험제도 등의 도입 · 해외학생 유치 장려금
	사 례	· 닝보시의 영국 노팅엄 대학 유치 시 토지 무상 제공(4,340억 상당) 및 건설비용액(1,650억) 부담 · 장쑤성 쑤저우 공업원구의 '국제대학촌'의 경우, 건축 및 토지 비용 100% 부담, 초기 임대료는 무상이나 관리비는 입주대학 부담 ※ 중국은 중국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합작 설립형태만 인정 (외국대학 단독 분교 설립 불인정)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계속)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950	5,050	4,450	△600	△11.9%

* 사업코드 : 120-126-2700-2733-302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정책기획팀장(전윤종, 044-203-4610), 사무관(임경숙, 461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지자체 보조(정액보조)
사업시행주체	경제자유구역청(지자체)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자구역 내 국가 및 시도 위임사무를 전담 처리하는 구역청 운영비를 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7개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 4,450백만원

- 균등배분(1,780백만원), 면적, 인력 등 규모별 차등배분(890백만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배분(1,7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해 경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투자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등에 기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950	5,050	4,450	△600	△11.9
▪ 구역청 운영경비 지원	4,450	4,450	4,450	0	0
▪ 바이오네트워크 구축	500	600	0	△600	순감
□ 비목	4,950	5,050	4,450	△600	△11.9
▪ 지자체 경상보조	4,450	4,450	4,450	0	0
▪ 지자체 자본보조	500	600	0	△600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경제자유구역 내 국가 및 시도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구역청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유치 활동강화를 위한 적정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도모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50.50	▪ 구역청 운영비 44.5억원(기존청5개x6.5, 신설청2개x6), 바이오네트워크 구축 6억원
'16	44.50	▪ 구역청 운영비 44.5억원(구역청7개x6.35억원)
'17	40.00	▪ 구역청 운영비 40.0억원(구역청7개x5.71억원)
'18	39.20	▪ 구역청 운영비 39.2억원(구역청7개x5.60억원)
'19	38.04	▪ 구역청 운영비 38.04억원(구역청7개x5.43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 추진경위

- '02.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포
- '03.7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 3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8.5월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대책 대통령 보고(국경위)
- '08.5월 : 3개 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추가지정
- '08.7~8월 3개 구역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개청
- '09.5월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 대통령 보고(국경위)
- '10.9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2.11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선 지역공약
- '13.2월 2개 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
- '13.4월 2개 구역청(동해안권, 충북) 개청
- '13.7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2.0	48.3	49.5	50.5	44.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특이사항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42	-	-	42	42	-	-
	(42)	(3)	(-)	(45)	(43)	(1)	(1)
'13년	48	-	-	48	48	-	-
	(48)	(1)	(-)	(49)	(45)	(1)	(3)
'14년	50	-	-	50	50	-	-
	(50)	(1)	(-)	(51)	(46)	(2)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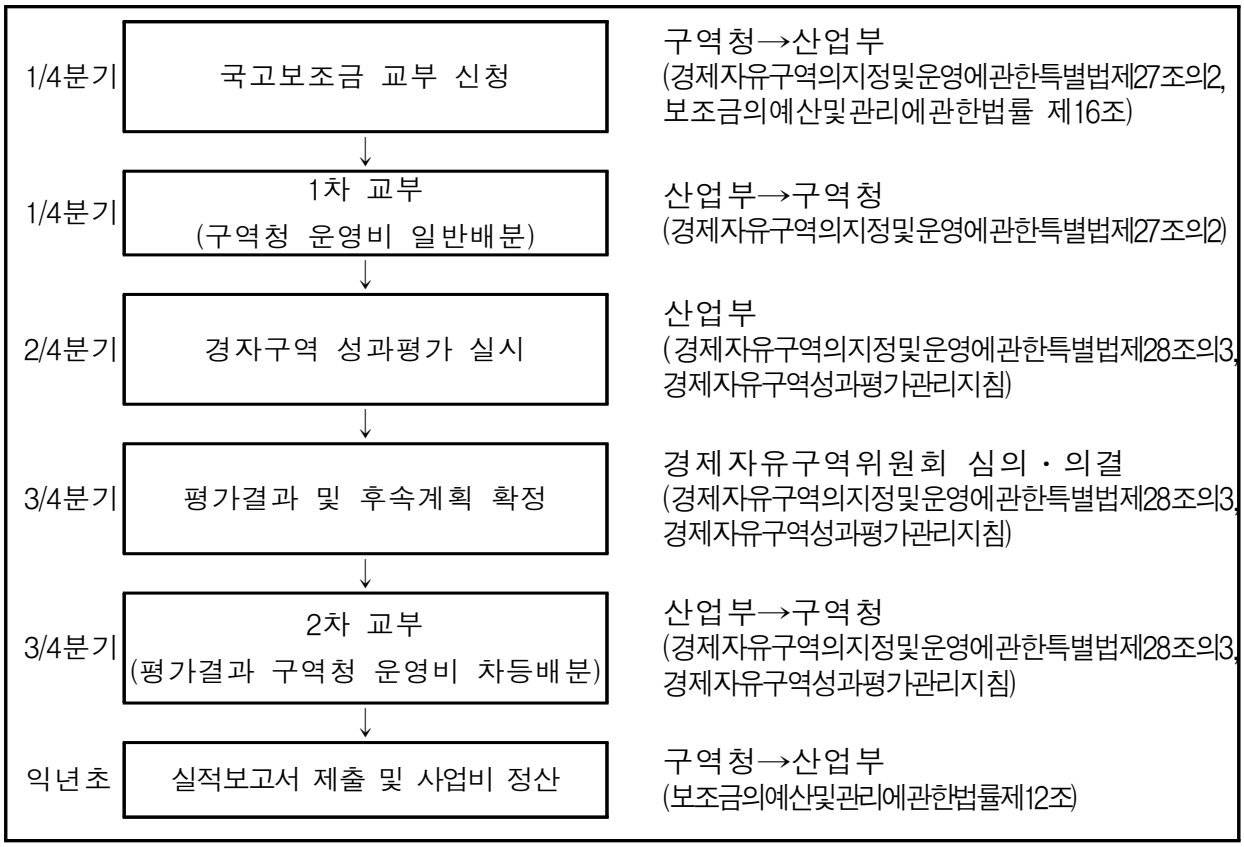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계속)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06	970	952	△18	△1.9

* 사업코드 : 21 - 39 - 2 - 120 - 126 - 2700 - 2733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정책기획팀장(전윤종, 044-203-4610), 주무관(정은상, 461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2. 사업목적

○ 경자유구역의 지정·운영을 통해 외국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수립·지원을 위해 설치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사업비 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952백만원)

- 운영비 : 734백만원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380), 경자구역 성과평가 실시(150), 위원회 개최비용(90), 인쇄비 및 사무용품구입비 등(90), 과운영비 및 기획단운영 기본경비 등(31)

- 국내·외 여비 : 127백만원(국내 46, 국외 81)
- 경제자유구역 관계기관과의 업무활성화 추진 : 66백만원
-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비 : 2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을 위해 설치된 기획단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기여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 및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주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내실화 추구

*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역청의 운영경비 차등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06	970	952	-18	-1.9
□ 비목	1,106	970	952	-18	-1.9
▪ 기타직보수(110-02)	84	-			
▪ 일반수용비(210-01)	694.5	641.8	702.9	61.1	9.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8	41	28	-13	-31.7
▪ 특근매식비(210-05)	42	42		-42	-100
▪ 임차료(210-07)	3	3	3		
▪ 기타운영비(210-16)	13.2	13.2		-13.2	-100
▪ 국내여비(220-01)	48	47	46.1	-0.9	-1.9
▪ 국외여비(220-02)	85	84	81	-3	-3.6
▪ 사업추진비(240-01)	69	68	66	-2	-2.9
▪ 연구개발비(260-02)	39	30	25	-5	-16.7
▪ 연금지급금(320-03)	0.3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간 개발 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개발성과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본격 추진

* 현재 인천 등 총 8개 구역, 335.82㎢를 경자구역으로 지정·운영 중

○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투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유치 적극 추진
- 경제자유구역 법제의 운영, 관련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해외 유수대학·연구소 중점 유치 추진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협의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안작성 등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보좌
- 경제자유구역 관련 홍보, 성과평가, 국제협력, 통계 및 자료의 조사 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970	▪운영비 741, 여비 131, 업무추진비 68, 연구개발비 30
‘16	952	▪운영비 733.9, 여비 127.1, 업무추진비 66, 연구개발비 25
‘17	894	▪운영비 688, 여비 113, 업무추진비 68, 연구개발비 25
‘18	876	▪운영비 675, 여비 108, 업무추진비 68, 연구개발비 25
‘19	867	▪운영비 666, 여비 108, 업무추진비 68, 연구개발비 2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 추진경위

- ’02.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8.3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자단 지식경제부로 이관
- ’08.4월 : 3개 경자구역 추가 지정(황해 : ‘08.7.22, 대구・경북 : ’08.8.13, 새만금 : ‘08.8.28)
- ‘09.1월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특별법 전환, 외국인 임대주택공급규정 등)
- ‘10.9월 :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2.4월 : 경자구역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위기관리대책회의, 비상경제대책회의)
- ‘12.9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
- ‘12.9월 : 2개 경자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 후보지역 선정
- ‘13.2월 : 2개 경자구역(동해안권, 충북) 추가지정(’13.2.4 경자위 의결)
- ‘13.7월 : 제1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11.1	11.2	11.3	9.7	9.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불용(0.1억원), '13년 불용(1.7억원), '14년 불용(0.3억원) :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 '13년 이월(0.3억원) : 광특회계 세수부족으로 용역비 미집행

○ '14년 이월(0.2억원) : 연구용역 기간('14.12.22~'15.5.21) 미도래에 따른 용역비 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110	19		1,129	1,120	0	9
	( )	( )	( )	( )	( )	( )	( )
'13년	1,118			1,118	926	27	165
	( )	( )	( )	( )	( )	( )	( )
'14년	1,128	27		1,155	1,106	18	31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해당없음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주요 기반시설지원(계속)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주요 기반시설 지원	50,607	22,910	43,503	20,593	89.9

* 사업코드 : 21-39-2-120-126-2700-2733-415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지식서비스투자팀장(윤선민, 4623), 사무관(김한상, 463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계속
총사업비	6개 도로 총사업비 9,092억원(국비 4,546억원)
사업규모	'16년 3개 기반시설(도로) 건설 지원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50%매칭)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도로, 공동구 및 용수공급시설) 건설 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경제자유구역내 3개 도로 건설 지원(43,503백만원)

- (부산·진해) 소사-녹산간 도로 연차 공사비 3,000백만원, 석동-소사간 도로 연차 공사비 17,618백만원

-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22,88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주요 기반시설지원	50,607	22,910	43,503	20,593	89.9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	3,550	0	△3,550	순감
▪ 소사-녹산간 도로	0	0	3,000	3,000	순증
▪ 석동-소사간 도로	11,000	14,600	17,618	3,018	20.7
▪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	1,000	22,885	21,885	2,189
▪ 국비 지원 종료 등	39,607	3,760	0	△3,760	순감
□ 비목(합계)	50,607	22,910	43,503	20,593	89.9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0,607	22,910	43,503	20,593	89.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세부사업별 사업기간내 사업 준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29	▪ 4개 도로 연차 사업비 229억원
'16	435	▪ 3개 도로 연차 사업비 435원원
'17	282	▪ 4개 도로 연차사업비 282억원
'18	252	▪ 4개 도로 연차사업비 282억원-
'19	103	▪ 2개 도로 연차사업비 103억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2.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4.5월 : 기반시설 국고지원기준 마련(제4차 경자위)
- ‘08.4월 :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추가선정
- ‘08.7~8월 : 3개 구역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개청
- ‘13.2월~4월 : 2개 경제자유구역(충북, 동해안권) 추가선정 및 개청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주요 기반시설 지원	278	837	319	229	43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3년 이월 : 광특(지특)회계내 세수부족으로 187억원 이월

*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187억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278	150	0	428	428	0	0
	(278)	(615)	(0)	(893)	(748)	(145)	(-)
’13년	837	0	0	837	650	187	0
	(837)	(145)	(-)	(982)	(734)	(248)	(-)
’14년	319	187	0	506	506	0	0
	(319)	(248)	(-)	(567)	(543)	(24)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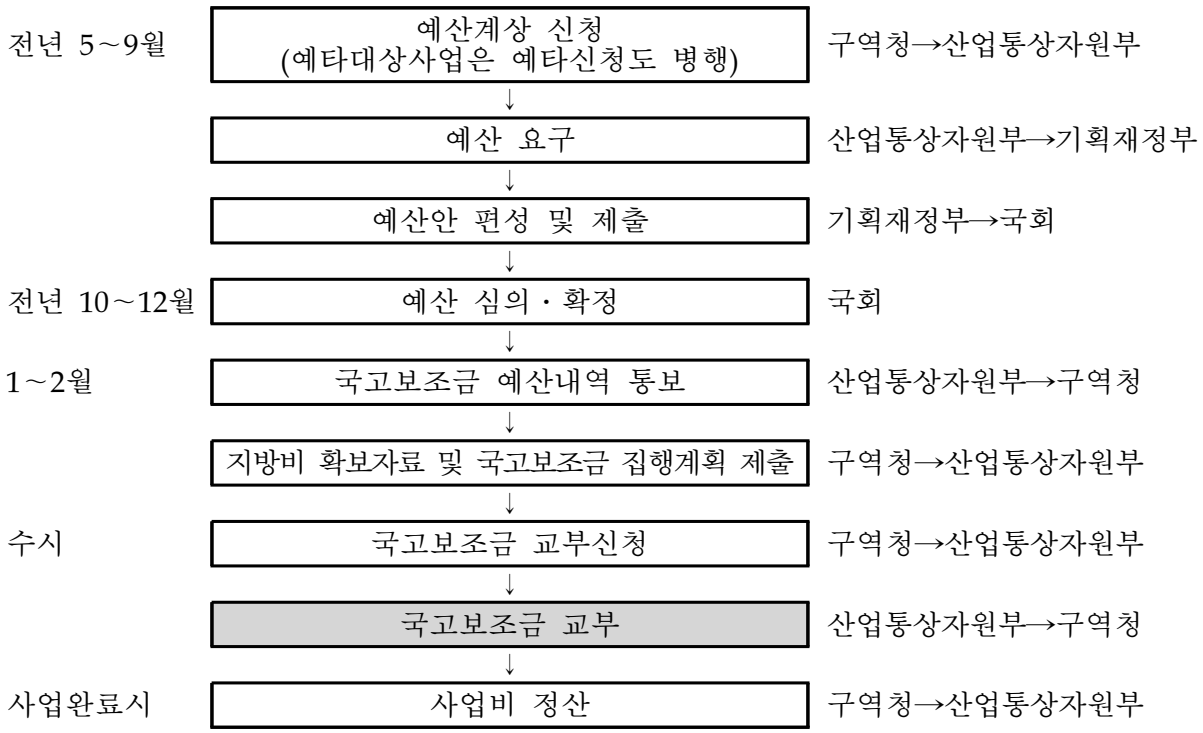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사업명	조사기관	기간	결과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한국개발연구원(KDI)	'13.2~'13.11	B/C 1.13, AHP 0.555
소사-녹산간 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04.6~'04.9	B/C 0.99, AHP 0.627
석동-소사간 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05.12~'06.8	B/C 1.67, AHP 0.653
명지지구 간선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09.3~'09.8	B/C 0.872, AHP 0.501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12.3~'12.12	B/C 1.1, AHP 0.532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한국개발연구원(KDI)	'13.11~'14.8	B/C 1.21, AHP 0.609

기타 기반시설지원(계속)

< 지역발전특별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기타 기반시설 지원	53,023	44,122	14,723	△29,399	△66.6

* 사업코드 : 21-39-2-120-126-2700-2733-409

* 담당자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박순기), 지식서비스투자팀장(윤선민, 4623), 사무관(김한상, 463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계속
총사업비	-
사업규모	'16년 10개 기반시설(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건설 지원
지원조건	자치단체보조(50%매칭)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경제자유구역청)

2. 사업목적

○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도로, 공동구 및 용수공급시설 등) 건설 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경제자유구역내 9개 도로 건설 지원(12,723백만원)

- (인천) 송도6-8공구 광3-29호선 간선도로 874백만원, 아암로 확장공사 3,000백만원
- (부산·진해) 웅동지구 진입도로 1,000백만원
- (광양만권)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1,810백만원,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838백만원, 신덕지구 진입도로 1,080백만원, 팔마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 1,073백만원,
-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1,788백만원
- (황해) 포승지구 간선도로 1,260백만원

② 경제자유구역내 1개 용수공급시설지원 2,000백만원

-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사업비 2,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기타기반시설지원	53,023	44,122	14,723	△29,399	△66.6
▪ 송도6-8공구 광3-29호 간선도로	5,120	500	874	374	74.8%
▪ 아암로 확장공사	-	-	3,000	3,000	순증
▪ 웅동지구 진입도로	-	-	1,000	1,000	순증
▪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1,023	4,668	1,810	△2,858	△61.2%
▪ 갈사만 진입도로 4호선	1,000	1,898	838	△1,060	△55.8%
▪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3,000	5,050	0	△5,050	순감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간선도로	2,000	7,029	0	△7,029	순감
▪ 신덕지구 진입도로	4,503	4,547	1,080	△3,467	△76.2%
▪ 팔마사거리-신대단지간 도로	9,000	3,575	1,073	△2,502	△70.0%
▪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3,800	4,780	1,788	△2,992	△62.6%
▪ 포승지구 간선도로	-	-	1,260	1,260	순증
▪ 경산지식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	-	2,000	2,000	순증
▪ 국비 지원 종료 등	29,446	12,075	0	△12,075	순감
□ 비목(합계)	53,023	44,122	14,723	△29,399	△66.6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53,023	44,122	14,723	△29,399	△66.6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반시설 조기구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세부사업별 사업기간내 사업 준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441	▪ 12개 도로 등 기반시설 연차 사업비 441억원
'16	147	▪ 9개 도로 및 1개 용수공급시설 연차 사업비 147억원
'17	67	▪ 1개 도로 연차사업비 67억원
'18	-	-
'19	-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추진경위

- '02.12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 3개 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개청
- '04.5월 : 기반시설 국고지원기준 마련(제4차 경자위)
- '08.4월 : 3개 경제자유구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추가선정
- '08.7~8월 : 3개 구역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개청
- '13.2월~4월 : 2개 경제자유구역(충북, 동해안권) 추가선정 및 개청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기타 기반시설 지원	710	537	491	441	14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이월 : 실시설계 변경 및 토지·건물이전 협의지연으로 45억원 이월

* 갈사만조선산단 내부간선(15억원),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15억원), 갈사만 진입4호선(7.5억원), 미음지구 진입(7.5억원)

○ 2013년 이월 : 광특회계 세수부족으로 100억원 이월

* 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90억원), 송도6-8공구 광3-29호선(10억원)

○ 2014년 이월 : 산업단지 개발지연 및 매칭지방비 미확보로 이월

* 대송산단 내부간선(15.3억원), 갈사만조선산단내부간선(30억원), 신항북측배후지용원간 도로(15.2억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710	0	△126	584	539	45	0
	(710)	(315)	(△126)	(899)	(512)	(327)	(60)
'13년	537	45	0	582	482	100	0
	(537)	(327)	(-)	(864)	(595)	(269)	(-)
'14년	491	100	0	591	530	61	0
	(491)	(269)	(-)	(760)	(331)	(429)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전년 5~9월	예산계상 신청 (예타대상사업은 예타신청도 병행)	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
	↓	
	예산 요구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	
	예산안 편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국회
	↓	
전년 10~12월	예산 심의·확정	국회
	↓	
1~2월	국고보조금 예산내역 통보	산업통상자원부→구역청
	↓	
	지방비 확보자료 및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제출	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
	↓	
수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
	↓	
	국고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구역청
	↓	
사업완료시	사업비 정산	구역청→산업통상자원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국가기술표준원

세 입

□ 혁특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 (A)	2016예산 (B)	증 감 (B-A)	%
혁특회계	23,751	23,800	0	▽23,800	▽100

관	항	목	2014결산	2015 예산 (A)	2016 예산 (B)	증 감 (B-A)	%
합 계			23,751	23,800	0	▽23,800	▽100
관유물매각대			23,751	23,800	0	▽23,800	▽100
	고정자산매각대		5,206	8,426	0	0	0
		▪ 건물매각대	5,206	8,426	0	0	0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8,545	15,374	0	▽15,374	▽100
		▪ 토지매각대	18,545	15,374	0	▽15,374	▽100

건물매각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건물매각대	8,426	8,426	0	-	-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지방이전 기관 재산매각에 따른 수입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0		'11		'12		'13		'14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건물매각대	-	-	-	-	-	-	5,583	4,594	8,426	5,206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8,426	○ 국가기술표준원 건물매각대 = 18,377(매각대금) X 46% = 8,426
'15년	8,426	○ 국가기술표준원 건물매각대 = 18,377(매각대금) X 46% = 8,426
'16년	0	○ -
'17년	-	○ -
'18년	-	○ -

※ 2013년 국가기술표준원 국유재산매각계약에 따라 2015년까지 징수완료 예정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해당없음

토지매각대(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백만원)

구 분	'14예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토지매각대	35,313	15,374	0	▽15,374	▽100

□ 세입개요

○ 세입 내용

- 지방이전 기관 재산매각에 따른 수입

○ 법적 근거

-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세입실적

○ 연도별 세입실적

(백만원, %)

구분	'10		'11		'12		'13		'14		연평균증가율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건물매각대	-	-	-	-	-	-	22,396	19,652	35,313	18,545	-	-
(전년대비증가율)	-	-	-	-	-	-	-	-	-	-	-	-

□ 예산내역

○ 징수전망 및 산출근거

(백만원, %)

구분	금 액	산 출 근 거
'14년	35,313	○ 국가기술표준원 토지매각대 = 78,609(매각대금) X 44.91% = 35,313
'15년	15,374	○ 국가기술표준원 토지매각대 = 78,609(매각대금) X 20% = 15,374
'16년	0	○
'17년	-	○ -
'18년	-	○ -

※ 2013년 국가기술표준원 국유재산매각계약에 따라 2015년까지 징수완료 예정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 없음

□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 없음

세 출

국가기술표준원 세출예산현황

(백만원, %)

사업명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 표준정책국	57,424	39,504	39,463	△41	△0.1
○국가표준활성화	5,040	4,497	4,287	△210	△4.7
○국제표준활동지원	2,148	2,642	2,298	△344	△13.0
○국제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47,571	29,145	30,096	951	3.2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812	1,216	1,095	△121	△10.0
○기술표준정책	1,853	2,004	1,687	△317	△15.8
<일반회계> ; 제품안전정책국	5,909	6,523	6,353	△170	△2.6
○안전제도기반조성	2,414	2,493	1,977	△516	△20.7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495	3,495	3,749	254	7.3
○제품사고조사및수입제품안전관리	-	535	627	92	17.2
<일반회계> ; 적합성정책국	5,458	28,408	29,134	726	2.6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2,072	1,968	2,266	298	15.1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443	1,282	1,197	△85	△6.6
○신기술제품인증	1,943	2,248	2,137	△111	△4.9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1,000	1,250	1,445	195	15.6
○표준안전기반구축(R&D)	-	21,660	22,089	429	2.0
<일반회계> ; 기술규제대응국	3,495	4,685	7,048	2,363	50.4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2,000	2,000	4,059	2,059	103.0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1,119	1,119	-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900	890	1,115	225	25.3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595	676	755	79	11.7
<일반회계> ; 지원총괄과	1,753	1,468	1,751	283	19.3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22	1,468	1,451	△17	△1.2
○국가기술표준원충북혁신도시이전정착	631	-	-	-	-
○청사이전지원(이주지원비)	-	-	300	300	-
총계	**74,039**	**80,588**	**83,749**	**3,161**	**3.9**

국가표준활성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국가표준활성화	4,985	4,497	4,287	△210	△4.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9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강병구), 표준정책과장(박주승, 043-870-5340), 팀장(박종섭, 043-870-534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WTO·FTA체계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간 상호협력 확대 등을 위해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를 추진하고 국민행복가치중심의 표준화 확대 및 유망신산업 견인을 위한 융·복합분야 표준인프라를 조성

○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여 KS개발· 관리 업무를 이양함으로써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 다변화 등 新산업환경변화에 따른 민간수요중심의 표준화 기반조성

○ 산업표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적시성 있는 산업정책 수립·추진

○ KS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활동인 시판품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량 KS 인증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해를 방지

○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통해 대국민 표준인식 확산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표준교육을 실시하고 표준에 대한 이해 제고와 표준 인력 양성을 통한 민간중심의 표준화 활동 활성화에 기여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1,545백만원

-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주요 이슈별 표준화 정책개발, 전략분야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표준정책 연구
- 창조산업견인 등을 위한 유망선도분야 표준화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 관점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개발
- KS 제·개정·폐지, 표준서식 및 유사표준 중복성 검토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등

▪ 산출내역 :

* 정책연구 : 7과제 × 40백만원(‘14년 평균용역비) = 280백만원
* 연구용역 : 19과제 × 40백만원(‘14년 평균용역비) = 760백만원
* 회의수당 : 610회(‘14년 679회 개최) × 0.8백만원(1회 평균수당) = 488백만원
* 인쇄비, 출장비 등 기타비용 : 17백만원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1,681백만원

- 분야별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시장수요에 따른 신속한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 최근 국제표준, 기술발전 추세 및 산업계 표준화 수요를 반영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에서 유지·관리(전체 77%)하는 KS 현행화·정비

▪ 산출내역 : 52개 기관[1] × 32.3백만원(‘14년 평균 출연금)[2] ≒ 1,681백만원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현재 61개 지정)
2. 지정분야 표준화 수요조사, 국가표준 제·개정(안) 마련, 기술위원회 운영 등

③ 표준화 실태조사 : 230백만원

- 「산업표준화법」 개정(시행 ‘15.7월)에 따라 정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 60여개의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관 체계를 활용하여 산업분야별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실태 및 신규 표준화 수요를 신속 파악·지원

▪ 산출내역: 설문방문조사 180백만원(3,000업체×6만원) + 기초조사연구 50백만원(표본설계 등)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501백만원

- 불량 KS제품 시중유통근절 및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

▪ 산출내역 : 334개 업체('14년 137업체 조사) × 1회 × 1.5백만원[1]= 501백만원

1. 1.5백만원 = 시료구입비, 시험수수료, 출장비 등 전체 평균 금액

⑤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 50백만원

- 표준의 날 행사 개최비로, 규모 및 포상 수준은 전년과 동일하나 예산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15년 대비 90%수준으로 감소

▪ 산출내역 : 행사비 40백만원 + 홍보비 10백만원

⑥ 국제표준올림피아드 : 100백만원

- 청소년 표준화 과제 해결 경진대회인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운영

-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로 대회 확대 개최를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하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 수준으로 요청

* '14년 2개 국가 참여(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15년 7개 이상 국가 참여 예정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일본, 나미비아, 르완다, 페루 등)

▪ 산출내역 :

* 대회 운영비 : 통역비, 과제개발 및 재료비, 기타 수용비 등 = 70백만원

* 대회장 임차 : 대회장 및 숙박/식비 = 30백만원

⑦ 표준화교육 : 180백만원

- 표준화 연구학교 지정 및 '찾아가는 표준교육'을 위한 사업비

▪ 산출내역 :

* 연구학교 지정운영 : 5개교×100명×10만원 = 50백만원

* 찾아가는 표준교육 : 50개교×100명×1만원 = 50백만원

* 교재개발・교사연수 등 : 8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최근 정책기조(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따른 표준화 지원 시급

- 창조경제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 국정과제 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증액 필요

* 국정과제 :「1-1-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신성장동력 표준선도)」
「1-1-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보건의료표준화)」

- 부처 기술기준과 국가표준(KS)의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의 중복인증 부담 해소를 위한 강제인증기준과 중복된 국가표준 정비 시급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2-7 KS와 기술기준간 중복인증 일원화」

○ 최근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국가표준 개발·정비 수요 증가

- 국제표준 추세 및 新산업분야 표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표준 개발정비 확대로, 전문가 회의 및 관련 표준연구개발 예산 필요

* 연도별 국가표준 종수 : ('80) 7,029 → ('90) 8,552 → ('00) 10,845 → ('14) 20,510

- 국가표준은 제·개정 후 5년 주기로 업데이트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어, 매년 최소 4천여종이상의 KS정비 수요 분석 필요

* 최근 국가표준 정비건수 : ('11) 1,571 → ('12) 2,362 → ('13) 4,854 → ('14) 4,051

○ 수요자 중심의 산업표준 정책의 개발과 수립의 필요 증가

- 국내외 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적시성 있는 국제·국가표준 등의 활용 및 표준화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필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국가표준화 요구 증대

- 국민불편해소, 사회적약자 배려 등 국민행복 가치중심의 표준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표준 개발 등을 위한 예산 필요

* 정부3.0 과제명 : 국민행복 표준화 국민참여 채널 다양화 및 표준활용 확산

○ 불량KS인증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방지를 위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 기업의 인증부담완화를 위해 정기심사시 제품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시판품 조사 확대 시급

○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표준 전문가 양성 필요

- 표준이 의·식·주 및 공공분야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이 필요
- WTO/FTA 체제하에서 표준은 국제무역규범으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에 대응할 차세대 전문가양성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국가표준활성화	4,985	4,497	4,287	△210	△4.7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2,177	1,545	△632	△29.0
▪ (표준화 정책연구)	750	-	-		
▪ (표준부합화 개발정비)	2,095	-	-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1,840	1,840	1,681	△159	△8.6
▪ 표준화실태조사			230	230	순증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195	501	306	157.0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	70	55	50	△5	△9.0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	100	100	-	-
▪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130	130	180	50	38.0
□ 비목	4,985	4,497	4,287	△210	△4.7
▪ 일반수용비(210-01)	123	87	264	177	203.0
▪ 시험연구비(210-13)	640	541	895	354	65.0
▪ 위탁사업비(210-15)			100	100	순증
▪ 국내여비(220-01)	17	17	17	-	-
▪ 국외여비(220-02)	11	12	10	△2	△17.0
▪ 사업추진비(240-01)	50	50	50	-	-
▪ 정책연구비(260-02)	2,073	1,120	760	△360	△32.0
▪ 정책연구비(260-02)	-	600	280	△320	△53.0
▪ 민간경상보조(320-01)	230	230	-	△230	순감
▪ 출연금(350-01)	1,840	1,840	1,911	71	3.9.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WTO체제하의 개방화시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추세를 반영한 국가표준 개발 및 정비 확대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의 다양화 등 新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상향식 표준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도입 확대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신성장산업·복지·사회적책임 등 시스템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참가국 수 확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와의 공조를 통한 국제대회로 격상, 기존 중·고등부 운영에 초등부를 추가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인 대회 규모 확대

○ 초등학교 표준화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표준 및 표준화에 대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확대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45.0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47과제x46.3백만 ≒ 2,177백만원 ▪ 표준개발협력기관 57개x 32.3백만 ≒ 1,840백만원 ▪ KS시판품 조사 130개 업체 × 1.5백만원 ≒ 195백만원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5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6	43.9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45과제x46.3백만 ≒ 2,083백만원 ▪ 표준개발협력기관 57개x 32.3백만 ≒ 1,840백만원 ▪ KS시판품 조사 130개 업체 × 1.5백만원 ≒ 195백만원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5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7	39.9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36과제x46.3백만 ≒ 1,667백만원 ▪ 표준개발협력기관 57개x 32.3백만 ≒ 1,840백만원 ▪ KS시판품 조사 141개 업체 × 1.5백만원 ≒ 212백만원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5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8	37.5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30과제x46.3백만 ≒ 1,389백만원 ▪ 표준개발협력기관 57개x 32.3백만 ≒ 1,840백만원 ▪ KS시판품 조사 160개 업체 × 1.5백만원 ≒ 240백만원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5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19	35.6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30과제x46.3백만 ≒ 1,389백만원 ▪ 표준개발협력기관 51개x 32.3백만 ≒ 1,647백만원 ▪ KS시판품 조사 165개 업체 × 1.5백만원 ≒ 248백만원 ▪ 세계 표준의 날 운영: 50백만원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100만원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13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 제22조(제품인증)
  -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산업표준화법
  -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 · 제5조의2(출연금)
  - · 제6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협의)
  -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 제30조의2(실태조사)

- WTO/TBT협정
  - · 제2조 제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추진경위

- 2000.11『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국가표준제도기반구축(국가표준 종합정비체계의 확립, 국가표준체계 혁신, 국가표준화 활동기반 강화), 적극적인 국가표준 선진화 활동전개(성문표준의 세계화, 전략적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표준 활동강화) 등을 수립

- 2006.5『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중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

* 국가표준체계의 선진화(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시스템 혁신,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제도 도입), 민간표준활성화(민간표준화 역량의 전략적 육성, 생산자단체의 표준제정활동 촉진, 표준전문가인력양성 및 활용시스템 활성화)

-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산업표준화법 명문화 규정

- 2007.6『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계획』수립

- 2008.7『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8년도 시행계획』수립

- 2009.6『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0.6『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표준개발 : 신성장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 원천기술 국제표준 선점, R&D-표준화 연계 활성화 등
* 기업하기 좋은 표준기반 구축 : 기업 친화적 인증제도 개선, 사용자 편의형 표준지원, 측정표준 글로벌 산업 경쟁력 선도 등
*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표준화 : 생활 밀착형・서비스 표준화, 사회안전・보안 표준화, 공공・행정표준화 등
* 민간-정부가 함께하는 표준행정 실현 : 선진형 표준체계 구현, 민간 표준참여 향상, 표준관련 부처협업 등

- 2011.4『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2.3『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2.7『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기업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 : 부처별 인증 중복해소, 인증기간 및 비용단축 , 규제 합리화 추진 등
* 국가표준・인증체계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 기술기준과 표준과의 조화 및 중복성 사전검토, 기업수요 중심의 KS인증제도 개선 등
* 중장기 글로벌 표준강국 발전 방안 : 원천기술 표준・인증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국제규범 선점을 위한 표준・인증외교 강화 등

- 2013.6『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4.3『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5.5『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가표준활성화	48.8	48.6	50.4	45.0	42.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 집행잔액 등 40백만원 불용

○ '13년 : 2건의 연구개발사업 일정지연으로 68백만원 이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232백만원 불용

○ '14년 : 3건의 연구개발사업 일정 지연으로 37백만원 이월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48.8**	-	-	48.8	**48.4**	-	0.4
	(20.8)	(-)	(-)	(20.8)	**(20.8)**	(-)	(-)
'13년	**48.6**	-	-	48.6	**48.6**	0.7	2.3
	(17.6)	(-)	(-)	(17.6)	**(17.6)**	(-)	(-)
'14년	**50.4**	0.7	-	51.0	**49.8**	0.4	0.9
	(20.7)	(-)	(-)	(20.7)	**(20.7)**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산업위 지적 사항) 동 사업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14년도 말 기준 표준개발협력기관 57개 중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기관이 20개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행복표준화는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것으로 표준화 일정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며, 환경부의 기술기준과 중복되거나 표준제정의 실효성이 없어 미추진된 과제가 다수 발생하였음(제도개선)

⇒ 표준개발협력기관(61개, '15년도)을 분야별 7개 협의체로 구성하고 협의체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협력기관 사업실적을

점검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였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표준개발협력기관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협력기관이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또한, 국민행복표준화 과제선정 절차시 이해관계자 및 유관부처의 의견수렴과 표준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타당성 검토” 절차를 추가함(조치완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표준개발협력기관

항목	일 본	미 국
제도명	특정표준화기관 (CSB: Competent Standarization Body)	표준개발기관 (SDO : 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
관련법	공업표준화법 제12조	SDOAA: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Advancement Act 등
기관수	일본규격협회 등 3개 기관 지정 (원안작성단체 500여개)	250여개
절차	심의 간소화 추진	표준심의위원회에서 SDO개발 표준의 절차적 하자 심의

○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교육

- (ISO) 표준교육 운영 우수 대학 시상, 표준교육 개도국 대상 지역워크숍 개최, 제네바 표준교육 대학원 과정 지원

* ’14년도 발간을 목표로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중

- (CEN) 유럽표준화기구(CEN-CENELEC-ESTI) 표준교육 작업반 운영

○ 미국의 표준화 교육

- 국립기술표준원(NIST)를 중심으로 표준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게 표준교육 실시

○ 중국의 표준화 교육

- 국제환경 요인에 충족하는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박사후 과정까지 표준교육을 강화

* (초·중·고) 표준과 표준화의 개념, 표준의 종류, 표준개발 절차, 국제표준화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표준화 활용 장점 등을 교육

○ 일본의 초등생 표준화 교육

- 경제산업성에서는 실생활과 사회에서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 강의

* (초) 일상생활의 표준사례, 표준의 기능, 그림문자를 사용한 의사소통
* (중) 표준 및 표준화의 개요, 표준화 및 비표준화 사례, 미래의 표준화
* (고) 표준개요, 일본의 표준, 표준화 및 국제표준의 중요성, 각국의 활동

○ 영국의 청소년 표준화 교육

- 초중고 표준화 교육을 국가 교과과정으로 운영

* 영국 교육부에서는 7-11세, 11-14세/14-19세를 구분하여 표준화교육 실시

- 영국표준화기구(BSI)는 '08년부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표준화 체험기회 제공

* 학생이 표준화 주제 선정·계획, 주최측의 심사 후 우수자에게 시상

(5) 사업추진절차

○ 국가표준 정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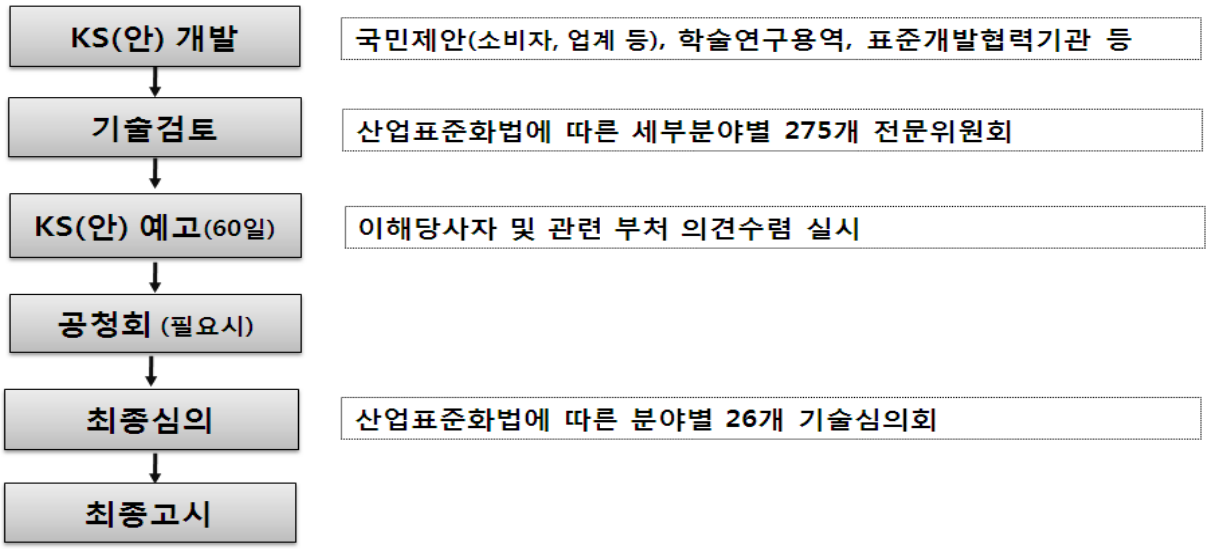

○ 표준개발협력기관 사업지원 절차

○ 표준이행확산기반구축(세계 표준의 날)

- 공고 및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포상자 선정 ► 기념식 기획 ► 기념식 개최

○ 청소년 표준올림피아드

- 과제 개발 ► 대회 홍보 ► 예선대회 개최 ► 본선대회 개최 ► 결과 시상

○ 초등학교 표준화 교육

- 연구학교 지정 ► 교사 W/S ► 연구학교 운영 ► 중간평가 실시 ► 운영보고회 개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국민행복표준화 추진계획

□ 추진 배경

o **국가표준은** 과거 **산업육성중심**으로 추진되어 국가발전을 주도해 왔으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수요자중심의 표준** 정책은 **다소 미흡**

* '62년 KS제도 도입하여 국제표준 등을 도입하여 산업계에 보급('13, 20,482종)

o 따라서, 국민불편해소, 사회적약자 배려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민행복가치 중심의 표준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추진 내용

○ (과제 발굴) 생활 속 40개 국민행복 표준화과제를 선정하여 개선하고, 지속적인 신규 과제도출을 위한 국민제안 접수채널 확대

< 국민행복표준 3대 분야 40개 과제 >

① **편안한 사회(13개)** : 층간소음방지, 노트북충전기호환, 가전제품(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소음평가, 건축단열소재 등 표준화로 편안한 국민생활에 기여

② **함께하는 사회(13개)** : 장애인용 전자책,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요구사항, 노인 요양원.복지관 서비스 등 표준화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구현

③ **풍요로운 사회(14개)** : 레저.엔터테인먼트(영화, 스키장, 관광 등) 서비스, 차량 정비.보험서비스, 기능성의류 품질 등 표준화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참고 2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개요

□ 표준개발협력기관 역할 및 지정요건

o 표준개발협력기관

- 국가표준중 민간이 관리 가능한 분야를 민간에 이양하여 국가표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표준**에 **신속 반영**

* 국가표준 제·개정절차 중 **표준개발·관리 등의 집행업무**를 전문성 있는 분야별 **민간기관을 활용**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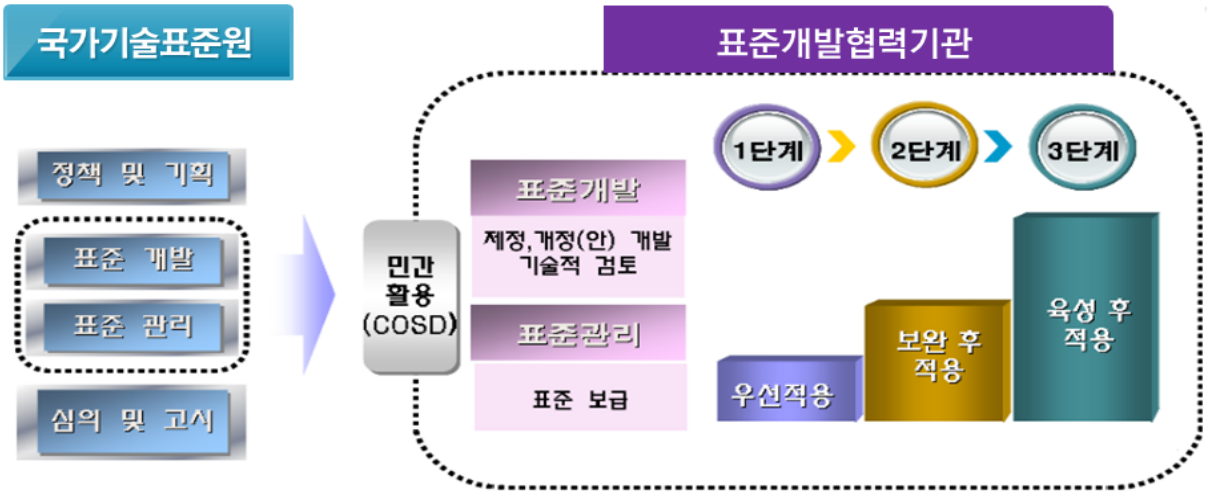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3항,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이양업무** : 표준개발 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 단체 등을 COSD로 지정하고 국가표준 **제·개정안 개발** 업무 위탁

o COSD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지정요건 :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가진 **자발적 참여기관**

· 정관 또는 직제규정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를 지정

· 표준개발책임자와 표준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 운영

□ COSD 운영현황 ('15.6월말 기준)

o 지정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총 61개 기관**

o 지정표준 : 전체 KS 20,582종 중 16,512종**(80.2%)** 관리 이양

참고 3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시판품조사 개요

o 불량 KS인증제품의 시중 유통근절 및 소비자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시판품조사 실시

* 산업표준화법 제20조(시판품조사 등)에 의거 시판품조사(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현장조사(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를 실시

※ 시판품조사 절차 : 계획수립 → 조사실시 → (필요시)행정처분 → 인증기관 개선 확인

□ '14년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연번	조사품목	조사업체수(개)
1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3
2	나트륨램프 안전기	1
3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금속제 박스 및 커버	1
4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17
5	배선용비닐절연전선	4
6	저압 서지 보호장치	12
7	누전차단기	23
8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6
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6
10	속빈 콘크리트 블록	2
11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1
12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2
1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3
14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9
15	포틀랜드시멘트	1
16	건축용 실링재	12
17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6
18	덕타일 주철관	2
19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1
20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21	복층유리	1
2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염화비닐(PVC) 관	1
23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이중벽관	1
합 계		**137**

참고 3 표준교육 참고자료

□ 초등학교 표준교육

○ **(찾아가는 표준교육)** 표준선진국 기반조성을 위해 어릴 때부터 표준에 대한 이해와 기초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1일 방문 추진**

- '15년 접수 결과 12개 시·도 329개 초등학교에서 신청

구분	강원	경기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충남	계
개수	52	68	31	5	43	15	20	20	9	2	2	62	**329**

○ (연구학교 운영) 교육부를 통해 지정하여 각 학교 자율적으로 연단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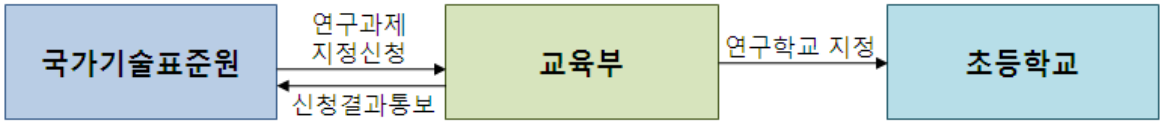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 청소년의 표준에 대한 이해 도모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예선과 본선을 거쳐 **표준화와 관련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진대회**

* '06 시행, '14 국제대회 확대 추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참가), '15년 7개국 참가 예정

○ '14년 운영 결과

- 예선('14.6.09~20) : 중등부 112팀, 고등부 129팀. 총 241팀 접수
- 본선('14.8.11~12) : 국내 본선 총 60팀 240명, 국제 초청팀 총 4팀 21명

구 분		내 용
1일차 (8.11)	11:00 ~ 21:00	개회 및 과제해결활동
	21:00 ~ 23:00	심사위원회 개최
2일차 (8.12)	08:30 ~ 12:00	발표 및 평가
	13:30 ~ 14:30	우정 만들기 행사
	15:00 ~ 16:30	시상식 및 폐회

고등부 팀 과제 수행

중등부 팀 과제 수행

제9회 표준올림피아드 개막식

대상, 금상, 은상 수상자 단체 사진

국제표준활동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국제표준활동지원	2,137	2,642	2,298	△334	△13.0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2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강병구), 국제표준과장(정기원, 043-870-5350), 연구관(김홍준, 043-870-535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해당없음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2. 사업목적

○ 국내전문가의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주요국과의 표준협력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진출 확대, 주요 국제표준화회의 국내유치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 표준주도 세계교역에서 비관세 기술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표준에 우리나라 기술 이식하여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의 원천 표준인프라 확충

-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8번(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으로 수행 중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지원 : 836백만원**

- 34회 × 약 15백만원 (평균 1회 개최 임차비용) = 523백만원
  (2015년) 24회 × 약 15백만원 → (2016년)34회 × 약 15백만원
- 회의자료 인쇄, 통역비 등 운영비 : 34회 × 약 3.7백만원 = 126백만원
  (2015년)24회 × 약 3.7백만원 → (2016년)34회 × 약 3.7백만원
- 주요국 표준(ASTM, ASME) 등 자료구입비 : 84백만원
- 국제간사업무용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20백만원
- 국제표준화활동업무지원 보조인력 활용비 : 14백만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지역표준화기구, 주요국가와의 국제표준협력 회의체 운영 등을 위한 자료 확보 : 69백만원

②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주요 국가(기구) 표준협력강화 지원 : 512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116명(지원대상자수) × 약 3.5백만원 (1회 평균 출장여비) = 407백만원
  (2015년)138회 × 약 3.5백만원 → (2016년)116회 × 약 3.5백만원
-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 : 30명 × 약 3.5백만원 (1회 평균 출장여비) = 105백만원
  (2015년)35회 × 약 3.5백만원 → (2016년)30회 × 약 3.5백만원

③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200백만원**

- 6건 × 약 33.3백만원(1회 평균 연구용역비) = 200백만원
  (2015년)3건 × 약 33.3백만원 → (2016년)6건 × 약 33.3백만원

④ **국제 의장·간사 활동 지원(민간보조) : 750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 : 160회 x 약4백만원 = 640백만원
  (2015년)129회 × 약 4백만원 → (2016년)160회 × 약 4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2.5백만원 × 2명 × 12월 = 60백만원
- 의장간사협의회 및 워크숍 : 7백만원 × 2회 = 14백만원
- 전략기획 등 국제 의장・간사 지원 경비 : 36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기술의 세계시장 선점 필요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대응,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진출, 국제표준회의 국내유치, 양자·다자 국제표준협력 등 기술외교 지원확대가 절실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국가표준기본계획의 비전인 "2018년 세계 7위의 국제표준강국(상임이사국) 목표" 달성을 위해,

▶ 국제표준화회의 임원(정책위임원, 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수임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활동 대폭 강화 필요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수임 확대 : ('10) 112명 ⇒ ('18) 200명

▶ 또한, 우리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지원 확대 필요

*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 ('10) 390건 ⇒ ('18) 800건

○ 일본에 이어 최근 중국이 ISO/IEC 상임이사국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한·중·일 중 우리나라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기술이 국제표준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 제기

*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더 나아가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 중

* 국정과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세부과제 3 (기술과 아이디어, 상상력을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창출)
단위과제 1 (우리 기술의 국가.국제표준화 연계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국제표준활동지원	2,137	2,642	2,298	△ 344	△ 13.0
▪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644	581	836	255	43.9
▪ 국제표준화회의 및 주요국가(기구) 표준협력	644	597	512	△ 85	△ 14.2
▪ 국제표준화 선도정책 연구	99	100	200	100	100
▪ 국제의장·간사 활동 지원	750	650	750	100	
▪ 2015년 ISO 총회 개최	-	714	-	△ 714	순감
□ 비목					
▪ 인건비(110-03)	13	14	14	-	0
▪ 일반수용비(210-01)	114	115	210	95	82.6
▪ 임차료(210-07)	396	361	523	162	44.9
▪ 국외업무여비(220-02)	644	597	512	△ 85	△ 14.2
▪ 사업추진비(240-01)	71	71	69	△ 2	△ 2.8
▪ 연구개발비(260-00)	99	100	-	△ 100	순감
▪ 정책연구비(260-02)	-	-	200	200	순증
▪ 민간경상보조(320-01)	750	1,364	750	△ 614	△ 45.0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예산의 충분한 확대지원으로 국제표준 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충실한 이행이 요구

○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한 비전인 "2018년 세계 7대 국제표준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표준화회의 임원(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수임을 2010년의 2배로 확대하는 등 국제표준화활동 대폭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 임원(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컨비너) 수임 확대 : ('13) 140명 ⇒ ('18) 220명

▪ 국제표준 제안 확대 : ('13) 563건 ⇒ ('18) 840건

▪ 주요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 ('14) W3C(월드와이드웹 국제표준화기구) 총회 및 ('15) ISO(국제표준화기구)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18)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를 유치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6.4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77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81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20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1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650백만원 ▪ ISO총회 개최 : 714백만원
‘16	23.0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07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836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05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2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750백만원
‘17	21.4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07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675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05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2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750백만원
‘18	20.1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05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99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05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2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700백만원
‘19	19.1	▪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 : 400백만원 ▪ 국제회의 국내개최, 심포지움 개최 등 : 559백만원 ▪ 국제협력활동 강화 : 100백만원 ▪ 국제표준정책수립 : 200백만원 ▪ 국제 의장·간사 활동지원 : 65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

- 국가차원의 국제표준화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0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

- '10.5.29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공통표준화 등 표준협력을 추진키로 선언하는 등 표준협력사업 중요성의 지속적 증대

-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실적이 '02년에 24건에서 '13년 563(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제표준 도입국에서 국제표준화 주도국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

-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

  * 국정과제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제표준활동지원	18	21	22	27	23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 집행잔액(1백만원) 불용
○ 2013년 : 예산절감액(98백만원) 불용
○ 2014년 : 집행잔액(11백만원)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7.98			17.98	17.97		0.01
	( )	( )	( )	( )	( )	( )	( )
'13년	20.98			20.98	20.00		0.98
	( )	( )	( )	( )	( )	( )	( )
'14년	21.48			21.48	21.37		0.11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영국 통상부(DTI)는 자국 표준화기구인 BSI의 표준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02년 6월엔 영국 정부(DTI)와 BSI간의 MoU 체결을 통해 이를 명문화함 (4.3조 4항)

* 국제회의경비지원(AITS, Assisted International Travel Scheme, 1982년 시작)

○ 일본은「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연구개발 · 표준화 전략방안('08.7월 공표)」을 수립하여, 정부예산으로 표준전문가에 대하여 국제표준화활동 참가경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시행 중

○ 미국은「표준우산(Standard umbrella)」정책으로 APEC국가의 결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표준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제 의장·간사 진출에 총력을 기울임

○ EU는 뉴어프로치 정책으로 표준을 경제·사회 통합 수단으로 활용, 특히 독일은 실용적인 표준화 정책을 통해 세계 2위 기술수출국으로 도약

○ 중국도 표준정책을 10대 국가 정책 중 하나로 추진(´07)하고, 후진타오 주석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自主創新 보고서'에서 자주적 표준확보를 위해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연계

(5) 사업추진절차

【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
① 기술표준원내 각 국별 내부수요조사 및 외부기관/개인 수요조사 공고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 수요조사(전년 12월)
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지원내역 각과 통보(1월)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2월-익년 1월)

【 보조금 수행 】
① 보조금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전년 12월)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법 조문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 우리나라 국제표준화 활동 현황

1. 국제기구 정책위원회 위원 활동

구 분	직 책	구 성	위 원	임기	담당과
ISO (162개국)	Council(이사회) 위원	20개국	허경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14~'16	국제표준
IEC (83개국)	CB(이사회) 위원	15개국	최갑홍 전기전자시험원구원장	'12~'17	국제표준
	SMB(표준화관리이사회)위원	15개국	이정준 LS산전 이사	'15~'17	국제표준
			신명재 한국표준학회 부회장	'09~'17	
	CAB(적합성평가이사회)위원	15개국	이병국 성균관대학교 교수	'16~'18	국제표준
			이응로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07~'15	
	MSB(시장전략이사회) 위원	13개국	삼성디스프레이 김학선 전무	'12~	국제표준

2. 국제기구 기타위원회 위원 활동

구 분	분 야	구성	위 원	임기	담당과
ISO	TMB/CCCC(기후변화조정위원회)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실장	'14~	화학서비스
	COPOLCO/TG 3(위조제품) 컨비너		박현호 용인대 교수	'13~	화학서비스
IEC	SMB/ACTAD (전기송배전자문위원회)	19명	최종웅 인코어드테크놀로지(주) 대표	'05~'15	전기전자
			심응보 한전전력연구원 수석	'11~'15	전기전자
	SMB/ACEA(환경자문위원회)	11명	이화조 영남대 교수	'14~	전기전자
	SMB/ACEE(에너지효율자문위원회)	22명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책임	'11~	전기전자
	SMB/ACSEC(안보자문위원회)	9명	김정덕		전기전자
	SMB/SG 8(스마트 제조)	18명	홍승호 한양대학교 교수	'14~	전기전자
			권대현 LS산전 책임		
	CAB/WG 14(홍보)	10명	이응로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관	'15~	국제표준
	CAB/WG 17(사이버 보안)	40명	이상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15.03~	국제표준

3. ISO/IEC 기술위원회(TC/SC) 가입현황

구분	기술위원회 수			우리나라 가입									P 멤버 가입율
				P 멤버			O 멤버			계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ISO*	728	221	507	544	167	377	171	56	115	715	223	492	74.7%
IEC**	187	111	76	130	68	62	33	24	9	163	92	71	69.5%
합계	915	332	583	674	235	439	204	80	124	878	315	563	73.7%

* ISO현황에 JTC, JPC 현황 포함
* IEC/TC 100 소속 14개 TA 포함, IEC/CISPR 소속 S(Steering Committee)는 제외

4.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및 의장 진출현황

(단위 : 명)

구 분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계
계	**16**	**22**	**128**	**166**
ISO*	14	18	93	125
IEC**	2	4	35	41

* ISO WG 간사 총 7명 불포함, ISO현황에 JTC 현황 포함
** IEC TA의장 1명, TA간사 2명, TA부간사 1명, 부의장 2명, 부간사 4명 총 10명 불포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
ISO	의장	13	16	16	13	13	14	14	14	14
	간사	11	12	14	15	17	17	17	18	18
	컨비너	25	37	46	56	59	67	79	90	93
IEC	의장	1	2	3	3	2	1	1	1	2
	간사	4	4	4	4	4	4	4	4	4
	컨비너	9	10	12	16	17	19	25	33	35
합계	의장	14	18	19	16	15	15	15	15	16
	간사	15	16	18	19	21	21	21	22	22
	컨비너	34	47	58	72	76	86	104	123	128
	소계	63	81	95	107	112	122	140	160	166

5. 국제표준화회의 참가현황(TC/SC/WG)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
회의수	298회	276회	279회	209회	202회	176회	196회	225회	173회
참가인원	1,484명	1,561명	1,591명	1,321명	1,519명	1,328명	1,382명	1,387명	1,016명

6.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
개최수	40회	52회	42회	28회	32회	33회	34회	20회	25회
참가규모	2,407명	4,313명	2,649명	1,534명	3,217명	1,797명	3,122명	2,496명	1,620명
비 고		COPOLCO 총회							

7.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현황(누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0
ISO*제안	22	39	51	51	48	44	42	43	39	43	26
IEC제안	5	6	10	12	30	19	18	15	16	35	13
제안실적	27	45	61	63	78	63	60	58	55	78	39
누적합계	80	125	186	249	327	390	450	508	563	641	680

* ISO 제안 현황에 JTC 신규제안 현황 포함

8. 표준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현황 (39개국 51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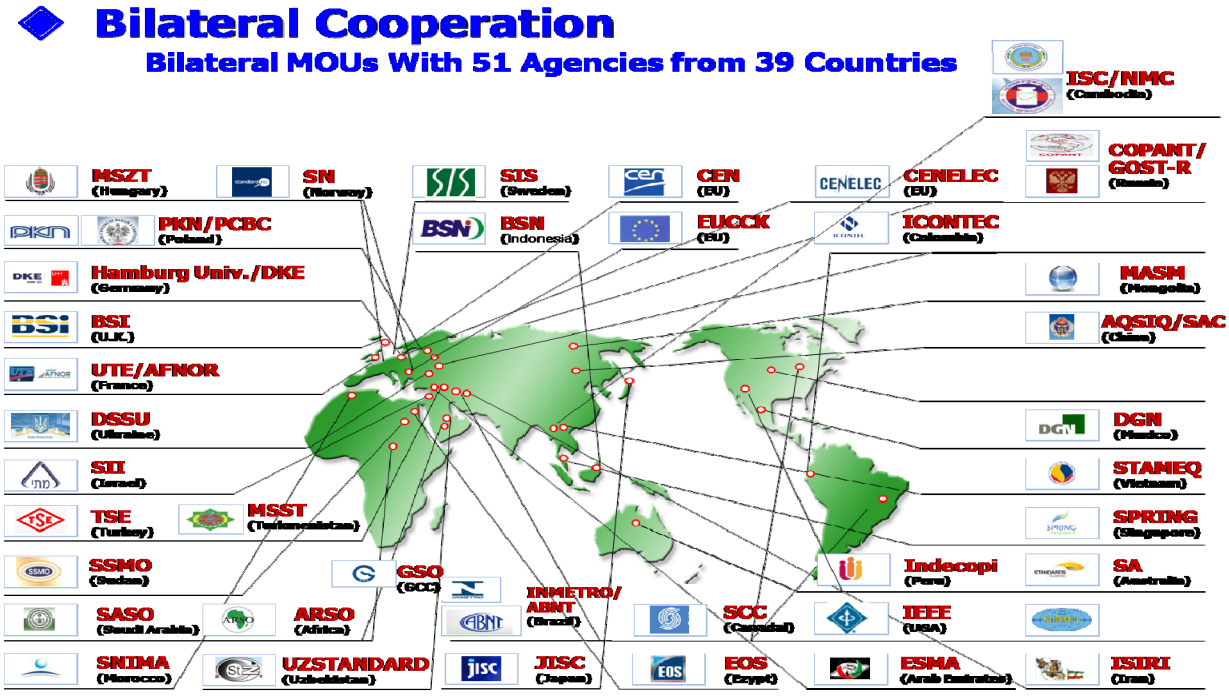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28,890	29,145	30,096	951	3.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4 - 3700 - 3745 - 302

* 담당자 : 표준정책국(강병구국장), 국제표준과(정기원과장, 043-870-5350), 연구관(조영돈, 535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정부출연(100%)
사업시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분석기관 등

2.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조표준 개발·보급,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연구 및 국책과제의 표준화 조율·지원

- 기술선도 및 융·복합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추진, 표준화 기반구축 등을 통해 수출 시장 선점 견인
- 산업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성장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 연구, 국책과제(국가R&D, 실증사업 등) 표준화 조율·지원 등을 통한 국가표준 경쟁력 강화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 등 창조경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국제표준 개발 및 표준화 기반조성 등 지원

('15년 : 24,095백만원 → '16년 : 26,046백만원, '15년 대비 1,951백만원 증액)
-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분야 국제표준 개발 등 신규과제 지원 : 5,550백만원
- 수출전략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 대응 등 계속과제 지원 : 20,496백만원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참조표준데이터의 개발
('15년 : 2,250백만원 → '16년 : 2,250백만원, '15년과 동일)
-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 720백만원
- 국가참조표준 활용 모델 기획 및 개발 : 940백만원
- 국가참조표준 DB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590백만원

③ (국가표준코디네이터) 미래성장산업 등 주요 산업분야별 표준기반 R&D 기획연구 및 국책과제의 표준화 조율·지원, 국내 기업 표준화 자문 등 수행
('15년 : 2,000백만원 → '16년 : 1,000백만원, '15년 대비 1,000백만원 감액)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 : 800백만원
-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및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등 : 200백만원

④ (기획평가관리비)
('15년 : 800백만원 → '16년 : 800백만원, '15년과 동일)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3개 사업의 신규·계속과제 평가, 분석, 관리 등 : 8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미래 新산업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기존 주력산업 및 기술선도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 등 지원 확대 필요
  * 창조경제 신산업 창출 등 정부의 중점 지원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선점 지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과학·기술 분야 참조표준의 체계적 개발과 보급·확산을 통해 기술개발 비용 및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보건·환경분야의 참조표준 개발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필요
  * 정부 3.0에 따라 여러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참조표준화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및 공개·개방을 통한 활용성 강화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기술간 융합으로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성장 분야를 확대하고, 표준개발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필요

  *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융·복합 분야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 도출 및 맞춤형 국제표준화 지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28,890	29,145	30,096	951	3.3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2,620	24,095	26,046	1,951	8.1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 · 보급	2,400	2,250	2,250	-	-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3,200	2,000	1,000	△1,000	△50.0
▪ 기획평가관리비	670	800	800	-	-
□ 비목	28,890	29,145	30,096	951	3.3
▪ 연구활동비 등 (360-05)	28,890	29,145	30,096	951	3.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미래성장동력, 융·복합 산업 등 우리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표준기반조성 및 중소중견기업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유망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 및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 국가표준 개발·보급 등으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

○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조표준 데이터를 지속 개발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

- 여러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데이터를 참조표준화 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 공개·개방을 통한 활용성 강화

○ 표준선점을 통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와 함께,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로 정부 및 기업 R&D 초기단계부터 표준화가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 수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91.45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40.95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2.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20 ▪ 기획평가관리비 : 8
‘16	300.96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60.46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2.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10 ▪ 기획평가관리비 : 8
‘17	300.96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60.46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2.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10 ▪ 기획평가관리비 : 8
‘18	300.96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60.46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2.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10 ▪ 기획평가관리비 : 8
‘19	300.96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60.46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2.5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10 ▪ 기획평가관리비 : 8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및 동법시행령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추진경위

- ’96월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2월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 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 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8.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5월 : 녹색성장위원위(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6월 :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ㅇ국가표준기술력향상	225	207	226.2	240.95	260.46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ㅇ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ㅇ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국가참조표준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
- ‘06.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참조표준의 제정·보급을 위한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데이터센터지정, 참조데이터 평가 및 참조표준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06.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 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06년~‘10년 : 연구소, 대학, 시험기관 등 21개 데이터센터 지정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신규사업
- ‘12년 : 24개 데이터센터 지정 21개 데이터센터 운영
- ’13년 : 27개 데이터센터 지정 24개 데이터센터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가참조표준 데이터개발·보급	10	20	24	22.5	22.5

③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존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 관리),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추진경위

- '10.4월 : "국책과제 표준 코디네이터」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10.12월 : 국가표준심의회 "선진인류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15) 수립"
- '11년 : 40억원(기술료)으로 시범 사업 실시
- '12년 : 25억원(표준기술력향상사업 과제)으로 2차년도 사업 실시
- '13년 : 35억원(R&D)으로 3차년도 사업 실시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35	32	20	1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262				262		
	(262)	( )	( )	( )	(262)	( )	( )
'14년	289				289		
	(289)	( )	( )	( )	(289)	( )	( )
'15년	291				291		
	(291)	( )	( )	( )	(291)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미국

- '00년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 '03년 상무부, 8개 항의 표준화 전략(Standard Initiative) 발표
- '08년 융합기술 연구개발(나노, 생명과학 재료, 기술 등)에 14.5억달러 투자

○ 일본

- '01년 표준화 활동의 성과보급을 위해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발족
- '03년 "신시대 표준, 인증제도 보고서"를 통해 표준화전략 등을 추진
- '07년 경제성장전략 대강 중 국제표준화 전략 목표 수립 및 추진
- '08년 5월 발표한 「Cool Earth 에너지혁신기술계획」에 따라 21개 탄소저감 기술을 선정 및 로드맵 작성·추진

○ EU

- '03년 EU 표준화기구의 2010 Vision(단일표준을 통한 무역촉진) 추진키로 하고 EU 각료이사회를 통해 표준화활동 지원 결의
- '06~'09년 기술융합개발 프로젝트 "Knowledge NBIC Project" 추진
- '07~'13년 범유럽 차원에서 추진하는 FP7에서 융합기술 개발을 확대 및 학제간 연구개발 추진 강화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미국

- '68년 '참조표준법(Standard Reference Act)'제정
- 미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이 참조표준사업 주도
- 7개 연구부서의 측정과학 연구활동과 연계하여 참조표준 개발

- 38개 분야 172개 참조표준 DB 개발 및 보급
- NIST에서 개발한 참조표준은 약 1,800개 기관에서 활용, 개인 컴퓨터용 제품(PC Product)은 매년 약 6,000개가 판매되고 있음.
- NIST와 미항공우주국(NASA)이 공동개발한 물질의 분광학 데이터는 전 세계 우주항공 산업분야에 널리 활용(연간 약 40억원 판매)

○ 일본

- '76년 통산산업성이 참조데이터 사업 본격 추진
-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산하의 61개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DB(RIO-DB) 구축 및 보급
- AIST 산하 첨단정보계산센터(TACC)에서 연구개발 DB 구축 및 운영
- 생명과학, IT, 나노/재료, 환경/에너지, 지구과학, 측정표준 등의 분야에서 94개 DB 개발 및 보급

○ 독일

- '74년 '참조표준진흥사업'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 연방재료시험연구원(BAM), 연방물리기술청(PTB)를 중심으로 화학, 재료, 표준물질 등 5개 DB 구축 및 운영
- 민간차원의 데이터 개발 및 보급
- 화공생명기술학회(DECHEMA)는 순수성분 및 혼합물 열역학물성에 관한 세계 최고의 DB인 DETHERM(Thermophysical Property DB) 개발 및 유료 판매

③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미국

- '90년 NIST(美국립표준기술원)의 주도로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를 고려하는 첨단기술계획보조금 프로그램(ATP)을 시행

* ATP : Advanced Technology Program

- '10년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표준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국가표준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R&D 연계 표준개발을 통합 조정

- 국립과학재단(NSF),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 등 R&D 전문기관들은 효율적 국가 예산운영을 위해 PD(Program Director) 제도를 도입·시행

○ EU

- (EU) '85년부터 에너지, 나노 등 7대 산업분야의 표준화 연계 기술 개발을 위하여 범유럽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인 'EUREKA' 도입

* EUREKA를 통해 공동개발된 기술은 자체가 유럽표준으로 정립(예: GSM 통신기술)

- (독일) 독일연구협회(DFG)는 R&D의 효율화를 위하여 PD 제도를 도입하여 R&D 기획제 운영

○ 일본

- '00년 '국가산업기술전략'을 수립하여 기술의 활용·보급을 위해, R&D 추진시 표준화와의 연계성, 추진목표 등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
- 일본학술진흥회는 R&D의 효율화를 위하여 PD 제도를 도입하여 R&D 기획제 운영

○ 한국

- '03년 정통부는 IT R&D의 성공률 및 사업화율 제고를 위해 민간 기술전문가가 기획·관리하는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
- '09년 한국은 유럽시장을 고려한 R&D-표준 연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EUREKA'에 준회원국(지경부)으로 가입
- '09년 지경부는 미래선도기술을 기획하고, 개발후 상용화 단계까지 책임관리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인 MD(Managing Director)·PD 제도 도입
- '09년 문화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위한 5단계 기술혁신 체계(과제기획-선정-수행관리-평가-활용) 수행을 위해 문화기술PD 제도 도입

(5) 사업추진절차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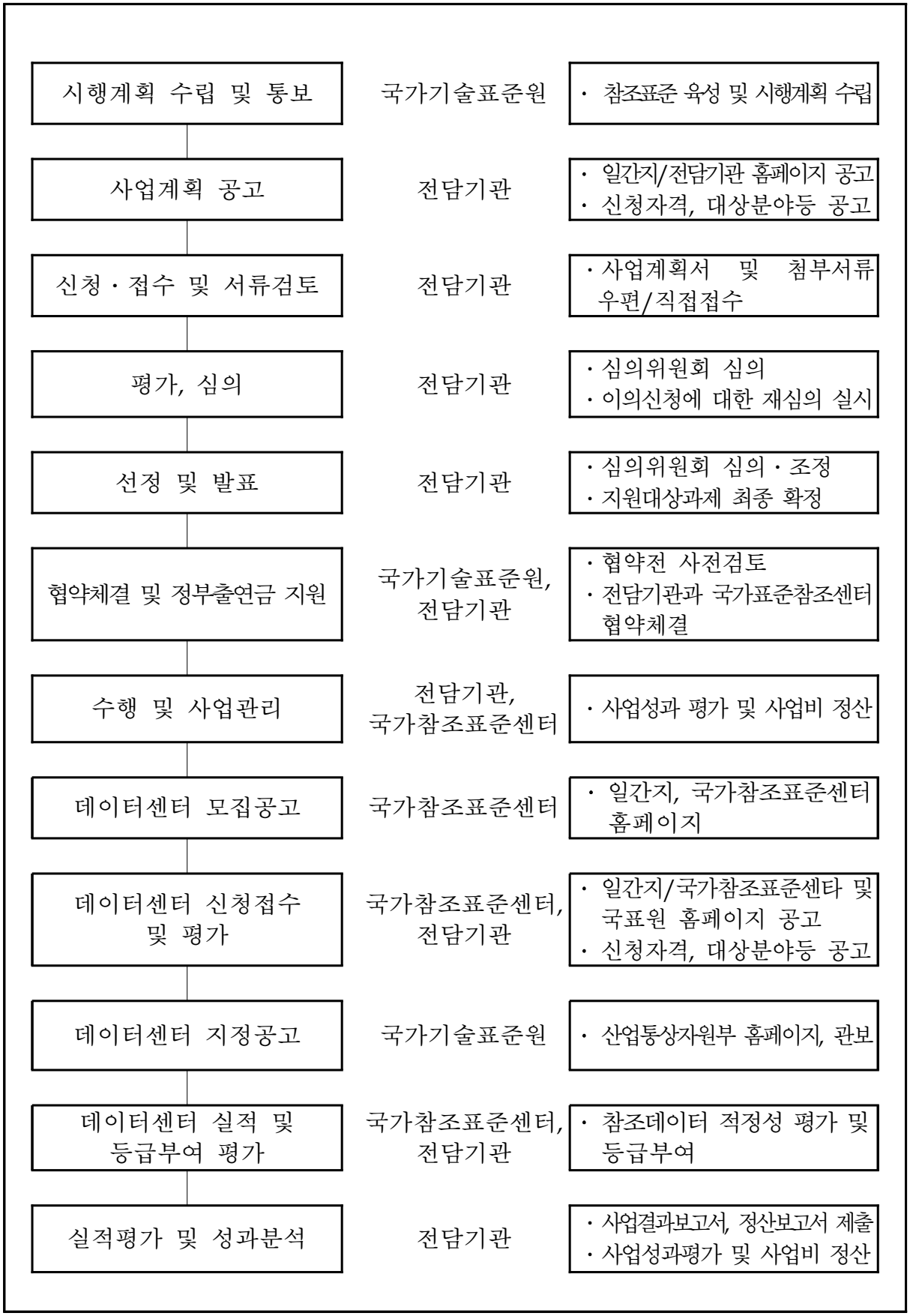

③ 국가표준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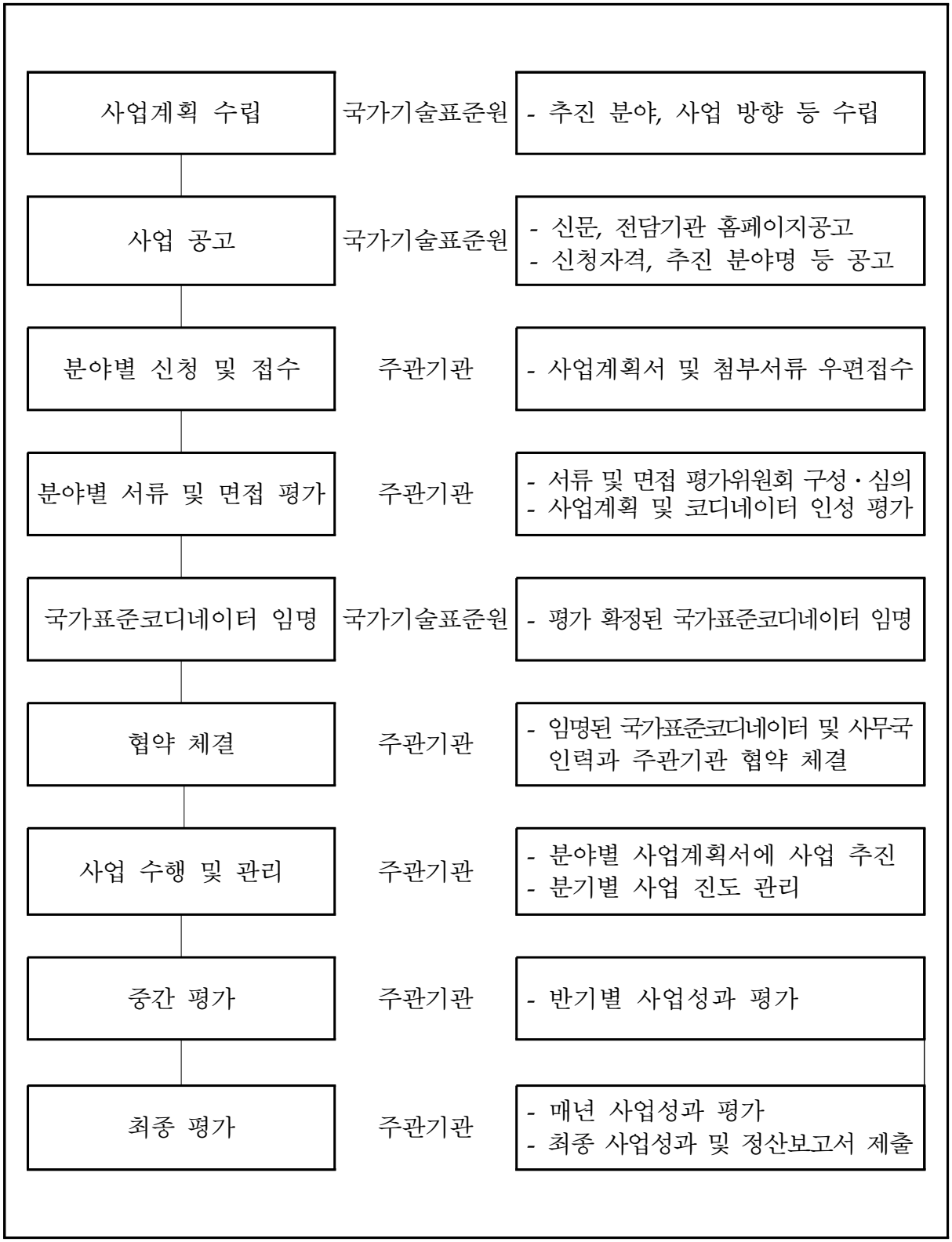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 해당사항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806	1,216	1,095	△121	△9.95%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4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강병구), 화학서비스표준과(장혁조, 043-870-5390), 사무관(김윤근, 539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년 ~ 계속
총사업비	1,095백만원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제품과 생활에 필요한 인체치수, 인체형상, 인체활동범위, 인지적 데이터 등을 조사하여 관련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기능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제규격 제안, 인체정보가 반영된 KS규격의 제·개정에 활용과 기업의 인간공학적 제품설계 및 기술 개발에 활용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인체정보 측정사업>

○ 인체의 동적범위 측정을 위한 사업비 : 325백만원

▪ 산출내역

- 측정 연구원 등 인건비 : 10명×6개월×3백만원 = 180백만원
- 측정경비 : 장비 대여비(50백만원), 피복비(10백만원), 회의비(10백만원) = 70백만원
- 피측정 사례비 : 2,500명×30,000원 = 75백만원

<인체정보 보급사업>

○ 인체정보를 적용한 설계가이드 개발 및 보급 사업비 : 200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 : 10명×5개월×3백만원 = 150백만원
- 개발경비 : 시제품 제작(10백만원), 측정장비 대여(20백만원), 회의비(14백만원), 피조사자 사례비(6백만원) = 50백만원

○ 인체치수 활용 국가표준(KS)에 대한 자료 현행화 사업비 : 200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 : 10명×6개월×3백만원 = 180백만원
- 개발경비 : 자료구입(5백만원), 회의비(5백만원), 전산장비구입(5백만원), 외장하드(4백만원), 소모품(1백만원) = 20백만원

○ 인체에 대한 3차원 D/B 라이브러리 체계구축 사업비 : 100백만원

▪ 산출내역

- 인건비 : 4명×6개월×3백만원 = 72백만원
- 개발경비 : 장비대여(15백만원), 회의비(5백만원), 활용소프트 구입(8백만원) = 28백만원

○ 인체표준정보실 운영 사업비 : 270백만원 소요

▪ 산출내역

- 인건비 : 2명×10개월×250백만원 = 50백만원
- 운영경비 : 재료비, 자료구입비 등 = 20백만원
- 측정장비 구입비: 3D인체측정기 1대×200백만원 = 27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소비자의 제품 사용에 대한 편리성과 작업자의 능률향상 및 작업피로 감소 등을 위해 '인체동작 범위를 측정하여 산업계에 보급이 필요

○ 인체정보를 활용할 기술력이나 인력의 부족 등 기업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인체 친화적 제품생산을 위해 인체정보를 적용한 설계가이드 개발 및 보급'이 필요

○ 국가표준(KS)에 최신의 인체치수 데이터를 현행화하여 산업계 등에 확산보급 함으로서 인체 친화적인 제품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

○ 전 산업에 걸쳐 활용되는 3차원 인체형상 자료에 대한 활용기반과 고품질의 자료제공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3차원 DB의 라이브러리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

○ 현행 인체정보 DB에 대한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각 산업분야별 수요에 적합한 인체정보 및 가공요청 사항의 제공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체표준정보실' 운영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806	1,216	1,095	△121	△9.95
▪ 인체치수측정사업	616	700	325	△375	△53.6
▪ 인체정보보급사업	190	516	770	254	49.2
[▪ 활용가이드 개발 및 보급]	-	236	200	△36	△15.2
[▪ 서비스 플랫폼 구축]	-	210	300	90	42.8
[▪ 홍보 및 정보실 운영]	-	70	270	200	285.7
□ 비목	806	1,216	1,095		
▪ 시험연구비(210-13)	9	45	45	-	-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 업무용역비(260-01)	793	1,167	846	△321	△27.5
▪ 자산취득비(430-01)	-	-	200	순증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의 한국인 인체정보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기업의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체정보의 신속한 보급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제품에 대한 인체친화적 제품 설계기능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216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727백만원 ▪ 인체정보보급사업 489백만원
‘16	1,095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325백만원 ▪ 인체정보보급사업 770백만원
‘17	1,018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200백만원 ▪ 인체정보보급사업 818백만원
‘18	957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200백만원 ▪ 인체정보보급사업 757백만원
‘19	909	▪ 인체정보측정조사사업: 200백만원 ▪ 인체정보보급사업 709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3조(정의),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산업표준화법 :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 확인 등)
- 통계법 : 제2조(기본이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통계작성기관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 제15조(통계작성기관의 지정)
- 통계법시행령 :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 추진경위

- (‘79~’02년) 의류치수 등 산업표준 제·개정을 위해서 국민체위조사 실시한 이후 5~7년 주기로 4차례 측정사업 수행
- (‘03~’09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급격한 체형변화로 최신의 인체치수 정보와 3차원 인체형상 자료, 동적치수 등을 조사하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및 인체형상 측정 사업 실시하고, 관련 정보에 대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승인 통계로 지정

- ('10~14년)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과 계층별 3차원 인체형상 측정 및 3차원 인체표준형상을 개발하여 보급

- ('15년)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과 인체정보 활용을 위한 제품설계디자인 가이드 개발하여 보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5.2	9.5	8.12	12.16	10.9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불용 사유 : 경상경비 절감

○ '12년 이월액 발생사유 : 계약체결 지연

○ '13년 불용 사유 : 경상경비 절감

○ '14년 불용 사유 : 조달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520	-	-	520	472	28	20
	( )	( )	( )	( )	( )	( )	( )
'13년	9.5	28		9.78	8.63	-	1.15
	( )	( )	( )	( )	( )	( )	( )
'14년	8.12	-	-	8.12	8.06	-	0.06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ㅇ 미국 인체치수조사사업 동향

- 2차대전 이후 인체치수DB 확보 중요성을 인식하여 '78년 미국 표준국에서 부처별 인체치수 조사사업을 통합하여 NASA를 통해 950개 항목을 조사
- '03~'04년 TC^2(Textile Clothing Technology Cooperation)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3차원스캐너를 통해 10,0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체측정 실시
- 데이터는 자체 전문가집단을 통해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하고 있음

ㅇ 유럽 인체치수조사사업 동향

- 영국은 '03~'04년 3차원스캐너 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들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1,000여명에 대한 3차원측정과 직접측정을 시행하여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Raw Data를 보급하고 그 외의 경우 가공하여 판매
- 프랑스는 '03~'04년 IFTH(The French Textile and Clothing Habillement)에서 10,000여명을 대상으로 인체측정을 실시하고, 공동 참여한 기업은 Raw Data를 사용 하고 그 외의 기업에는 Data를 판매

ㅇ 일본 인체치수조사사업 동향

- '65년 정부에서 기성복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3년간 4~29세 남녀 32,000명을 대상으로 64개부위를 측정하고 '71~72년에는 30세이상 남녀 9,000명을 조사하여 공개함
- '04~'07년 HQL(Research Institute of Human Engineering of Quality life)에서 10,000여명(0~80세이상)을 대상으로 3차원측정을 실시하고 측정된 자료는 HQL를 통해 Raw Data나 데이터를 가공하여 판매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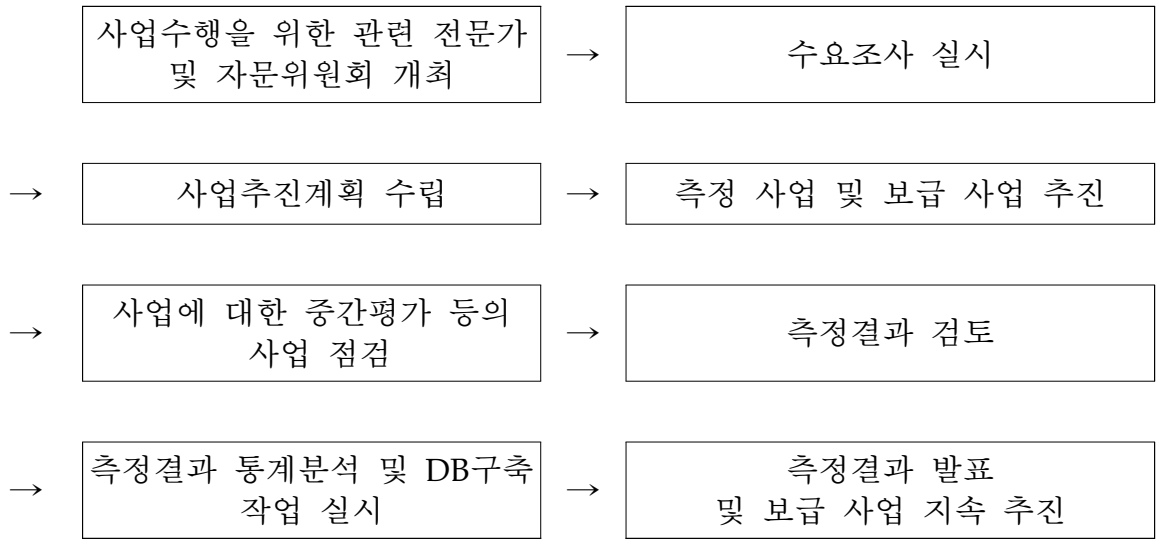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국내외 인체치수조사 추진현황

○ '79~'02년 : '79년 정부주도로 "제1차 국민체위조사" 명칭으로 시작하여 5~6년 주기로 4차례 실시

* 측정데이터는 의류·신발·책상·의자 등 관련 **한국산업규격에 활용**

○ '03~'09년 : '03년부터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으로 명칭 변경하여 제5차 사업 실시

* '05년 통계청으로부터 한국인 인체정보를 승인 통계로 지정
* 직접치수측정 이외 **3차원 인체형상측정 등 과학적 측정기법 도입**
* 전국 남녀(0~70세이상) 2만여명에 대한 **인체치수 및 3D인체형상 DB 구축**

○ '10~'15년 : 제6차 및 제7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사업과 계층별 3D인체형상 및 3D표준인체형상 개발 사업실시

사업연도	표본수	연령층	측정항목
제1차 (1979)	16,000명	0-50세	117개
제2차 (1986)	21,000명	6-51세	80개
제3차 (1992)	9,000명	6-50세	84개
제4차 (1997)	13,000명	0-70세	120개
제5차 (2003)	14,200명	0-70세	125개
제6차 (2010)	14,016명	7-69세	139개
제7차 (2015)	6,413명	16-69세	133개

* 계층별(5개) **3D인체형상 측정 및 표준형상 제작·보급 :** 성인(20~39세: '11년), 어린이(7-13세: '12년), 중장년층(40~69세: '13년), 청소년(14~19세: '14년), 고령자(69~85세: '15년)

<사례분석>

* 인체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전국민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료비 절감효과는 연간 약1,525억원 추정 [2011년 (주)날리지웍스 조사분석]
  -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비 지출규모 : 4,550,890백만원
  - 인간공학적 설계적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67%, 미국의 작업안전위생국 자료(OSHA)] : 3,049,096백만원
  - 인체데이터 활용을 통한 의료비 절감효과(5%, 관련전문가 추정치) : 152,455백만원

<산업적 효과>

* 인체치수 사업으로 100억을 투입할 경우[2011년 (주)날리지웍스 조사분석]
  - 생산유발효과 : 158.3억, 부가가치 창출 : 108.7억원, 고용창출 : 368.5명

기술표준정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기술표준정책	1,728	2,004	1,690	△314	△15.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2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강병구), 표준정책과장(박주승, 043-870-5340), 팀장(박종섭, 043-870-534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글로벌 표준경쟁이 심화되는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운영예산 필요

○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표준정책을 개발한 부서 포상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역량 극대화를 유도

○ 글로벌 표준리더국으로 도약을 위한 국제표준 선도, 국제표준화 기구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 회원 부담금 납부는 필수

○ 시험·검사·인증·품질업무 등 적합성분야 정책수립 및 운영을 위한 조사·분석, 시험·평가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 수행

○ 기술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외 제도와 관련 산업 실태조사,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 추세에 따른 신속한 대응 기반 마련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표준화기국 회원국 부담금(800백만원)

▪ 산출내역 : 11개 기구('14년 IECRE 신규가입) 약 800백만원

<최근 3년간 납부현황>

[단위: 백만원]

기 구 명	'12년 집행액	'13년 집행액	'14년 집행액
ISO(국제표준화기구)	597	579	566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168	153	162
IECQ(국제전자부품품질인증위원회)	6	6	6
IECEx(국제방폭전기기기인증위원회)	4	3	3
IECEE(국제전기기기인증위원회)	8	7	8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16	16	-
APLAC(아·태 시험기관인정협력체)	18	18	17
PAC(태평양인정협력체)	5	7	6
APLMF(아·태 법정계량포럼)	5	-	6
IAF(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	5	8	4
합 계	**834**	**797**	**778**

② 운영비(755백만원)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분야 관련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기타직보수,복리후생비 등) : 410백만원

  * 산출내역 : 180백만원×12개월×19명

- 숙련도 위원회 개최 등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계량·교정·품질업무 등) 운영 : 90백만원

  * 산출내역 : 30백만원×3분야

- 품질경영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 255백만원

  * 산출내역 : (우수기업 선정) 2일×3명×130업체×0.25백만원=195백만원
  (포상물 제작) 6개분야×500개×0.02백만원=60백만원

③ 연구용역비(130백만원)

-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 관련분야 조사·분석 및 제도 선진화 연구

  * 산출내역 : 4과제×32.5백만원(평균용역비)

④ **지식관리 포상금 지원(5백만원)**

* 산출내역 : 우수부서(1백만)×5과=5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글로벌 표준경쟁이 심화되는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표준선진화전략, 국제표준협력방안 등 기술표준 정책분야의 지속적인 정책연구개발이 필요

○ 국가산업발전 및 글로벌표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표준업무 관련 부서 포상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개인역량 강화 유도

○ 국제표준 선도,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확대(국정과제 8번)를 위하여,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회원 부담금 납부는 필수적인 사항임

○ 글로벌 표준경쟁이 심화되는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표준·제품안전·적합성·기술규제대응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과 운영예산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기술표준정책	1,728	2,004	1,690	△314	△15.7
▪ 운영비	703	969	755	△214	△22.1
▪ 연구용역비	243	241	130	△111	△46.1
▪ 포상금 운영	4	5	5		
▪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분담금	778	789	800	11	1.4
□ 비목	1,728	2,004	1,690	△314	△15.7
▪ 기타직보수(110-02)	339	372	369	△3	△7.5
▪ 일반수용비(210-01)	-	262	255	△7	△2.6
▪ 복리후생비(210-12)	6	6	6		
▪ 시험연구비(210-13)	343	294	90	△204	△69.4
▪ 정책연구비(260-02)	243	241	130	△111	△46.1
▪ 포상금 등(310-03)	4	5	5		
▪ 연금지급금(320-03)	15	35	35		
▪ 해외이전(340-02)	778	789	800	11	1.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최신 산업환경변화 및 국제표준 동향에 발맞춰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정책 수립에 요구되는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 국제기술표준 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리더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당분야 국제기구 회원국 유지 등 국제기술표준 협업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0.0	▪ 운영비 = 969백만원 ▪ 연구용역 : 8개×30.1백만 = 241백만원 ▪ 포상금 : 5개×1백만 = 5백만원 ▪ 부담금 : 10개 기구 = 789백만원
'16	16.9	▪ 운영비 = 720백만원 ▪ 연구용역 : 6개×30.1백만 = 181백만원 ▪ 포상금 : 5개×1백만 = 5백만원 ▪ 부담금 : 10개 기구 = 789백만원
'17	15.7	▪ 운영비 = 660백만원 ▪ 연구용역 : 4개×30.1백만 = 120백만원 ▪ 포상금 : 3개×1백만 = 3백만원 ▪ 부담금 : 10개 기구 = 789백만원
'18	14.8	▪ 운영비 = 660백만원 ▪ 연구용역 : 4개×30.1백만 = 120백만원 ▪ 포상금 : 3개×1백만 = 3백만원 ▪ 부담금 : 8개 기구 = 699백만원
'19	14.0	▪ 운영비 = 600백만원 ▪ 연구용역 : 4개×30.1백만 = 120백만원 ▪ 포상금 : 3개×1백만 = 3백만원 ▪ 부담금 : 8개 기구 = 68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 제22조(제품인증)
  ·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원)

○ 추진경위
-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 2006. 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 수립
-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11~2015)』 수립
- 2012. 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 2013.6『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4.3『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수립
- 2015.5『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수립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기술표준정책	18.9	19.4	18.5	20.0	16.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 51백만원 불용(사유:용역수행기관 자진해지) 등
○ 2013년 : 95백만원 불용(사유:예산절감액 및 국제부담금 환율변동 등) 등
○ 2014년 : 125백만원 불용(사유:예산절감 및 전문관 휴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893** (-)	- (-)	- (-)	2073 ( )	**2022** (-)	- (-)	51 (-)
'13년	**1945** (-)	- (-)	- (-)	1909 ( )	**1814** (-)	- (-)	95 (-)
'14년	**1853** (-)	- (-)	- (-)	1853 ( )	**1728** (-)	- (-)	125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정책연구용역 추진절차

각국 정책과	○ 연구개발 사업계획 작성
⬇	
해당부서(과, 팀)	○ 부서별 수요과제 제출
⬇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 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한 연구과제 선정
⬇	
해당 부서(과, 팀)	○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	
평가	○ 연구결과물 종합 평가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안전제도기반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 안전제도기반조성	2,384	2,493	1,977	△516	△20.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2 - 304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이승우), 제품안전정책과장(박형건, 043-870-5410), 주무관(조정웅, 043-870-5413)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2. 사업목적

○ 신제품 출시 등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안전기준 개발·보급, 대국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한 제품안전 문화 확산

- 제품안전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을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제품안전정책과 안전기준 개발에 적극 활용

- 제품안전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참여 촉진 및 자발적 리콜 분위기 조성 등 제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 추진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제품안전 기준 및 정책 개발 : 700백만원

- 제품안전 기준 제·개정 : 500백만원 (15종×33백만원)
- 제품안전 정책개발 : 200백만원 (5종×40백만원)

② 제품안전 보급 확산 및 국제협력 : 1,177백만원

- 제품안전 교육・홍보 등(민간보조) : 700백만원

* 제품안전 중요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영상 제작/지상파・지하철 등 홍보 : 400백만원
* 리콜기업, 제조・유통업체, 일반 소비자・사업자 등 맞춤형 제품안전 교육 : 100백만원
(교육내용 : 리콜제도 매뉴얼, 품목별 안전기준, 불법・불량제품 식별요령 및 신고방법 등)
* 제품안전분야 연구개발, 안전사고 감소 및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단체) 포상 : 100백만원
(제품안전의 날 포상규모(총46점) : 훈장1, 포장1, 대표1, 국표3, 장표24, 원표16점)
* 소비자, 기업, 지자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포럼 및 협의체 운영 : 100백만원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 및 국제기구 협력 등 : 477백만원

* 제품안전 관련 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 제작 및 회의 개최 등 : 337백만원
* 제품안전 국제기구(ICPSC, ICPHSO 등) 참석 등 협력 : 140백만원

③ 제품안전 관련 대국민「정책・정보 안내 시스템」운영 : 100백만원

- 제품안전정보제공 및 안전기준전산화 유지보수 : 100백만원

* 제품사고, 리콜, 인증 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수집 및 안전기준 개정 이력 관리 등

□ 지원 필요성

○ **(시장현황)** 제품 융・복합화, 유통시장 다변화로 제품안전관련 위해사례* 및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관련 안전사고** 접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제품사고 위해사례(건) : '13년) 26,079 → '14년) 30,375건 (16.5% 증가)
** 어린이 위해사례 접수(건) : '13년) 3,043건 → '14년) 4,361건 (43.3% 증가)

○ **(안전기준 정비)** 제품 안전기준 운영을 통한 사전 인증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사항

- 제품시장 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안전기준 운영을 위하여 주요국 안전기준 제・개정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융・복합화, 다양화 되는 제품의 특성 파악 및 이를 통한 신속한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

* 現, 전기용품 686종, 생활용품 124종 등 전체 810종의 안전기준 운영 중

○ **(제품안전의식 보급·확산)** 소비자·기업의 선제적인 제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품안전 의식을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교육 및 포상 필요

- 제품안전 의식개선은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 힘들어 지속적인 홍보·교육 등을 통한 소비자·기업의 안전의식 향상 도모

  * 홍보,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개선은 가장 강력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효과
  * 15년 지상파 광고 후 제품안전포털 1일 접속자수 약 6배 증가
    ('13년 1,472명 → '14년 2,388명 → '15년 14,964명)

➡ 제품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정비, 안전정책개발 및 제품안전의식 보급·확산을 추진하는 "안전제도 기반조성" 사업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안전제도기반조성	2,384	2,493	1,977	△516	△20.7
▪ 제품안전 기준 및 정책개발	592	700	700	-	-
▪ 제품안전 보급 확산 및 국제협력	993	1,093	1,177	84	7.7
▪ 제품안전 정책정보안내시스템 운영	299	200	100	△100	△50.0
▪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500	500	-	△500	△100.0
□ 비목	2,384	2,493	1,977	△516	△20.7
▪ 일반수용비(210-01)	240	333	320	△13	△3.9
▪ 임차료(210-07)	7	20	20	-	-
▪ 재료비(210-11)	50	50	50	-	-
▪ 위탁사업비(210-15)	99	100	100	-	-
▪ 국내여비(220-01)	16	16	23	7	43.8
▪ 국외업무여비(220-02)	56	50	40	△10	△20.0
▪ 사업추진비(240-01)	24	24	24	-	-
▪ 업무용역비(260-01)	592	600	700	100	16.7
▪ 민간경상보조(320-01)	1,100	1,200	700	△500	△41.7
▪ 자산취득비(430-01)	200	100	-	△100	△10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목표) 제품안전 기준 제·개정, 제품안전 정책개발을 통한 국민안전 사고 예방 및 소비자·기업 안전관리 능력 제고로 국제경쟁력 확보

○ (추진방향) 국제안전기준과 국내환경에 맞는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교육·홍보사업을 확대하여 안전사회 기반조성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4.93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093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 위해성평가 : 500백만원
'16	19.77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177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100백만원
'17	18.39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1,039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100백만원
'18	17.29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929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100백만원
'19	16.43	▪ 안전기준 정비·정책개발 : 700백만원 ▪ 보급확산·국제협력 : 843백만원 ▪ 제품안전관리시스템 운영 : 1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위해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외국 정부에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령한 경우
4.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협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제품안전기관과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 교류
2. 제품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교류
3.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활동 참가
4.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교육
2.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과 보급
3.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4. 기업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06.12.23.)
- ’07.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7.12.21)
- ‘10. 1월 전기용품 “제조자시험결과인정제도” 시행
- ‘10. 2월 “제품안전기본법” 제정(2.4)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2.5)
- ‘11. 3월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3.21)
- ‘14. 2월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2.27)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안전제도기반조성	22.2	26.6	24.2	24.9	19.8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 1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 (여비 39만원, 일반수용비 34만원 등)

○ 2013년 : 155백만원 불용

* 예산절감 (연구개발비 74백만원, 일반수용비 28백만원, 시험연구비 44백만원) 및 집행잔액(9백만원)

○ 2014년 : 30백만원 불용 및 12백만원 전용

* 예산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일반운영비 19백만원) 및 진행잔액(연구개발비 8백만원 등)

*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운영비 內 임차료(12백만원)를 일반수용비로 전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22.16			22.16	22.15		0.01
	( )	( )	( )	( )	( )	( )	( )
’13년	26.62			26.62	25.07		1.55
	( )	( )	( )	( )	( )	( )	( )
’14년	24.14		±0.12	24,14	23.84		0.30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외부기관 지적사항

- '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산업위 지적사항)

· 민간경상보조로 수행하는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 방법전파" 내역사업의 성격이 연구개발비와 유사하여 예산과목, 지원 및 추진방식 변경 필요

· 이에, '16년 예산 요청시 "생활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평가 방법전파"사업의 예산과목 및 수행방식을 변경 추진

* (예산과목 변경) 민간경상보조(320-01) → 연구개발비(260-00)
(수행방식 변경) 1개기관 지정 → 공개입찰

○ 사업평가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

평가시기	회계/기금	단위사업명 (세부사업)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고
2015년도	일반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안전제도기반조성,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82.0	**우수**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정상추진

평가시기	회계/기금	보조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2015년도	보조금	제품안전교육 및 홍보 등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

▸ 취약계층지원(Minority Outreach) 캠페인 및 사고정보의 신속한 전달
▸ 웹 환경에 맞는 홍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CPSC 2.0 구축

○ 다인종 밀집지역에서 취약계층의 안전의식 환기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후원)하에 전시회와 축제 등을 개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언론사나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정보제공

○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맞는 CPSC 2.0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정보제공 및 블로그, 유튜브, 위젯 등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EU >

▸ The Consumer Scoreboard 및 RAPEX annual report의 발행

○ E-News를 통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메일을 받아 볼 수 있으며, Health and Consumer Voice Newsletter를 통해 식품안전·소비자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제공

○ 「Your rights a consumer」 책자를 발행하여 소비자 권리를 알리며 매년 정기적으로 European Commision을 개최(Open door day)하여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EU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컨퍼런스를 진행

< 일본 >

▸ 제품안전강좌 개설 및 다양한 교육·홍보 책자 발간
▸ 제품안전 우수대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 운영
▸ 제품안전점검의날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품안전 문화정착 추진

○ NITE는 주부연합회, NPO법인 간사이 소비자 연합회 등과 공동 참여하에 제품안전에 관한 무료강좌 개설

○ 제품안전에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고 있는 기업을 '제품안전대책 우량기업'으로 표창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 및 기업의 제품안전활동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 운영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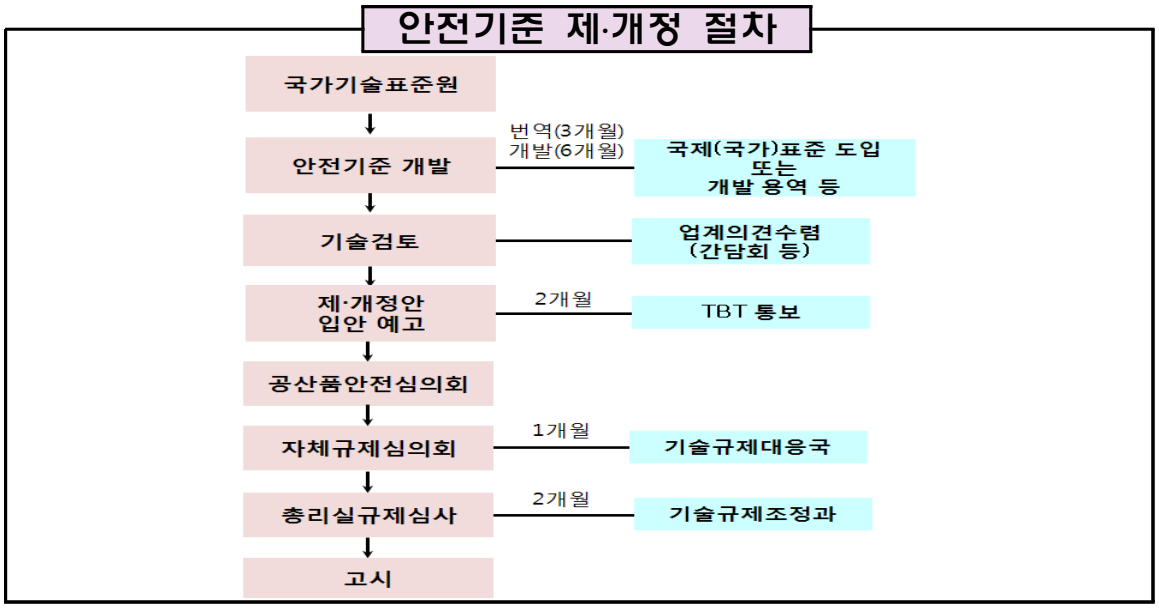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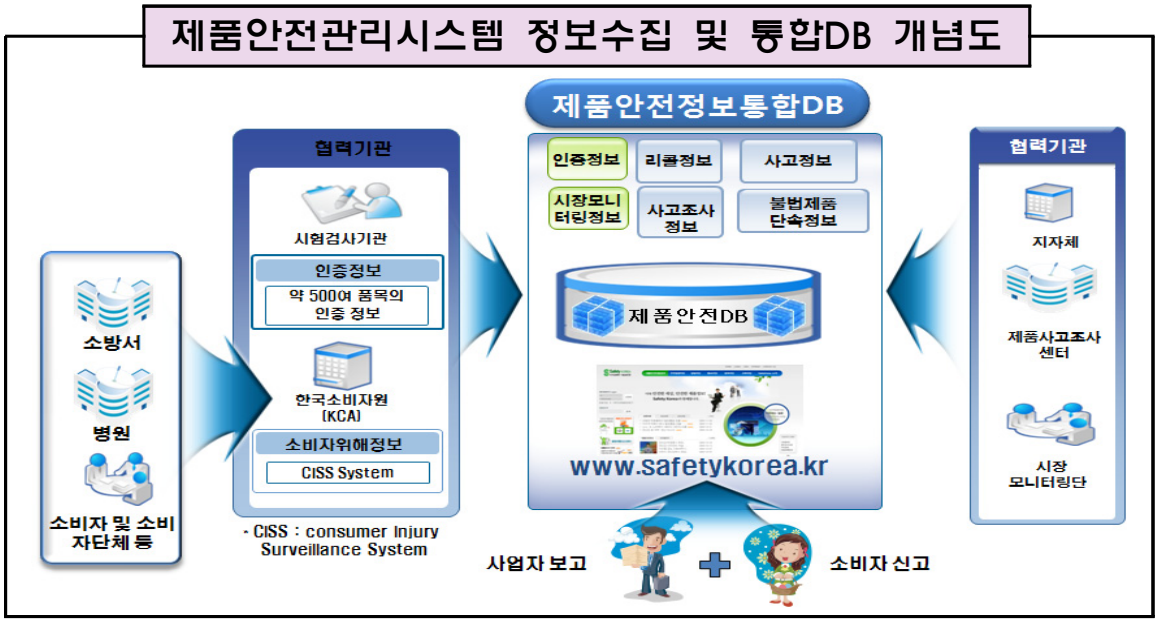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495	3,495	3,749	254	7.2

* 사업코드 : 21-11-0-110-114-3700-3732-303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이승우), 제품시장관리과장(전민영, 043-870-5420), 사무관(김상걸, 043-870-542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6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협회

2. 사업목적

○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

- 생활제품이 국민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불법·불량제품 조사 및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769백만원

○ 시중에 유통되는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뒤 부적합제품에 대해 리콜명령·권고의 행정조치를 실시

- 시중 유통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 2,769백만원

· (산출내역) 시료구입비 : 5,891건×10만원=589백만원
시험수수료 : 5,891건×35만원=2,061백만원
일반수용비 : 67백만원
국내 및 국외여비 : 22백만원
업무추진비 : 30백만원

②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 불법·불량제품(KC 미인증제품 등) 조사 및 고발, 리콜이행점검 및 불이행시 고발 실시

- 불법·불량제품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 (산출내역) 인건비 : 17명×30백만원=510백만원
출장비 : 180회×10명×50천원=90백만원

③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 380백만원

○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안전감시원(안전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불법·불량제품 및 리콜조치 대상 제품의 시장 유통여부를 감시

- 제품안전감시원 관리 : 80백만원

· (산출내역) 4개분야*x20백만원=**80**백만원
* 어린이용품,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전기용품 등 4개 분야

- 사이버쇼핑몰 감시 : 40백만원

· (산출내역) 1개분야×40백만원=**40**백만원

- 제품안전감시원 수당 : 260백만원

· (산출내역) 186명×28일×50천원=**26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및 융·복합 신제품 출시 등 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위해 사례 지속 증가 등 제품안전성조사 수요증가

* 위해관련 소비자신고현황 : '12) 61,498건 → '13) 65,405건 → '14) 67,037건

○ 사전 인증품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품 출시後 시장감시를 강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와 동시에 "소비자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성 조사, 불법제품 단속 및 리콜이행점검 확대, 안전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 시장사후관리기능을 강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3,495	3,495	3,749	254	7.2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2,515	2,515	2,769	254	10.0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600	600	600	-	-
▪ 안전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380	380	380	-	-
□ 비목	3,495	3,495	3,749	-	-
▪ 시험연구비(210-13)	2,485	2,485	2,739	-	-
▪ 위탁사업비(210-15)	380	380	380	-	-
▪ 사업추진비(240-01)	30	30	30	-	-
▪ 민간경상보조(320-01)	600	600	60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제품 안전성조사를 통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시켜 국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 제품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에 노력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34.95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515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등 : 380백만원
'16	37.49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769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600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등 : 380백만원
'17	34.87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597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570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등 : 320백만원
'18	32.78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498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480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등 : 300백만원
'19	31.14	▪ 시중 유통제품 안전성조사 : 2,354백만원 ▪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리콜제품 이행점검 : 460백만원 ▪ 안전모니터링 구성 및 운영 등 : 3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제품안전기본법」

· 제9조(안전성조사 등)
·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제19조(제품안전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 제21조(한국제품안전협회의 설립)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제14조(안전인증 등)
·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 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 제24조(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3조(안전인증)
·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제14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제6조(안전성조사)
· 제9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 제10조(어린이제품 수거등의 명령)
· 제17조(안전인증 등)
·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 제25조(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 추진경위

- ’03. 5월 대통령「어린이 안전원년」선포, 어린이 안전사고 경감 지시
- ’04. 4월 감사원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 지적
- ’04. 6월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대책 수립
- ’05.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부 개정(’05.12.23. 공포)
- ’06. 1월 공산품안전망구축사업(세부사업) 시작
- ’06.12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
- ‘06.12월 공산품안전관리종합 5개년계획 수립
- ‘09. 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09.1.1)
- ‘11. 2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 ‘11. 3월 제1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4. 1월 제2차 제품안전종합 3개년계획 수립
- ‘16.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20.7	34.7	34.9	34.9	37.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 집행잔액 5백만원
○ 2013년 : 집행잔액 144백만원
○ 2014년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20.70			20.70	20.65		0.05
	( )	( )	( )	( )	( )	( )	( )
'13년	34.72			34.72	33.28		1.44
	( )	( )	( )	( )	( )	( )	( )
'14년	34.95			34.95	34.95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사업방식 변경
- 본 사업은 타당성 및 관리의 적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새롭게 생겨나는 유통방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평가시기	회계/기금	보조사업명	평가결과	비고
2015년도	보조금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	사업방식변경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미국)** NEISS*, 웹포털 등으로부터 각종 상해·사고 정보를 취합하여 **리스크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위험군 분류 및 리콜조치

* 상해정보수집시스템(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 100여개 종합병원으로부터 CPSC 웹을 통해 매년 약 36만건 보고

-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비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세관에서의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통해 수입제품 단속

* 어린이 제품과 관련한 2011년 예산이 약 1억 2천만 달러(한화 약 2,400억원)로 2008년 대비 200% 증가

○ **(EU) Rapex*를** 운영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리스크평가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제품별 상세한 안전기준을 통해 사전 규제의 강도가 높고 광범위한 사후 안전성조사 실시하여 리콜 조치

- 회원국들은 '리스크평가기법'을 활용해 통보된 위해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활동 이행

* 위해정보시스템(Rapid Alert System for non-food dangerous products)을 활용하여 수집·분석된 정보의 약 90%가 리콜조치됨

<EU 위해정보 수집 및 활용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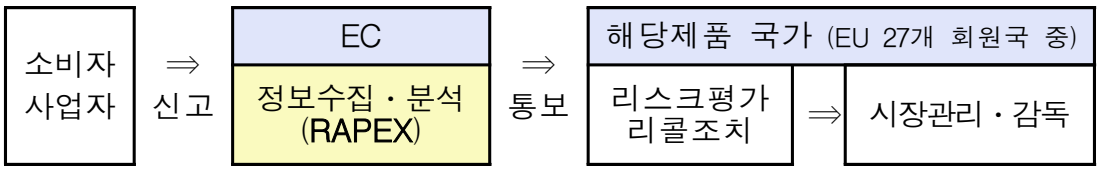

○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에서 제품사고조사 후 **R-map**(Risk-map)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경제산업성에 통보하여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활동 수행

○ **(호주) Clearinghouse***를 통해 제품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등 사고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업무절차를 개발하고 관련 자료 DB를 구축하여 리콜조치

* 사고정보시스템(Clearinghouse)의 업무처리 절차 : 사고정보수집→데이터 입력→초기평가→상세평가→제품안전위원회 행정조치 결정

(5) 사업추진절차

○ 제품 안전성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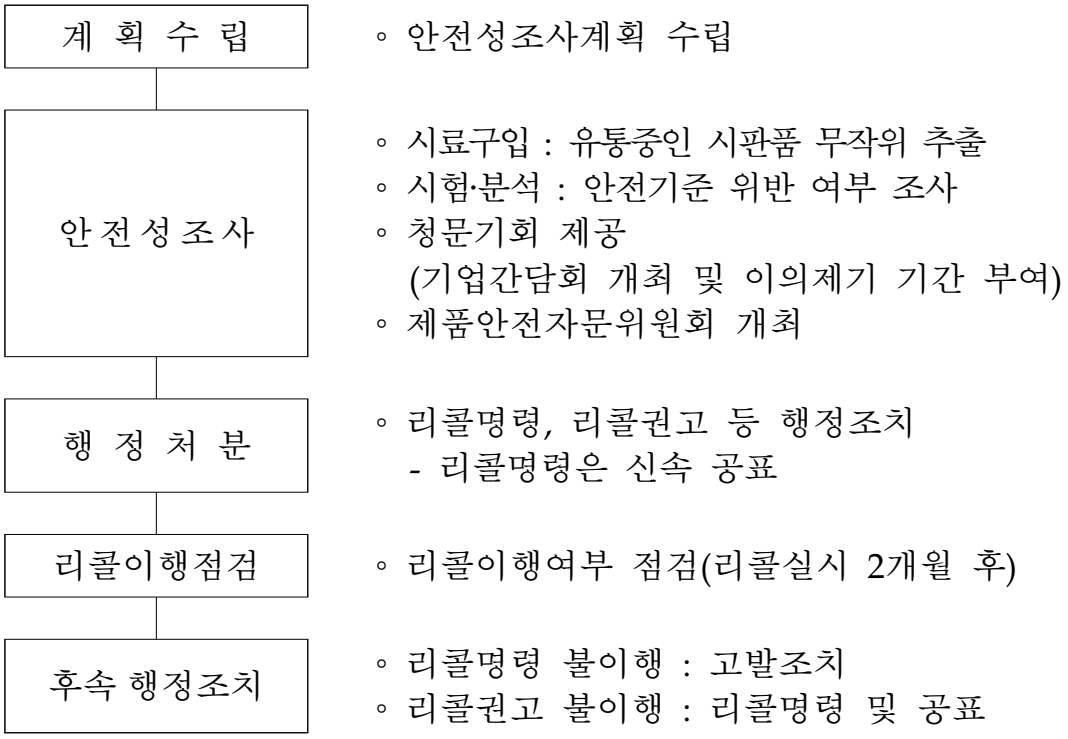

○ 불법·불량제품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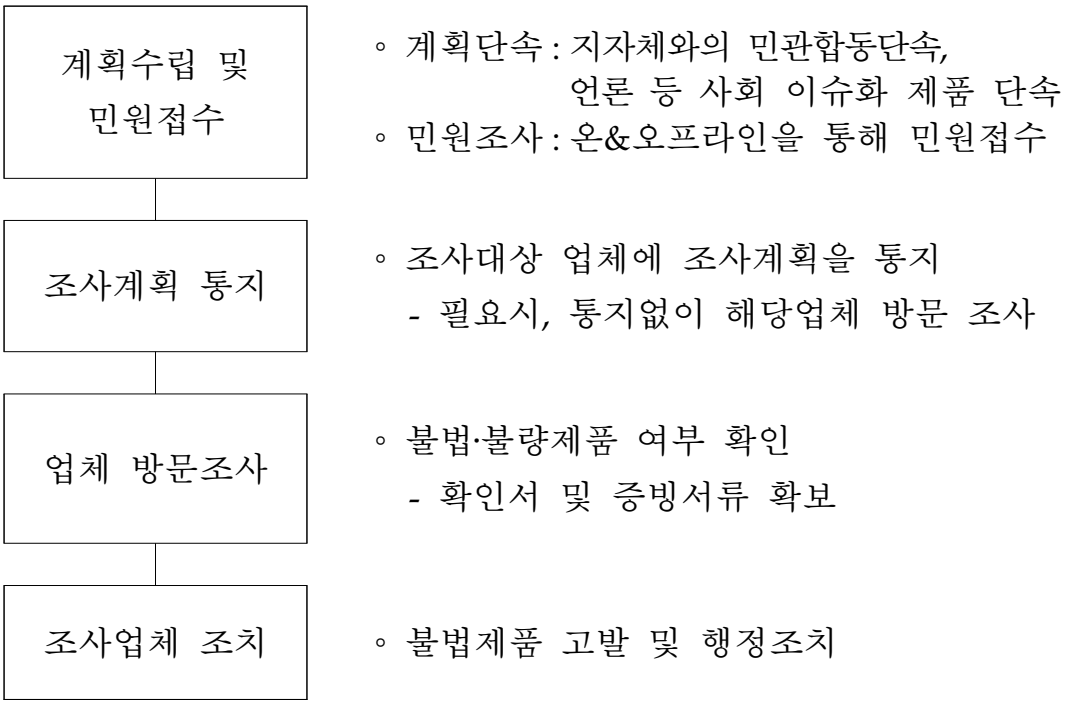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제품안전관리제도 개요)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해 제품 시장 출시 전후 全주기에 걸쳐 제품안전관리 실시

* 제품출시 前 안전성확인제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15.6.4 시행)

* 제품출시 後 결함제품 리콜관련 : 제품안전기본법

○ (시장출시 前)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지 사전인증 등을 통해 확인 후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

* 소비자 위해정도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로 안전관리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품질표시)

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구 분	마크	대상품목 (전기용품/공산품)	적 용 절 차
① 안전인증	(인증번호:)	50품목(39/11)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 증 ▶ 판 매
② 안전확인	(신고번호:)	96품목(63/33)	제품시험 ▶ 신 고 ▶ 판 매
③ 공급자 적합성 확인 (안전·품질표시)		114품목(71/43)	제품시험 ▶ 판 매

○ (시장출시 後) 정부의 안전성 조사 또는 소비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원인 조사 후 리콜(권고 또는 명령) 및 고발 조치

<제품안전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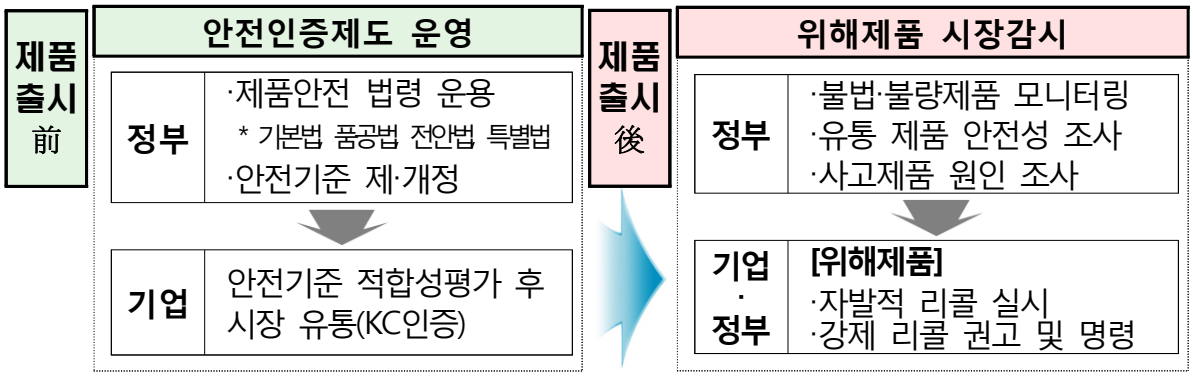

*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15년 신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535	627	92	17.2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2 - 306

* 담당자 : 제품안전정책국장(이승우), 제품안전정보과장(정승희, 043-870-5430), 연구관(김종윤, 043-870-543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각종 제품안전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사고조사제도를 이행(사고조사 후 결함제품 리콜)하고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 이행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제품 결함여부 조사를 위한 "사고조사제도" 이행 (200백만원)

- 사고접수 제품 결함여부 조사 등 : 80백만원

1) 시험비 : 50백만원=100건*40만원(시험수수료) + 100건*10만원(재료비)
2) 출장비 : 20백만원=100건*2명*10만원
3) 조사결과 결함판정 자문위원회 등 수당 : 10백만원 = 16건*4명*15만원

* 조사범위 : 자동차(국토부), 식·의약품(식약처) 등 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모든 생활 가정용제품 (완구, 의류 등 공산품과 컴퓨터, 세탁기 등 가전제품 포함)

- 사고다발제품에 대한 원인분석·평가 이행(정기조사) : 120백만원

1) 전기장판 등 사고다발 제품에 대한 평가 및 분석 : 30백만원 * 4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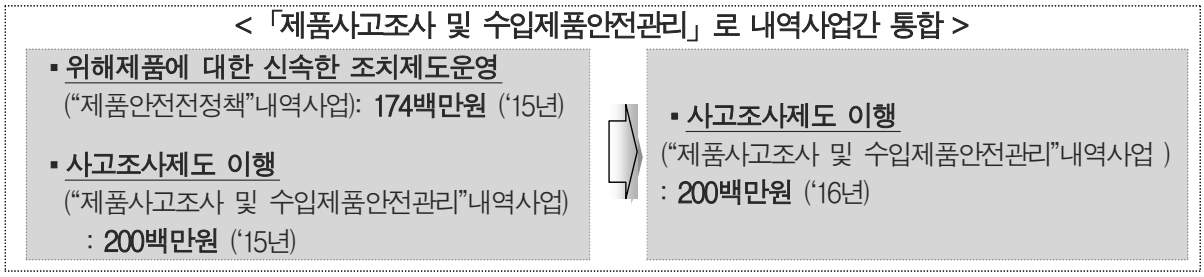

②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기능 확충 (185백만원)

- 정보수집 및 사고상담 콜센터(☎1600-1384) 운영·홍보비: 100백만원
- 사고정보 통계관리 및 조사결과 등 제품안전정보 보급: 85백만원

* "제품안전매거진" 발간·배송 ☞ 분석정보를 기업에게 정기적으로 보급하여 안전품질경쟁력 제고 유도

③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 (242백만원)

- 인증대상 제품 인증 여부 실물확인 및 안전성평가 수행

1) 평가비 : 52백만원=104건*40만원(시험수수료) + 104건*10만원(운송비)
2) 인건비 : 190백만원=18만원*22일*12개월*4명

□ 지원 필요성

○ 각종 생활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사고조사를 통한 리콜제도 이행 등 소비자 보호제도 이행 필요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를 통한 결함제품 리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11.2.5.)

○ 더불어, 정부 3.0차원의 관세청과 협업으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제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 이행

-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정보공유, 조사결과의 조치 등의 조항(제9조의3) 신설('15.5.18)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14.8.21)」에서 관세청과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	535	627	92	17.2
▪ 사고조사제도이행	-	200	200	0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	185	185	0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	-	150	242	92	61.3
□ 비목	-				
▪ 일반수용비 (210-01)	-	95	45	△50	△52.6
▪ 시험연구비 (210-13)	-	30	80	50	166.7
▪ 위탁사업비 (210-15)	-	285	377	92	32.3
▪ 사업추진비 (240-01)	-	5	5	0	
▪ 업무용역비 (260-01)	-	120	120	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외 리콜정보 및 사고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업 등에 보급함으로써 기업의 안전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제품안전관리제도 이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5.35	▪ 사고조사제도이행 : 200백만원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 185백만원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 : 150백만원
'16	6.27	▪ 사고조사제도이행 : 200백만원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 185백만원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 : 242백만원
'17	5.83	▪ 사고조사제도이행 : 200백만원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 185백만원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 : 198백만원
'18	5.48	▪ 사고조사제도이행 : 200백만원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 185백만원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 : 163백만원
'19	5.21	▪ 사고조사제도이행 : 200백만원 ▪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분석·보급 : 185백만원 ▪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평가 : 136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5조”에 근거한 사고조사
-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운영
-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한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 추진경위

- ‘14.2.26 :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발표
- ‘14. 3.5 : “제품안전정보센터” 개소
- ‘14.8.21 :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관세청과의 수입제품관리 협업과제 상정·확정
- ‘14.9.15 : “수입제품 안전관리” 시범사업 실시 (인천본부세관 협업사무소 설치)
- ‘15.3.25 : “수입제품 안전관리” 본사업 실시 (4개 세관 확대 : 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
- ‘15.5.18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제9조의3 신설: 수입제품 안전성조사 근거마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	-	-	535	62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회 산업위 지적사항)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제품안전정책」 내역사업) 및 "사고조사 제도 이행사업"(「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 내역사업) 간 중복

- 제품에 대한 결함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조치·이행에 유사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관리 등의 효율성을 위해 두 내역사업을 통합·조정할 필요

- **(조정방안)** 「제품안전전정책」내역사업인 "위해제품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운영"예산('15년, 174백만원)을 「제품사고조사 및 수입제품안전관리」내역사업 "사고조사제도 이행" 예산('15년, 200백만원)으로 포함하여 통합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사고조사 및 정보수집·분석)** 각 국별로 사고정보 수집과 사고조사를 통해 리콜제도 운영

⇒ 실제 소비자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운영 중

○ 유럽의 RAG(Risk Assessment Guideline), 일본의 R-Map(Risk Map) 등 각국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기법을 개발하고 리콜시 위험성평가를 수행

< 미국 >

○ 15,000여종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상시 감시프로그램 운영, 결함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권고, 안전위해정보 수집 등의 업무 추진

-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사업자(판매자 포함)의 위해 제품 보고 의무화 제도 등 종합관리

< EU >

○ 유럽연합국 차원의 위해정보수집시스템(RAPEX)을 운영하고 수집된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당국에서 위험성 평가후 리콜조치 이행

- Rapex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위해제품에 대해 각 회원국 담당부처가 조사를 이행하고 조사결과 결함제품에 대해 사업자가 리콜토록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

< 일본 >

○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에서 **제품사고조사 이행하고 위험성평가 후 경산성에 통보하면 경산성에서 결함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조치**

- 소비자청(위해정보 수집), 경제산업성(리콜제도 이행), NITE(사고조사 이행) 등으로 역할배분을 통한 제품안전제도 운영

○ **(수입제품안전관리)**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세관(CBP)이 합동으로 수입물품 단속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관에서 조사 후 통관단계에서 반송·폐기 등 조치 이행

* 항구샘플조사(조사건 / 위반건) : ('10) 1,729/1,123, ('11) 1,773/1,114, ('12) 2,079 / 1,274

(5) 사업추진절차

○ **(제품사고조사)** 국가기술표준원이 사고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결함제품에 대한 리콜업무를 이행하고,

- 제품사고조사센터(11개 지정) 및 제품시험인증기관은 제품결함 여부 평가업무 이행

<사고조사 및 리콜조치 이행체계도>

○ **(수입제품안전관리)** 불법·불량제품 유통이력 사업자 정보를 관세청 “수입제품선별검사시스템(C/S)"에 입력하여 검사대상 수입사업자를 선별하고,

- 선별된 제품 중 불법·불량 제품은 관세청에서 반송·폐기 조치 또는, 국표원에서 리콜조치

<협업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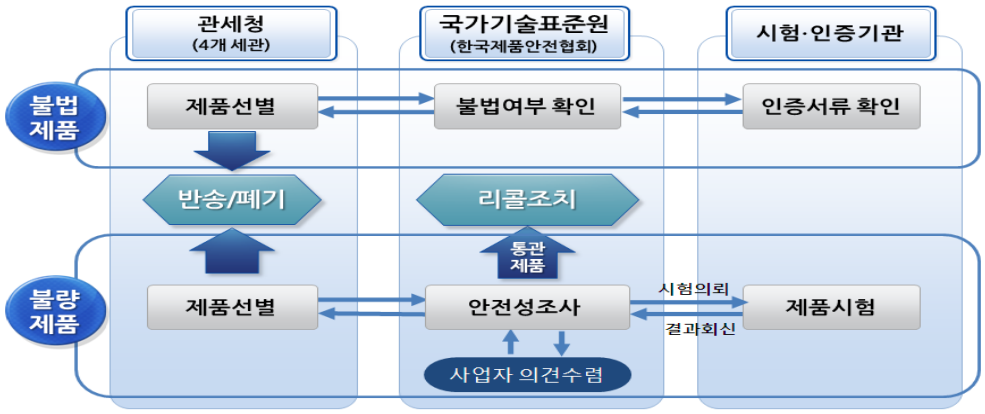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2,071	1,968	2,266	298	15.1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1 - 306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장(윤종연), 적합성평가과장(박인수, 043-870-5490), 주무관(이광은, 5495)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3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보조, 출연금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재)한국인정지원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사업목적

○ 국제공인기관 숙련도시험 시료/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국내 기관의 기술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기업 등 지원

○ 국내시험·인증의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유지를 통한 국제 동등성 확보, 국제적 시험·인증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 시험·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제 시험·인증제도 기반구축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을 통한 ISO 경영시스템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 및 인정기구의 국가단일인정체계 운영

○ 정부 규제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던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은 FTA, 기술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육성

- 제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시험인증서비스 개발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976백만원

▪ (임상의학분야 및 신수요 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940백만원=30백만원×31건

▪ (숙련도시험 평가관련 여비) 6백만원=0.2백만원×30회

▪ (숙련도시험 기술위원회) 15백만원=1.5백만원(10명기준×0.15백만원(수당))×10회

▪ (표준물질구입) 15백만원=3백만원×5건

② 국제동등성유지, 국제상호인정기반구축 : 284백만원

-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대비 인정기구 매뉴얼, 절차서 및 운영요령 등 정비 및 영문화

▪ (국제동등성평가 대비 인정기구 매뉴얼 제·개정) 90백만원=30백만원×3건

- 국제인정기구협력체(ILAC, APLAC) 국제지침서, 추가기술요건, 운영요령 등 운영기준 개발 및 정비

▪ (운영기준 개발, 국제지침서 적용) 90백만원=30백만원×3건

- 인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국 운영 : 22백만원

▪ (시험·교정인정위원회 운영) 15백만원=10회×15백만원(10명참석×0.15백만원(수당))

▪ (분야별 공인인정서 전용용지 등 인쇄비) 7백만원

- 국제기구(ILAC, IAF) 국제동등성 평가 수검 대응 : 45백만원

▪ (평가회의 통역비, 운영비, 평가비 등) 35백만원

▪ (평가수검 회의장 임차, 사무기기 등 임차) 10백만원

- 국제상호인정협정(MRA, MLA) 유지를 위한 국제기구총회, 협정회의 및 국제인정교육 참석 등 국제협력 : 37백만원

▪ (IAF/ILAC 총회, APLAC/PAC 총회, 이사회 등 국제회의 참석) 17백만원=3건×2명×3백만원

▪ (시험, 교정, 검사, 숙련도 ,메디칼 등 국제 인정교육) 15백만원 =5건×3백만원

▪ (국제인정업무 협력강화를 위한 관련 국제회의 개최) 5백만원

③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 558백만원

- ISO인증제도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조사 : 140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80백만원 = 2명×40백만원
  ▪ (부실인증신고센터 전산망·서버 유지보수) 20백만원
  ▪ (인증현황 실태조사 실시) 17백만원=34건×2명×0.25백만원
  ▪ (부실인증처분을 위한 법률자문) 10백만원 = 10건×1백만원
  ▪ (부실인증 예방활동비) 13백만원 = 안내책자 발간, 인식제고 활동 등
-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시스템 등 3개 인정기구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 및 운영 : 300백만원
  ▪ (단일인정체계구축·운영) 300백만원 = 3개분야×2명×50백만원
- 신수요 시험·인증기법 등 개발 : 90백만원
  ▪ (사회안전분야, 사업연속경영시스템 등) 30백만원×3건
- 국제적합성평가제도 기반구축 협의 : 18백만원
  *시험·인증발전협의, 단일인정구축협의, 부정성적서·인증서방지 위한 시험인증기관 등 협의
- 국제인정동향 세미나 개최 : 10백만원

④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 448백만원

-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를 발굴하여 서비스 산업화를 지원해주는 시범사업비 : 350백만원
  ▪ 350백만원 = 175백만원/과제 × 2개 과제
  * 예시: ① 국가기간산업 기능안전성 시험인증
  ②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부품 시험인증
  ③ 감성 고효율 반도체 조명의 시험평가
  ④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시험인증
  ⑤ M2M 기반 사물통신 상호운용성 시험

-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비와 여비 : 9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의 현주소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74백만원
  ▪ (시험인증 실태 파악을 위한 국내여비) 4백만원(0.2백만원×20회)
  ▪ (신흥국・개도국에 시험인증 패키지 수출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20백만원=3.3백만원×2명×3회
  *예시 : 사우디 표준청과 협의하여 에어컨('13년), 세탁기, 냉장고('14년) 에너지 효율 강제인증 도입을 위한 시험소 구축

□ 지원 필요성

○ 국내 시험성적서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통한 무역기술장벽 해소
- 기업 시험비용의 이중부담을 제거하여 기업 경쟁력 확보
- 시험성적서가 국제적으로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수준의 숙련도 시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입증이 필요

○ 국내 시험・검사 교정 기관 선진화 기반 구축
- 국내 시험 및 교정기관들의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서 기업 경쟁력 향상, 국민 삶의 질 향상, 선진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수출업체의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국제 기준과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운영요령·추가기술요건·지침 등의 개발과 숙련도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교정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활발하지 못함

○ 글로벌무역 등 경제활동에서 ISO인증이 필수조건이나, ISO 인증의 부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ISO 인증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 ('10년)

○ 신 분야 시험·인증의 수요에 적기 서비스 제공 등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국제 시험·인증 제도 기반구축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지원이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2,071**	**1,968**	**2,266**	**298**	**15.1**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95	789	976	**187**	**23.7**
▪ 국제동등성유지, 국제협력등기반구축	175	183	284	**101**	**55.1**
▪ 국제시험인증제도기반구축	551	548	558	**10**	**1.8**
▪ 시험인증서비스 산업화지원	550	448	448	**-**	**-**
□ 비목	**2,071**	**1,968**	**2,266**	**298**	**15.1**
○ 210-01(일반수용비)	49	54	72	18	33.3
○ 210-13(시험연구비)	30	15	15	-	-
○ 210-07(임차료)	16	25	25	-	-
○ 240-01(업무추진비)	18	18	18	-	-
○ 220-01(국내여비)	4	10	10	-	-
○ 220-02(국외여비)	68	62	52	△10	△16.1
○ 260-01(업무용역비)	1,026	994	1,284	290	29.1
○ 320-02(민간경상보조)	440	440	440	-	-
○ 350-01(일반법령 출연금)	420	350	350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기존에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상용표준물질 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효과적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 지원 추진

○ 기업 및 공인기관의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숙련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 ISO 인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부실인증을 방지하고 인증의 유효성을 확보하여 인증의 신뢰성 제고

○ 국제적인 시험·인증제도의 국내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 신수요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제도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적기에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9.68	▪ 녹색, 융합제품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20건) : 789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183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54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48백만원
'16	22.66	▪ 임상의학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25건) : 976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84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55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48백만원
'17	21.07	▪ 제품안전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20건) : 907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44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52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28백만원
'18	19.81	▪ 환경분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15건) : 851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24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49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408백만원
'19	18.82	▪ 식품, 미생물 등 숙련도시험 시료 개발 및 운영(15건) : 812백만원 · 국제동등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 204백만원 · ISO 부실인증센터 운영 및 단일인정체제 구축 : 478백만원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 388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제19조(국가측정표준확립사업의 추진),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제24

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계량산업의 지원)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품질경영체제 등을 인증하는 기관에 대한 인정 등), 제7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향상), 제7조의3(관리대행자의 지정 등)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녹색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 제16조의2(녹색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 제16조의3(관리대행자지정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94이전 : 국내기업들이 BSI(영국표준협회), 로이드 선급협회 등 외국계 인증기관으로부터 ISO 9000인증을 획득
- '94이후 :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 공업진흥청에서 ISO 9000인증 업무를 수행
- '97. 5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KAB)에 위탁
- '00. 9 :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01. 1 : ISO 9000인증 관련 업무를 한국인정원에 완전 이양(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도 권한만 법에 존치)
- '02. 3.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12 : 신성장 산업의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4. 2 : "차세대성장동력 관련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여 시장 선점" 산자부 업무보고
- '04. 4.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6 : 계량측정분야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 7 : 국가측정표준의 고도화 추진전략 수립(장관 보고)
- '05.12 : 제2차 국가표준 기본 계획 수립(장관 보고)
- '05.12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보고" 제도를 도입('06.12월 시행)
- '07.12 : ISO 9001/14001 인증제도 관리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09.12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공통 운영요령」제정고시

- ‘10. 4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대한 권고
- ‘12.5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 방안 보고(장관 보고)
- ‘12.7 :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VIP 보고)
- ‘13.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5 :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구성
- ‘13.6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BI 콘테스트 우수제안 선정
- ‘13.7 :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
- ‘13.8 : 서비스산업 발전(국정과제 14)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13.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의 세부과제로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추진
- ‘14.1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14.4 : 유망 시험인증서비스 선정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12.72	16.72	20.72	19.68	22.66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 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불용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6.72			16.72	15.55		1.17
	( )	( )	( )	( )	( )	( )	( )
’14년	20.72			20.72	20.71		0.01
	( )	( )	( )	( )	( )	( )	( )
’15년	19.68				19.68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 해외의 경우(호주 NATA, 영국 UKAS 등), 연평균 50여개 정도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15~20개 정도에 불과하여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국제상호인정분야에 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숙련도 시험운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2.5배의 관련 예산 증액이 요구됨

○ 선도산업표준화 선행대응 관련 일본 정부의 지원 사례

- 일본 경산성의 기술인증연구개발 : 4대 전략분야에 대해 ISO 및 IEC의 국제표준(안) 개발에 매년 약 100억원 지원
- 일본 총무성의 국제기술획득형 연구개발 : 통신분야에 대해 ITU 등의 국제표준(안)개발에 매년 약 20억 지원

○ 국제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사례

- **(EU)** 개별 회원국의 통합노력과 병행하여 역내 시험인증제도 통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08)
  * (영국) '95년 NACCP와 NAMAS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UKAS로 통합
  * (이탈리아) '09년 2개의 인증제도를 ACCREDIA으로 통합
  * (독일) '09년 4개의 인증제도를 DAkkS로 통합
- **(중국)** '07년 CNLA와 NCAB로 이원화된 인증제도를 CNAS로 통합
- **(일본)** 3개의 인증제도 간 MoU 체결('08), 인증제도 통합 추진중
- **(미국)** 민간중심의 다원화된 시험인증제도를 운영중이나, 국제기준 제정 등 대외활동 시에는 상무부 소속 NVLAP가 주도
  * 국제기구(ILAC 등) 가입 59개국 중 미국(11), 캐나다(2), 일본(3), 태국(3), 인도(2) 및 한국(3) 등 6개국만이 복수 인정기구를 운영

- **(한국)** 시험·검사(KOLAS), 제품인증(KAS) 및 경영시스템(KAB) 분야로 구분되어 시험·인증제도가 운영 중

(5) 사업추진절차

○ 적합성평가기반구축(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주요국가간의 상호인정체결 현황 자료 분석

⇓

공인기관의 국제표준 및 선진국 기술규정에 의한 시험분석능력 조사

⇓

기업 및 공인기관의 숙련도 시료 및 프로그램 개발 수요조사

⇓

시험평가용 숙련도시료 개발 및 보급체계 기본계획 수립

⇓

시험능력 비교평가 프로그램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

⇓

개발시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비교 숙련도 시험 실시(국외 및 국내)

⇓

시험능력 비교평가(숙련도 시험)에 대한 결과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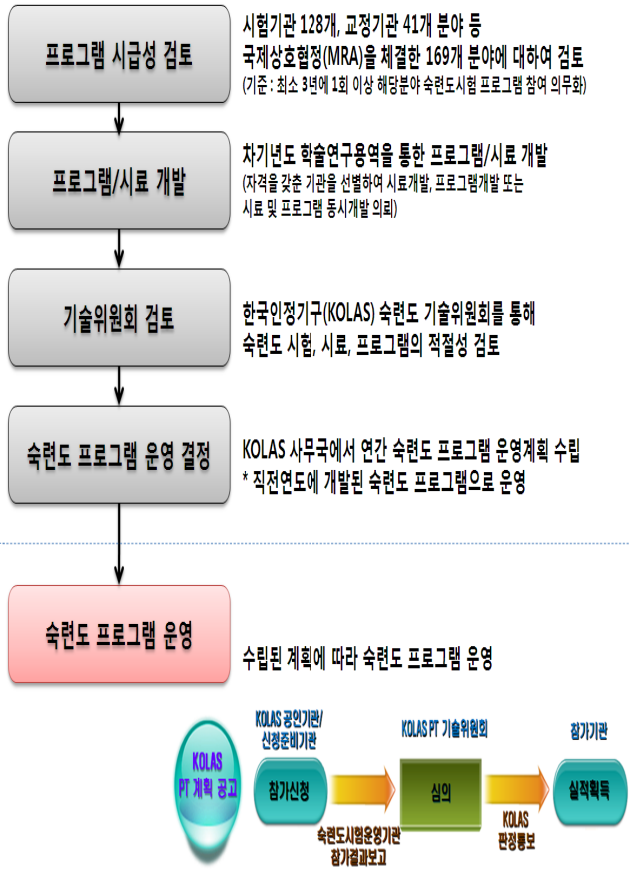

○ ISO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 절차

인증기관 인증현황 자료 접수	-인증기관이 인증현황 자료를 전산시스템(ICIN)입력 - 제출 자료의 유효성 검증 및 확인
↓	
인증현황 분석 (중복심사 등 부실인증사례)	-인증현황 자료 검증 및 분석
↓	
현장실태조사 (인증기관 및 기업)	-인증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
↓	
소명자료 요청 및 확인 (인증기관 및 심사원)	-조사 결과,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에 소명 요청
↓	
부실인증사례 처분요청 (국내·외 인정기구)	-부실인증에 대해 각국 인정기구에 처분 요청

○ 부실인증신고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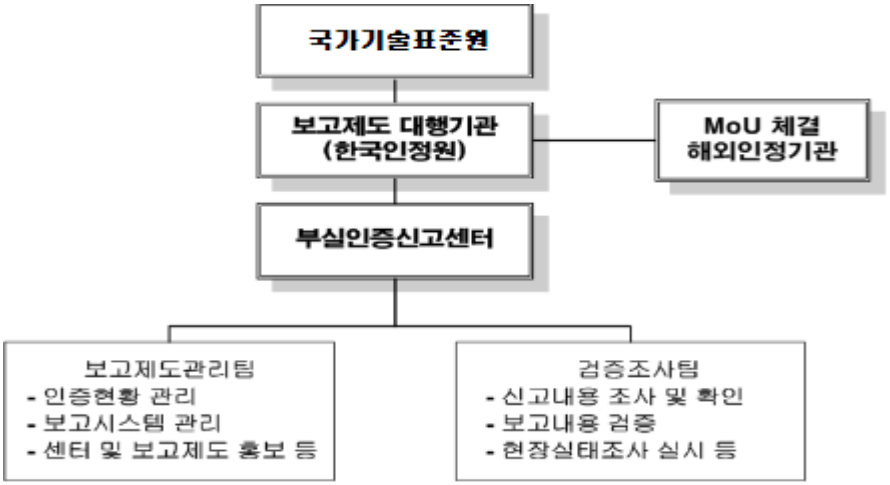

○ 시험인증 서비스산업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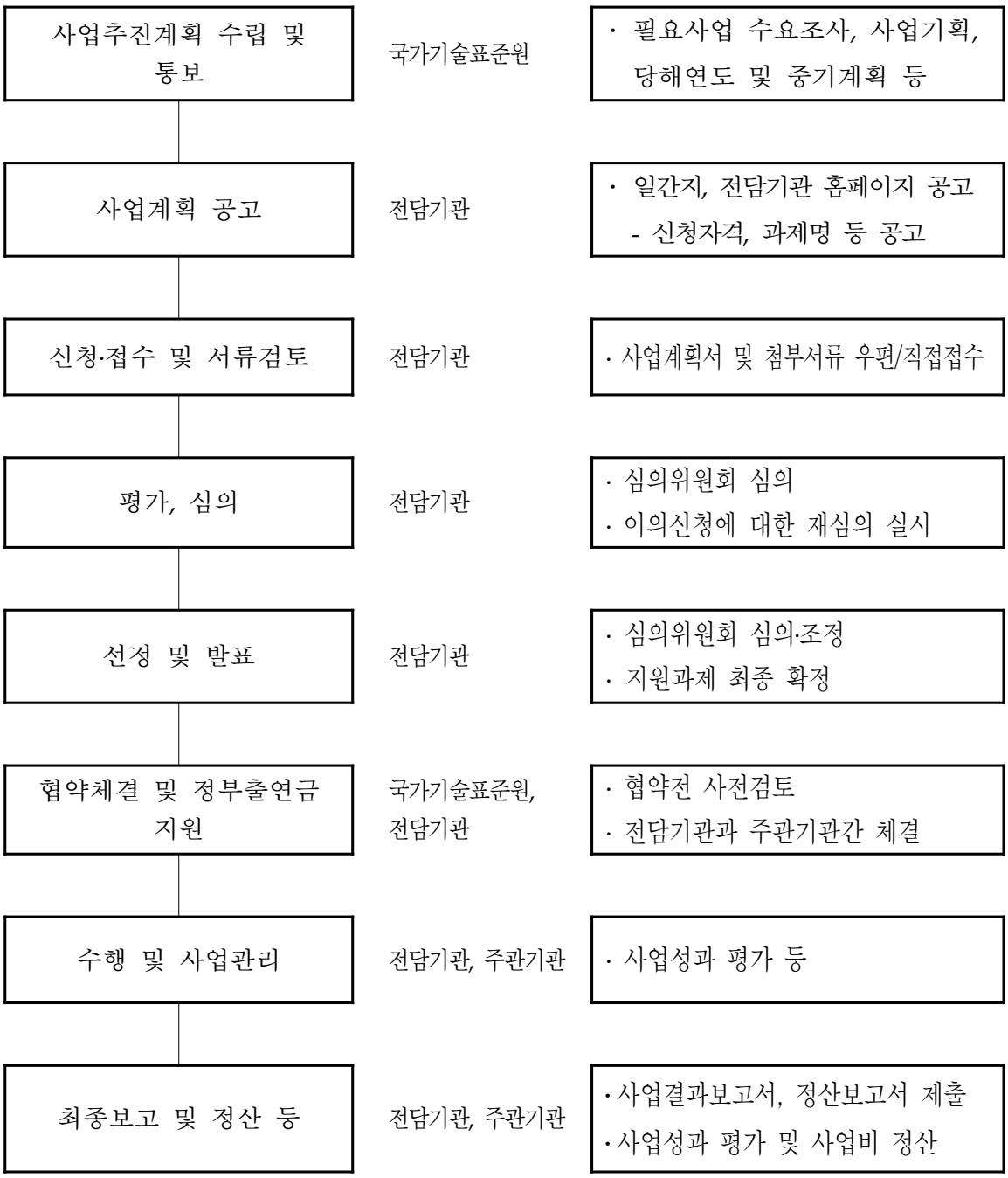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적합성평가 제도 및 국제 상호인정 협정

□ 적합성평가 개요

○ 정의 : 제품, 서비스, 품질, 시스템 등이 법, 규정, 표준 등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 → 국제적으로 통용

* 적합성평가의 대상 : 시험, 교정, 검사, 인증 등

○ 국내 적합성평가체제

- KOLAS 인정 : 국제기준(ISO)에 따라 조직, 시설, 인력 등을 평가하여 시험결과의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제도 운영

* 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사무국 :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 KOLAS는 국제기구(ILAC, APLAC)에 가입하여 공인성적서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해 4년주기 인정기구 평가로 자격유지

□ 국제 상호인정 협정

○ 국가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공인기관 성적서의 국제적 통용과 수용을 촉진

*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상호인정협정)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은 무역상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기 위해 ILAC-MRA 제도를 운영

* ILAC-MRA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지역기구(EA, APLAC 등)를 통해 ISO/IEC17011 만족에 여부에 대한 동등성평가 수검(**재평가 주기 4년**)

*** ILAC-MRA : ILAC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ILAC 국제상호협정**

*** ILAC-MRA 체결현황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61개국 74개 인정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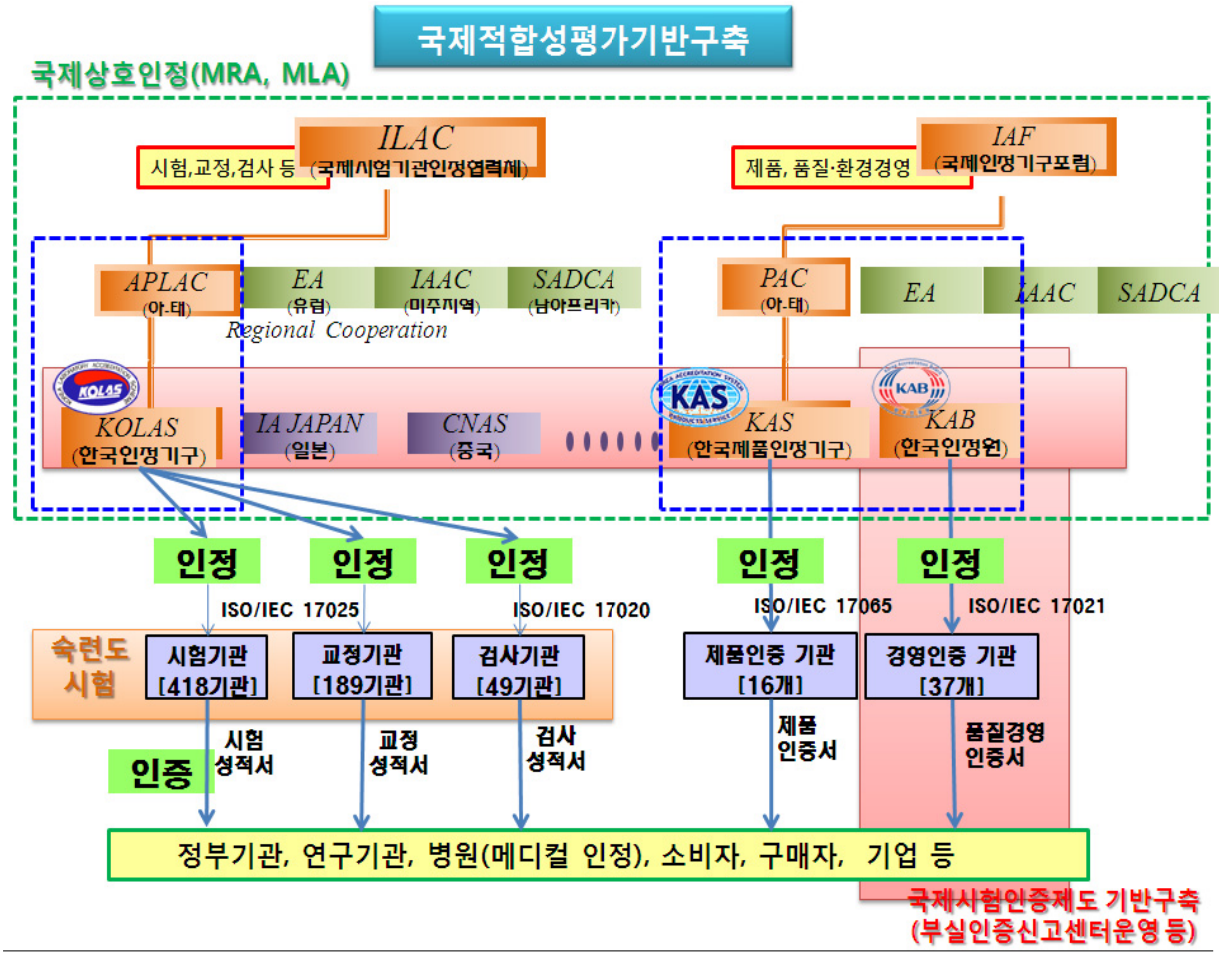

* ILAC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APLAC : 아태시험기관인정협력체(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적합성평가제도의 효과

- 성적서 국제상호인정으로 **우리나라 수출제품이 별도 시험없이 국제무역상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 효과**(시간, 비용절감)
- 법정 규제당국(안전, 보건 등)에게 정책 추진의 기준 및 확실성
- 국제교역 활성화로 인한 국가간 정치적/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적합성평가제도 성공사례

* 사례 1) D 조선회사 : 해양구조물의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NIST에서 교정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내 교정기관을 통해 계측기를 교정 (연간 120억원의 비용 절감)

* 사례 2) L 제조회사: 휴대폰 유럽수출을 위해 KOLAS 시험성적서로도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제품인증을 받아 수출 가능(138억원/년 비용절감)

* 사례 3) H 제철 : "H 빔","PFC 찬넬"등의 호주 수출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요구 H제철은 KOLAS 시험기관 인정받아 호주 수출 가능(약 50,000톤/년,약 3천7백만불)

참고 2 숙련도 프로그램 개요

○ 숙련도시험(PT, Proficiency Testing) 개요

- 정의 : 미지(未知)의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 또는 측정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KOLAS 공인기관 또는 신청 준비기관의 능력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임
  - * KOLAS는 국제상호인정(ILAC/APLAC-MRA)에 의거하여 ISO/IEC 17011 (인정기구요건)의 의무사항에 따라 PT를 운영/관리하고 있음
  - *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 * APLAC (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
  - * 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호인정협정) : 상대국가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
- 운영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8개 기관
  - * **KOLAS 공인기관은 해당 기술 분야당 3년에 1회 이상 PT에 참여해야 함 (의무)**
  - ** 우리나라는 총 169개 기술분야 (시험 128개 분야, 교정 41개 분야)를 운영 중에 있음

○ KOLAS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 절차

- 전문가 회의 개최를 통한 프로그램 시급성 검토
- 직전연도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시료개발포함)에 대한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 연간 숙련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숙련도 프로그램 참가 결과는 KOLAS 숙련도 기술위원회 검토 후 실적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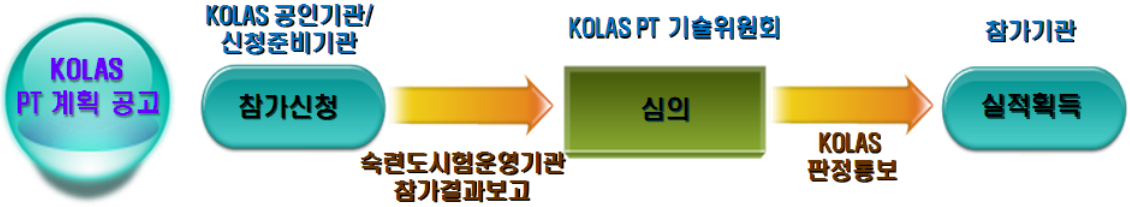

○ 숙련도시험의 효과

- KOLAS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교정성적서가 협정국가에서 동시에 통용이 가능한 국제상호인정(ILAC/APLAC-MRA) 지위 유지를 위한 필수조건 만족
  -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인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정부)이 한국인정기구(KOLAS)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인정기구는 국제표준(ISO/IEC 17011)의 요구조건인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442	1,282	1,197	85	△6.6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7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윤종연), 인증산업진흥과(이석우, 043-870-5500), 주무관(최홍석, 043-870-5508)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1381 운영)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 사업목적

○ 국가차원의 체계화된 인증제도 효율화를 통해 인증난립에 따른 소비자 혼란방지 및 중복인증 해소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부처별로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제품 인증마크를 통합하고 인증기준과 절차를 국제규범에 부합화하여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

※ 국정과제 137-5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해당사업

137-5 기술규제 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 부처별 인증제도 중복, 강제기준의 국제표준 부조화에 따른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시험·검사·인증 등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8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x 1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x 1회 = 3백만원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17백만원
- KC마크 활성화 등 국가인증제도 운영 : 4개매체×21백만원≒88백만원
  * 지하철·KTX를 활용한 KC마크 홍보 및 인증제도 홍보자료 제작·배포
- 국내·외 인증제도 실태조사(여비) : 8백만원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개최(범 부처 실무자협의회 등) : 21백만원

③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32백만원x1개과제=32백만원

④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40백만원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5명=600백만원
- 방화벽 및 보안 시스템 등 구축 : 130백만원×1회=13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8개매체×25백만원=2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인증제도는 각 부처에서 개별 운영중으로 다수·중복인증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포럼 운영 필요

○ 8개부처 19개의 법정의무인증이 도입하여 사용 중인 KC마크를 국가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 다수·중복인증 문제해결을 위해 인증별 현황조사 및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필요

○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사업명	442	1,282	1,197	△85	△6.6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9	8	8	-	-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284	224	117	△107	△47.8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149	50	32	△18	△36.0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00	1,040	40	4.0
□ 비목	442	1,282	1,197	△85	△6.6
▪ 일반수용비(210-01)	258	347	291	△56	△16.1
▪ 임차비(210-07)	5	5	5	-	-
▪ 국내여비(220-01)	5	5	5	-	-
▪ 국외여비(220-02)	4	4	3	△1	△25.0
▪ 업무추진비(240-01)	21	21	21	-	-
▪ 연구용역비(260-00)	149	50	32	△18	△36.0
▪ 민간경상보조(320-01)	-	850	840	△10	△1.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 인증제도간의 상호인정 및 통합 등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법정의무인증분야에서 하나로 통합된 KC마크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대표 인증 브랜드로의 육성을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 국가인증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기업 인증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 국내기업이 제품 출하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 콜센터' 운영 및 개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282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8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24백만원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94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9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50백만원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00백만원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1명=440백만원 – 콜센터 운영 H/W 구입 : 150백만원×1회=150백만원 – 콜센터 운영 S/W 임차 : 100백만원×1년=100백만원 – 콜센터 운영 기반구축 : 70백만원×1회=7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50백만원
‘16	1,197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8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17백만원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88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8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32백만원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40백만원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5명=600백만원 – 방화벽 및 보안시스템 등 구축 : 130백만원×1회=13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200백만원
‘17	1,223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8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43백만원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114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8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32백만원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1,040백만원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5명=600백만원 –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 130백만원×1회=13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200백만원

‘18	1,150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8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20백만원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91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8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32백만원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990백만원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5명=600백만원 –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 130백만원×1회=13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50백만원
‘19	1,093	▪ 인증산업 발전 포럼 운영 : 8백만원 – 회의실 대여 등 임차료 : 5백만원 – 인쇄・포럼 관련 경비 등 운영비 : 3백만원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13백만원 – 지하철·KTX 등 옥외/교통/방송/인쇄 매체 홍보 : 84백만원 – 국내·외 인증제도 현황 조사 : 8백만원 – 인증개선 관련 업무추진 : 21백만원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32백만원 ▪ ☏1381 콜센터 운영·개선 : 940백만원 – 콜센터 인건비 보조 : 40백만원×15명=600백만원 –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 130백만원×1회=130백만원 – 콜센터 유지보수 : 7.5백만원×12회=90백만원 – 콜센터 상담원 재교육 : 2.5백만원×8회=20백만원 – 1381 콜센터 이용 유도 및 활성화 : 10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 (제품인증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2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 (표준인증심사제의 운영 등)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인증제도 혁신 T/F팀」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주요내용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② 국가통합인증마크(National Mark)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공포
  * KC마크 및 표준인증심사제 도입, 종합조정시스템 구축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2.6.29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개정
  * 복수의무인증제품 추가(33개→46개) 및 상호인정 시험항목 확대(9개→11개)
- ‘12.8.30 : 산업부內 인증제도간 중복시험 상호인정 추진완료
  * 전기용품·공산품·에너지소비효율·가스용품검사·고효율에너지기자재-KS간 134개 품목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 추진
- ‘14.2.18 : 미래부로부터 **“1381”** 네자리 **특수번호 획득**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식

• 참　　석 : 산업부 김재홍차관 중기청, 협단체, 업체 등 약 300 여명
• 장　　소 : 국가기술표준원 중강당(과천) 3.26(수)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5	4.43	4.43	12.82	11.9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2012년

- 전용 : KC마크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 사업추진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내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1백만원 자체전용

○ 2013년

- 불용 : 기재부 경상경비절감계획에 따라 44백만원 예산절감

○ 2014년

- 전용 : KC마크 및 1381 콜센터 집중 홍보 필요에 따라 국내여비 1백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자체 전용
- 불용 : 집행잔액 1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5		±0.01	5	5		
	( )	( )	( )	( )	( )	( )	( )
'13년	4.43			4.43	3.99		0.44
	( )	( )	( )	( )	( )	( )	( )
'14년	4.43		±0.01	4.43	4.42		0.01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 예산 재정사업자율평가 시 보통등급(65.0점)으로 평가(기획재정부)

○ '15년 산업위 지적사항 :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미흡하므로 NEP 인증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예산인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도 1억 1,800만원 감액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EU)** 유럽통합과 함께 안전·위생·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 관련 의무규제 대상을 CE마크로 통합 운영 ('93.7)

* 소비자의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전기 및 공산품 중심의 22개 품목군 22천여 제품 (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 8년)

○ **(중국)** 국내제품(CCEE)과 수입제품(CCIB)에 달리 적용하던 의무인증 제도를 CCC마크로 통합 ('02.5)

* 전기제품, 통신기기, 완구류, 압력용품 등 19개 유형, 325개 제품을 CCC마크로 통합 (인증제도 정비 소요기간 : 3년)

○ **(일본)** 의무인증제도를 PS(Product Safety) 마크로 통합·표시

* PSE(전기제품), PSC(공산품), PSTG(가스용품), PSLPG(가스)

(5) 사업추진절차

○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부처의 협력 절차

< 인증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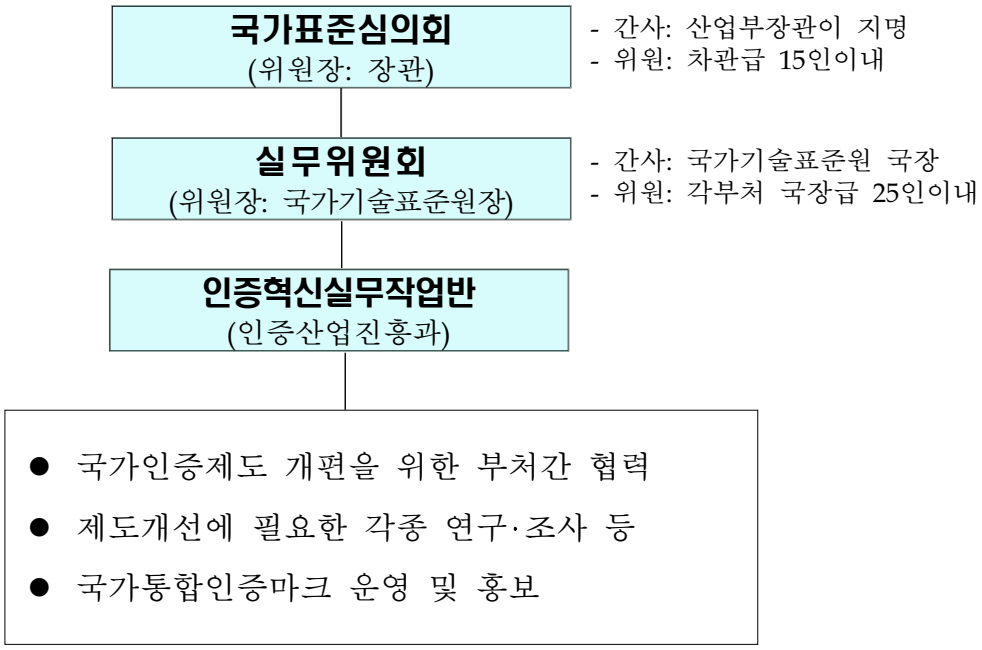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6) 동향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 VIP 말씀

○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인증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1381 많이 아시나요? 모르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

☞ **BH의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119와 같이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129, 1381 등 정부 콜센터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강화할 것"('14.3.28)

□ 1381 콜센터 관련 언론동향

전자신문 2014년 08월 13일 수요일 006면 종합

인증표준 콜센터 '1381' 빠른 해결에 中企 '생큐'

산업부, 넉달만에 상담 갑절 늘어
15년 이상 경력 전문 상담사 배치
늦어도 48시간 이내 답변 제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A사는 일본 수출을 위해 일본공업규격(JIS) 인증을 획득하려 했지만 정보가 부족해 진행이 수월하지 않았다. A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표준콜센터 1381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난 6월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JIS 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고 A사는 한 달 만에 JIS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접이식 매트를 판매하는 B사는 유럽 수출 협의 과정에서 유럽인증(CE)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증 취득 방법을 잘 몰랐던 B사는 지난 5월 1381에 문의했다. 정부의 CE 관련 정보 제공과 컨설팅, 시험비 지원 등을 바탕으로 B사는 지난 7월 CE를 획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개통한 인증표준 콜센터 1381이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인증 관련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개통 후 8일 현재 인입콜(전화가 걸려오는 건수)은 총 2만7997건(하루평균 298건)을 기록했다. 상담 건수는 총 8398건(하루평균 89건)에 달한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문의사항의 신속한 처리 노력으로 월간 상담 건수가 4개월여 만에 약 2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운영 시작 한 달째 1246건(하루평균 62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넉 달째 2575건(하루평균 129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인입콜은 5429건(하루평균 271건)에서 6724건(하루평균 336건)으로 확대됐다.

동기간 분야별 상담 패턴은 국내인증 관련 문의가 29%에서 58%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외인증 관련 문의는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비율로는 소폭 감소해 14%를 기록했다. 표준은 10%대를 지속 유지했다.

1381은 단순 상담사가 아닌 인증·표준 관련 경력 15년 이상의 전문상담사가 운영한다는 것이 기술표준원측 설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분야·국가별 다양한 인증·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 문의 시 즉시 해결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스펙 검토나 자료조사가 필요하면 48시간 이내 답변하고 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의 '맞춤형 기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상담뿐 아니라 전문가 파견, 시험평가비 지원 등으로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영찬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 한국무역협회·한국무역진흥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와 같은 기관과 협업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콜센터에서 파악된 현장 애로를 인증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상담에서 인증 취득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확대·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전자신문 2015년 03월 26일 목요일 006면 종합

'1381 인증표준콜센터' 기업 애로 해결사로

개통 1년만에 하루 평균 112건 상담

정부가 지난해 개설한 인증표준콜센터가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상담을 처리하며 중소기업 인증 애로 해소에 기여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1381 인증표준콜센터' 구축 1년 성과를 집계한 결과 개통 이후 문의전화 총 7만3370건이 걸려와 이 가운데 2만6730건의 상담 처리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112건 상담이 진행됐다.

1381 인증표준콜센터는 수출 기업에 국내외 인증·표준 정보와 획득절차를 통합 제공하는 곳이다. 세계 110개국 350여개, 국내 300여개 인증정보와 국내외 4만여개 표준 정보 상담이 가능하다. 단순 상담을 넘어 전문가 파견 등으로 맞춤형 서비스도 시원한다.

지난해 3월 26일 개통 이후 첫 달에는 상담건수가 1246건이었으나 올해 2월 270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41%) 문의가 가장 많았다. 화학·환경(7%), 기계·자동차·조선(5%), 의료·화장품·식품(6%) 순이었다. 해외 인증(16%)보다는 국내 인증(56%) 정보를 묻는 문의가 많았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신기술제품인증(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신기술제품인증	1,932	2,248	2,137	△111	△4.9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4 - 301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윤종연), 인증산업진흥과(이석우, 043-870-5500), 연구관(배진한, 043-870-550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95년~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보조(인증평가, 판로확대)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신제품인증협회(NEP), 자원순환산업인증원(G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NET)

2. 사업목적

○ 국내 최초 신기술(NET), 신제품(NEP) 및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을 발굴·평가·인증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초기 판로지원 등을 통한 자원·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친환경 및 녹색기술 등 미래산업 선도 신기술 실용화 촉진 및 국가 경쟁력 제고

NEP(New Excellent Product),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 **(법적 근거)** 산촉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NET(New Excellent Technology),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기술의 인증을 통한 신기술 개발 및 개발 기술의 상용화 촉진기반을 조성하는 제도

* **(법적 근거)** 산촉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4

GR(Good Recycled), 재활용 가능 자원을 활용한 제품중 에너지, 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재활용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GR마크를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직접인증제도

* **(법적 근거)** 산촉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신기술인증지원 : 1,710백만원

- NEP, NET, GR인증 430건×0.66(참석율)×5.85(단가) = 1,660백만원

* 인증 신규평가 및 연장평가 포함

<인증별 회당 평가 수당>

(단위 : 명, 천원)

구 분	심사(명)			합계 (A, a+b+c)	비용		
	1차(a)	2차(b)	3차(c)		단가(d)	1차 금액 (d×a)	총 금액 (d×A)
▪ 신제품인증(NEP)	15	4	20	39	150	2,250	**5,850**
▪ 재활용인증(GR)	15	4	20	39	150	2,250	**5,850**

- 인증제도(NEP,NET,GR) 효율화를 위한 조사·분석·홍보 등 = 50백만원

②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 427백만원

-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포상심사 및 촉진대회 : 200백만원

* 심사수당 30백만원, 신문공고·인쇄 20백만원, 대회장소 임차 90백만원, 행사 동영상, 기획대행비 50백만원

* 신기술인증(NET)수여식 행사 홍보 등 10백만원

- 인증기업 판로확대 : 227백만원

* 공공기관 협의체운영 10백만원, 순회설명회, 전시회 등 40백만원, 간담회·상담회 등 70백만원,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인증업체 워크숍 70백만원, 수출지원 37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내 기업이 개발한 국내 최초 기술과 동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상품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 신기술 보유기업의 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여 고용창출 활동을 유인하는 등, 국가정책 목표(중소기업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 등)와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

* NEP, NET, GR 인증제품이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포함됨

○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감 인증제품(GR)은 미래 산업 선도 신기술로서 저탄소 성장에 일조

○ 아울러 국내 신기술보유 중소기업의 경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영세화, 내수시장 의존, 생산성 저위 등의 문제점이 있어 공공기관 의무구매(의무구매율 20%)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음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신기술제품인증	1,932	2,248	2,137	△111	△4.9
▪ 신기술인증지원	1,395	1,802	1,710	△92	△5.1
▪ 융합신제품인증활성화	70	0	0	-	-
▪ 인증제품 판로지원 및 확산	331	320	427	107	33.4
▪ 인증제품 신뢰성제고	136	126	0	△126	순감
□ 비목	1,932	2,248	2,137	△111	△4.9
▪ 일반수용비(210-01)	407	180	0	△180	순감
▪ 임차료(210-07)	82	0	0	-	-
▪ 시험연구비(210-13)	189	126	0	△126	순감
▪ 사업추진비(240-01)	12	12	0	△12	순감
▪ 연구개발비(260-00)	147	70	0	△70	순감
▪ 민간경상보조(320-01)	1,094	1,860	2,137	277	14.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내기업이 개발한 NET, NEP, GR인증제품 등 우수 신기술, 재활용·재제조 등 친환경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신기술기반 기업성장 구현 및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전환을 지원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하고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의 구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
- 기업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인증 지원제도 미활용 초기중소기업을 추가 발굴·인증 하여 우수 기술제품 사장화 방지

○ 국내·외 신기술 트랜드 분석 및 신기술 인증제도의 정책 다변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 인증 연계 방안 마련

○ 운영방식 등 제도개선을 고려중에 있으나, 관련 협·단체 및 업체 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 공청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공감대 형성 후 관련 법령개정 등을 통한 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2.48	▪ 신기술 인증지원:18.06 ▪ 인증제품 판로지원:3.2 ▪ 인증신뢰성제고:1.26
‘16	21.37	▪ 신기술 인증지원:17.1 ▪ 인증제품 판로지원:4.27
‘17	21.57	▪ 신기술 인증지원:17.3 ▪ 인증제품 판로지원:4.27
‘18	20.28	▪ 신기술 인증지원:16.28 ▪ 인증제품 판로지원:4
‘19	19.27	▪ 신기술 인증지원:15.77 ▪ 인증제품 판로지원:3.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신제품(NEP)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 신기술(NET)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인증신기술에 대한 지원)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산업융합촉진법 제3장(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 추진경위

- ‘95. 5.10 : 제15회 「신경제 추진회의」에서 기계류· 부품·소재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시행토록 결정
- ‘04.11.25 : 각부처의 유사기술 및 제품인증에 대한 정부인증제도 통폐합 (5개 부처, 7개 신기술 인증 업무를 신기술·신제품 인증으로 통합 정비)
- ‘06.10.30 : NEP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화(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07.10.29 : 공공구매제도 주관부처를 산자부에서 기술표준원으로 변경
- ‘08. 2.29 :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IT분야 신제품(NEP)인증 업무 및 과기부의 신기술(NET)인증 업무를 기술표준원으로 이관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신기술제품인증	15.5	20.43	19.43	22.48	21.37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5.5			15.5	15.47		0.03
	(8.5)	( )	( )	(8.5)	(8.5)	( )	( )
’13년	20.43			20.43	19.33		1.1
	(10.94)	( )	( )	(10.94)	(10.94)	( )	( )
’14년	19.43			19.43	19.32		0.11
	(10.94)	( )	( )	(10.94)	(19.34)	( )	( )

* ‘12년 잔액 0.03억원은 학술연구용역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액임
* ‘13년 잔액 1.1억원, ’14년 잔액 0.11억은 경상경비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임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4년 예산 재정사업자율평가 시 보통등급(62.0점)으로 평가(기획재정부)

○ ‘15년 산업위 지적사항 : 동 사업 비목 중 민간협회 보조사업을 제외한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예산에 대해 신제품(NEP)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미흡하므로 NEP 인증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하여 1억 8,200만원 감액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GR인증 집행절차 (소요기간 : 90일)

신청서접수	⇒	1차 인증평가 (서류면접, 현장심사)	⇒	2차 인증평가 (종합심사)	⇒	인증서 교부, 공고, 사후관리 등
국표원		국표원, 인증지정기관		국표원		국표원

② NEP인증 집행절차(소요기간 : 90일)

신 청

○ **신제품인증신청서 접수**

인증 평가위원회

○ **국가기술표준원**
-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학계, 연구소, 관련업체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 관련업체는 옵서버로 참석)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평가
- 제품평가 기준 작성
- 현장심사위원(4인이내) 선정

○ **신청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

현장심사 제품심사

○ **현장심사위원**
- 고유기술·제품 개발 여부의 현장 확인
- 실무평가위원회 결과의 사실 확인
- 안정된 품질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여부 판단
- 현장심사 평가표 작성
- 시료 채취 후 시험 의뢰

○ **신청업체**
- 신청제품의 개발·생산·시험평가 현장 안내
- 현장심사위원 질의에 응답

인터넷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제품의 신기술성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 수렴(14일간)

인증 심의위원회

○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현장심사위원, 학계, 연구소, 관련단체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
- 종합평가보고서 위주로 신청제품 평가

○ **신청업체**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성 설명
- 평가위원 질의에 응답

신제품인증

○ **국가기술표준원**
- 인증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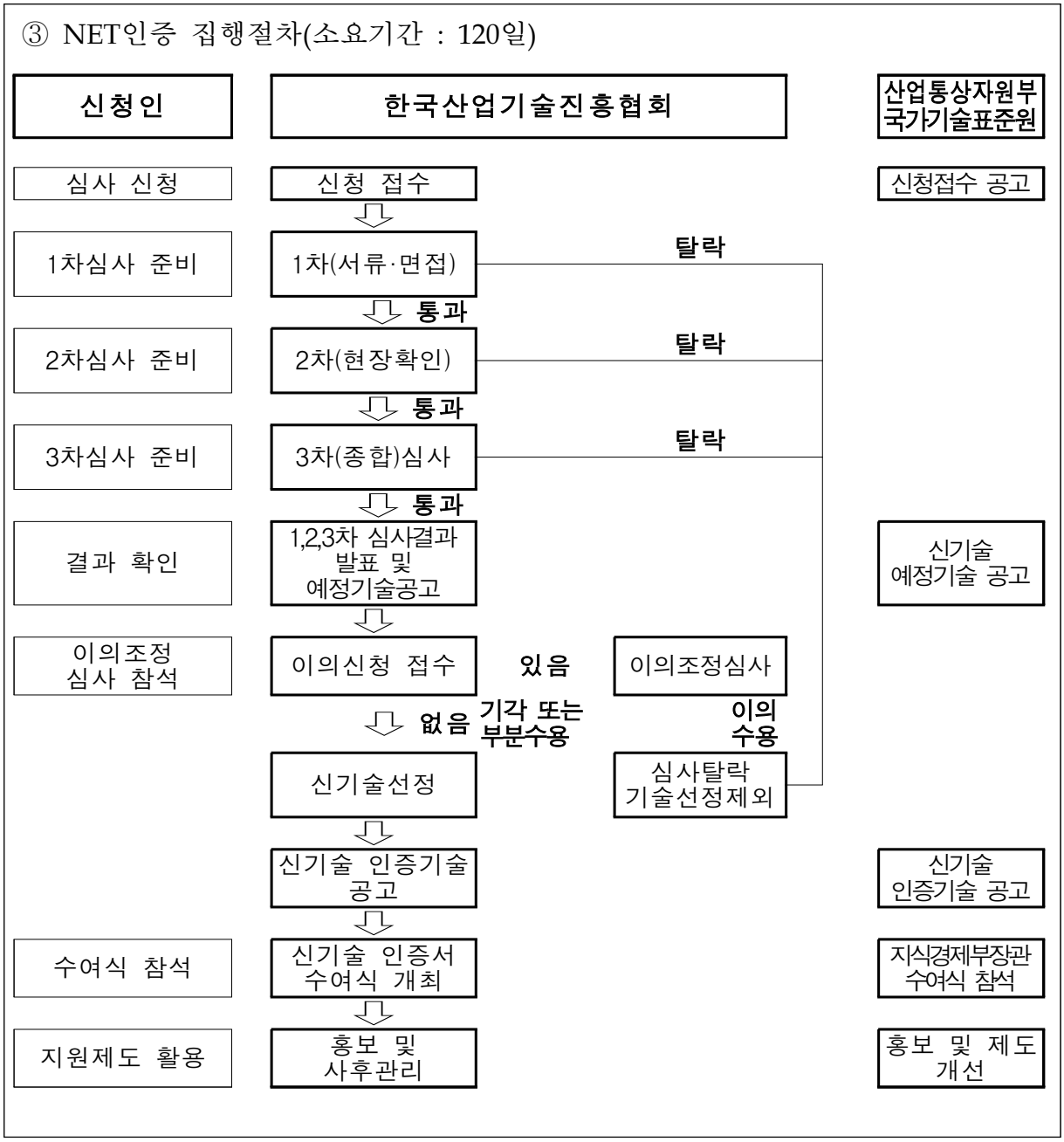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

□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

①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3. ~6 생략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6조 (신제품의 인증)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제품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7조 (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위한 자금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사업)

①정부는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이에 대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사업화 및 보육
2. ~6 생략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3조 (재활용 제품의 규격·품질 기준)

제33조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시행 ('08. 2. 28부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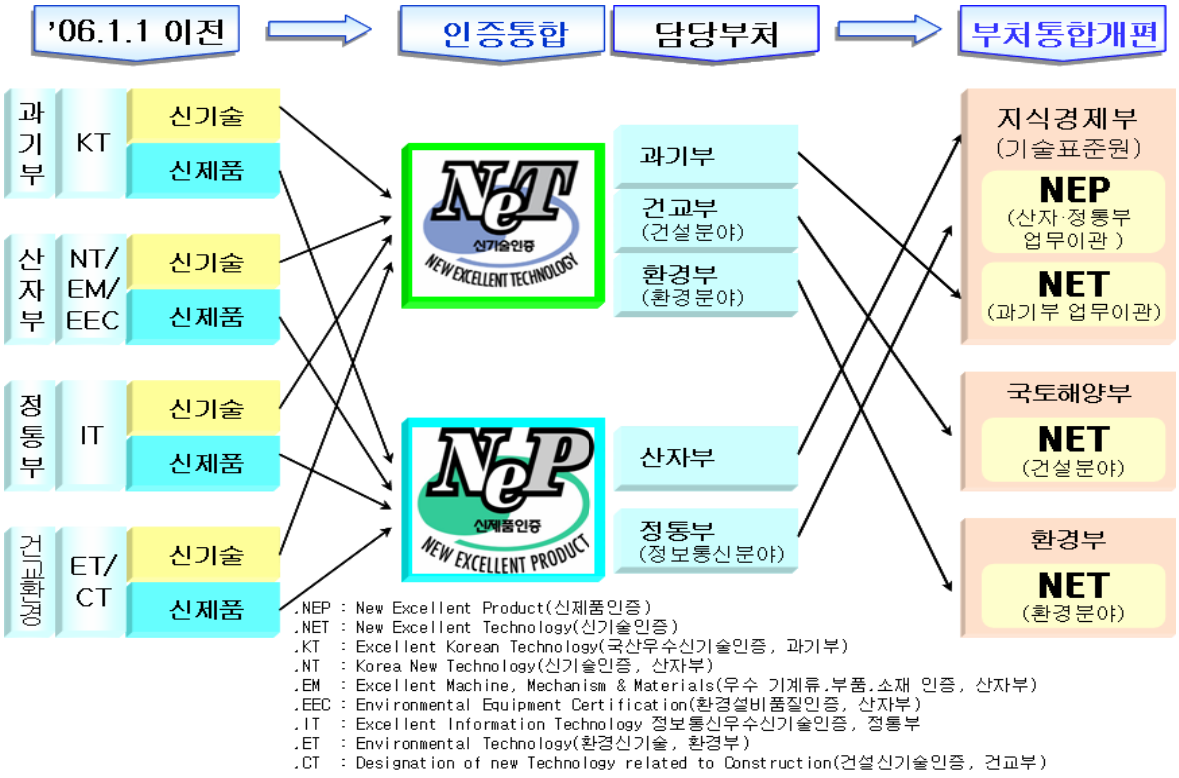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사업(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법정계량선진화 기반구축사업	961	1,250	1,445	195	15.6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8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장(윤종연), 계량측정제도과장(최미애043-870-5510), 연구관(양승배, 551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9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민간보조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선진화된 법정계량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기반 확충 및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을 통한 공정 상거래 질서 확립

○ 지능화되는 불법계량기 위조 등의 부정 계량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단속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따른 법적규제대상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821백만원**

- 제도개선 정책 및 기술기준·지침 개발 : 150백만원

  * 형식승인·검정기준(2종)×30백만원 : 60백만원

  * 지침서·해설서(3종)×30백만원×73%(21.7백만원, 전문가 검토 비용 및 회의비 절감) : 65백만원

* 계량기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 1건×25백만원 : 25백만원

- 계량공무원 대상 전문교육(민간보조) : 105백만원
* 계량공무원 정기검사 및 재검정을 위한 실무교육 (20백만원×3회=60백만원)
* 인건비 (1명×4.7백만원×12월×80% = 45.12백만원)

- 계량기사업자 대상 교육(민간보조) : 95백만원
* 교육대상 2,270명중 900명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 임차료 등 (5백만원×10회=50백만원)
* 인건비 (1명×4.7백만원×12월×80% = 45.12백만원)

- 계량 사후관리 및 불량계량기 신고에 대한 홍보(민간보조) : 52백만원
* 사후관리 계획 및 불량계량기 신고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20백만원×1회) 및 계도용 인쇄·홍보물 2종(16백만원×2종)

- 소비자감시원 운영(민간보조) : 322백만원
* 수당 225백만원(=50천원× 5개 지역 × 30명 × 30일)
* 교육 및 워크숍 50백만원(1회×50백만원)
* 인건비 (2명×4.7백만원×10월×50% ≒ 47백만원)

- 불법·불량계량기 신고시스템운영(민간보조) : 68백만원
* 신고시스템 운영비 : 40백만원
* 포상금 및 계도비 : 28백만원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APLMF 등) 대응 및 국제협력 : 29백만원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법정계량기구포럼(APLMF) 및 OIML 실량표시기술위원회, 한일계량기술협력위원회, BIPM 국제도량형기구 총회 등 참가 : 22백만원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대응 기술위원회 간담회(7백만원)
* OIML에는 총 18개의 기술위원회(TC)와 46개의 분과위원회(SC)에서 연간 30~40건 정도의 투표를 진행 함

②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178백만원

- '평(坪)', '돈(匁)' 등 非법정단위 근절 및 'm², ′g' 등의 법정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홍보 : 103백만원
* 부동산 중개업소, 귀금속업소 등 홍보 58백만원 (리플렛3종, 홍보물3종 등 48백만원, 기타 10백만원)
* 대중홍보 45백만원 (지하철 5개지역×1개월×9백만원)

- 일간지, 공중파 15개 분야에 대한 'm², 'g' 등의 법정단위 모니터링 : 75백만원

* 일간지, 공중파 등 11분야 (전년도 용역단가(3.5백만원) : 35백만원
(일간지 3社, 경제지 3社, 공중파 3社・YTN・MBN 등 11개 분야)
* 부동산, 현수막 등 3분야 모니터링 : 40백만원

③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75백만원

- 계량기 종합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예산 : 40백만원

* 계량 종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용(5백만원×8개월) : 40백만원

- 계량・측정 데이터의 DB화 비용 : 30백만원

* 2.3백만원*2명*8월*80% ≒ 30백만원

- 시스템 애로・개선사항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40백만원

* 1건*40백만원

- 계량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민간보조) : 65백만원

* 사전알림 시스템 운영비 : 55백만원
* 우편발송비 10백만원 (35천건×300원)

- (신규)수입물품 세관장 확인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운영 : 100백만원

* (인건비 3명×10월×2백만) + (시스템 1건×20백만) + (운영비 1건×20백만)

④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1백만원

- 형식승인계량기 시판품조사 : 91백만원

* 시료구입비(계량기 구입 30종×시료3개×250천원=22,500천원) : 22백만원
* 시험수수료 (시험 수수료 30종×시료1개×2,300천원=69,000천원) : 69백만원

- 검정계량기 오차검사 :44백만원

* 수당(150천원×4명×10일×4종=24백만원), 출장비(100천원×4명×10일×5회=20백만원)

- 정량표시상품 시판품조사 : 36백만원

* 정량표시상품 : 시료 구입비 20천원×연450개=9,000천원, 정량 검사비 60천원×연450개=27,000천원
* 정량상품 업체는 2만개로 업체별 20개를 가정하면 상품수는 40만개('14년 기준)

□ 지원 필요성

○ 계량 관련기업의 **고용창출 및 수출 증대**의 견인적 역할을 위해 스마트미터 등 IT 융·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계량기에 대해 신뢰성 있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표준 지원**이 필요

○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불량계량기**로 인한 공공 상거래 질서 훼손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계량기의 엄정한 관리(사후관리)가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961	1,250	1,445	195	15.6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466	670	821	151	22.5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215	218	178	△40	△18.3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175	202	275	73	36.1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144	160	171	11	6.9
□ 비목	961	1,250	1,445	195	15.6
▪ 일반수용비(210-01)	107	133	127	△6	△4.5
▪ 시험연구비(210-13)	125	110	127	17	15.5
▪ 위탁사업비(210-15)	396	137	210	73	53.3
▪ 국내업무여비(220-01)	-	20	20	0	0.0
▪ 국외업무여비(220-02)	-	30	22	△8	△26.7
▪ 사업추진비(240-01)	4	7	7	0	0.0
▪ 업무용역비(260-01)	249	220	200	△25	△11.1
▪ 정책연구비(260-02)		-	25	25	순증
▪ 민간경상보조(320-01)	80	588	707	119	20.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성과목표)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및 법정계량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추진방향)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11년~'15년) 및 법정계량선진화 추진계획('12.2)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한 계량측정 체계 기반 마련 및 계량법 전부개정('14.5)에 따른 신규 법정계량·측정 업무 수행

○ (제도개선사항) 계량관리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고 관련 계량측정 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추진('15.1월 시행)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2.5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6.7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2.2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0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6
'16	14.45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8.21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1.78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75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1
'17	13.44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7.5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1.78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45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1
'18	12.63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6.8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1.7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42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71
'19	12	▪ 선진 법정계량체계 확립 : 6.8 ▪ 법정단위 정착 홍보 및 모니터링 : 1.7 ▪ 계량·측정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2.0 ▪ 계량기·정량표시상품 시장감독 및 사후관리 : 1.5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 사용금지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형식승인), 제49조(보고), 제50조(조사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사업의 육성 지원)

* 계량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지원 가능

○ 추진경위

- "법정계량단위 사용 정착 추진방안"(국무회의, '06.10.17)
-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국가표준심의회, '10.11월)의 "법정계량단위 정립으로 생활 속 상거래 질서 확립"과제 추진
- 사업명 변경 : 법정단위정착지원('09년)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12년)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12.2월)
- 계량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 ('14.5월 공포/'15.1월 시행)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자율감시 지원(소비자 감시원 제도, 리콜제도) 제도 신설('15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3.49	4.93	10.0	12.5	14.4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3.49			3.49	3.49		
	( )	( )	( )	( )	( )	( )	( )
'13년	4.93			4.93	4.37		0.56
	( )	( )	( )	( )	( )	( )	( )
'14년	10		±0.2	10	9.61		0.39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3년도 재정자율평가(단위사업명 : 신산업표준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80.0)
- 기획재정부 : 보통(77.5)

○ ‘09년 재정경제위원회 검토보고서

- 계량단위 전환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언론홍보비를 ‘08년 수준으로 증액하는 등 언론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법정단위)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95%)에서 국제단위계를 공식 채택

- 유럽연합은 2010년부터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미터법 사용을 의무화
- 중국의 경우 1985년 미터법 도입하여 정착에 성공, 일본은 계량법(‘51 제정) 개정하여 국제단위계 사용이 성공적 정착
- 미국은 1866년 미터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야아드·파운드법 병기 사용 등 전환이 매우 느리나 최근 미터법으로 단일화 추진

○ (기술기준개발) 미, 러, 독 등 3국은 OIML(국제법정기구) 기술분과위원회(총 64개)의 64%를 간사국으로 수임하여 Rule Maker 역할 수행

* 간사국 : 미국(15), 러시아(15), 독일(11), 영국(5), 프랑스(4), 중국(3), 호주(3)
* 18개 기술위(TC)와 46개 분과위(SC)에서 총 118개의 기술기준 개발 중
* ISO/IEC의 경우 국내 대응위원회를 운영하여 10년 만에 순위 14위로 급성장

○ (종합관리시스템) 승강기 등의 경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위반자, 위반 대상 승강기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력·예산 한계 극복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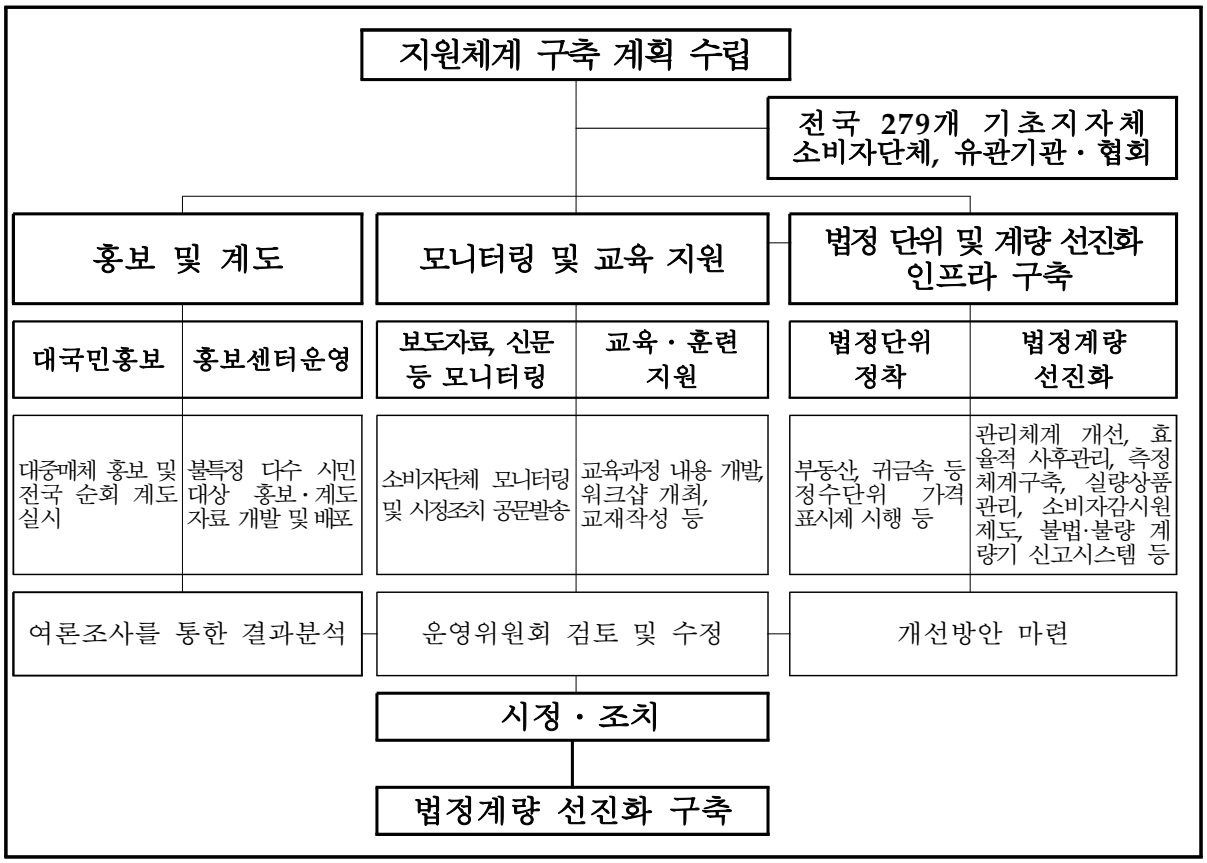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① 국제법정계량기구

②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③ 계량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④ 소비자감시원 운영

참고 1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 OIML MAA(Mutual Acceptance Arrangement)

○ **중복 시험으로 인한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회원국간 계량기 형식승인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한 인증

- 비자동저울 20개국, 수도미터 7개국, 로드셀 18개국이 참여

* 우리원은 비자동저울에 대한 인증서 발행기관('16.9월)과 수용기관('11.11월) 참여하고, KTC는 시험기관으로 참여

* 기본 인증시스템(Basic Certificate)와 상호수용협정(MAA)의 차이점

구분	OIML 인증시스템	OIML MAA
도입	1991년	2005년
관련문서	OIML B 3	OIML B 10
참 가 국	OIML 회원국	22개국(10개 발행국과 이용국)
인증대상	21종(비자동저울 등)	3종(비자동저울, 수도미터, 로드셀)
최초발행	1993년	2007년
총 발행수 ('13.9)	2990건	438건
한국 발행수	8건	2건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 법정계량제도의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간 국제기구로 1855년 설립 (한국은 1978년 가입, 現 정회원)

* 한정회원 60개국, 준회원은 68개국

법정계량(Legal Metrology) 정의

강제적 또는 계약적인 방법에 따라 **공적규제, 무역, 보건, 안전 및 환경**에 관련된 측정의 질과 신뢰성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립·시행되는 법률적·행정적 및 기술적 절차의 총체

❑ OIML 주요 발간물

구분	발간물 수	구분	발간물 수
권고규격(R)	103	기본문서(B)	13
권고문서(D)	27	전문가 보고서(E)	6
안내서(G)	16	세미나 보고서(S)	5
용어(V)	2	**합 계**	**172**

계량·측정 국제활동 민간자율 대응체계 구축

목표

계량분야 전문가 활동 강화
* TC 임원1명/TC 전문가 10명 양성('17년까지)

+

신규 국제기준 선도
* 아국 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 제·개정 5건('17년까지)

〈 추진 전략 〉

1 계량·측정 국제활동 민간대응 조직 구성·운영

- **1-1** 민간자율 국제활동 운영규정 마련
- **1-2** 전문기관 협의회 구성
- **1-3** 민간자율 기술전문연구회 구성

2 계량·측정 국제활동 민간기관 및 전문가 역량 강화

- **2-1** 기술분야(TC)별 계량·측정 전문가 육성
- **2-2** IT융합 계량기술 국제기준 선도
- **2-3** 해외 민간기관간 상호협력 강화

3 계량·측정 국제활동 정보 공개·공유 시스템 마련

- **3-1** 국제기준, 문서 '계량종합관리시스템'연계
- **3-2** 연간 활동보고서 발간

기대효과

○ 전문가의 지속적인 국제활동으로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일관성 유지

○ 공동기술연구, 상호인정협정 등 민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국제활동 기대

참고 2 법정단위 사용 정착 현황

❑ 추진 배경 및 경과

○ 우리나라는 1961년에 계량법을 제정하여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단위**로 채택하고, **非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

* 국제단위계 : 미터법이 현대화 된 것으로 m, ㎏ 등이 기본 단위

○ '07년부터 일제 잔재인 '평(坪)·돈' 단위 사용 근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인치, 야드, 파운드 등의 단위는 계도 중심으로 추진

- '09년에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법령, 지자체 조례 등 제도 정비
- '10.6월부터 언론광고 상습위반자 과태료 처분
- '13.1월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모델하우스 등의 위반자 단속

< 추진경과 >

❑ 법정단위(m^2) 정착 현황

○ 주요 언론매체(기사, 광고)의 m^2 정착율은 '10년 대비 15.0% **증가**

- **TV뉴스**와 **경제신문** 기사의 m^2 정착율이 높으나, **일간신문**의 기사 및 **신문광고**는 **낮은 경향**

(단위 : %)

연도	TV 방송	신문(기사)		신문 광고	평균
		일간지	경제지		
2014	91.4	71.2	87.0	87.9	**85.0**
2013	92.9	69.9	85.7	82.4	**82.9**
2012	92.1	69.4	84.4	82.9	**80.9**

* 조사대상 : TV(KBS, MBC, SBS, mbn, YTN),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 15종

○ 전국 29개 시·군·구의 1,602개 부동산중개사무소 조사결과 "m^2"표기는 54.5%, "평"표기는 12.8%였고, "m^2"와 "평" 병행 표기는 32.7%였음 ('14.6월)

* 1차, 2차 계도 후, '14.8월 부동산중개사무소 실태조사결과 "m^2" 표기는 75.5%로 21% 증가함

참고 3 계량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

❑ 시도 지자체·인증기관 등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계량기 시험·검사·단속 정보의 통합관리 및 대국민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계량기의 검사·사용이력 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 DB 추진**

- 기관별 비전산 형태의 계량 데이터 및 신규생성 데이터 중 주유기 등 생활 활용이 높은 계량기 위주로 DB화

○ **계량기 검사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추진**

- 재검정 또는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사용자에게 온라인(SMS, e-mail)이나 오프라인(우편)으로 검사정보의 사전 알림 서비스

○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 운영**

- 계량기 변조자, 변조 계량기 사용자, 제조결함 계량기에 대한 온라인 신고센터의 구축 및 운영
- 위반사업자 및 피해사례 언론보도 정보 대국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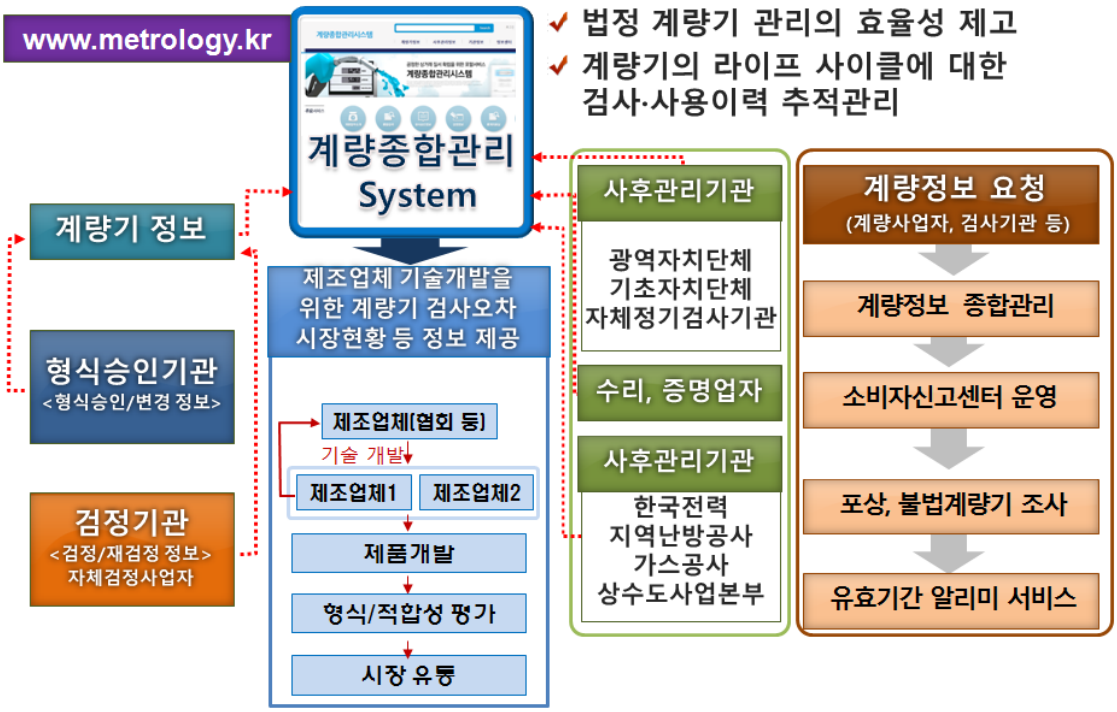

참고 4 소비자 감시원 운영

❑ 소비자감시원 운영 현황

○ **소비자에 의한 계량분야 시장감시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감시원을 위촉하여 **2015년 시범운영** 실시

* 감시원 60명이 부동산중개업소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와 합동점검 지원

주요업무

① 비법정단위 사용여부 확인
② 재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확인
③ 정기검사 및 단속 업무의 보조
④ 제품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지원

감시계획

① 부동상중개사무소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② 전통/수산/약재 시장 저울 사용 감시
③ 합동특별점검 업무 보조 등

❑ '16년 소비자감시원 운영 확대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운영 등 **계량기 자율관리 확대**에 따라 저울 정기검사 여부 확인 **감시활동 강화** 필요

○ **소비자감시원 인력 확대**

- 감시지역 확대를 위하여 현행 광역시 중심의 5개 지역 60명에서 전국 단위의 150명으로 소비자감시원 위촉 확대

○ **소비자감시원 감시 직무 확대**

- 비법정단위 사용 감시 중심의 시범운영에 이어 주요 저울에 대한 재검정, 정기검사 수검여부 감시활동 본격 운영

  * 전통시장, 전문시장(한약, 수산물), 대형마트, 정육점 저울의 감시

- 합동점검, 계량기 사용자에 대한 홍보 활동 확대

○ **소비자감시원 교육 강화**

- 소비자감시원의 감시역량을 높이고, 감시활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워크숍을 상·하반기로 개최

표준 · 안전기반구축(계속, R&D)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표준안전기반구축	18,681	21,660	22,089	429	1.9

* 사업코드 : 21 - 11 - 0 - 114 - 3700 - 3745 - 303

* 담당자 : 적합성정책국(윤종연), 시험인증정책과(정의식, 043-870-5480), 연구관(남하욱, 043-870-548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출연(민간 Matching)
사업시행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단체 등 기관

2.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품질 기반조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측정산업 선진화 지원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국제상호인정협정(ILAC-MRA) 유지, 국제기준에 의한 시험역량 확보 등을 통한 무역상 기술장벽(TBT) 극복 및 원천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 전기용품 및 어린이용품 등)에 대해 기업이 사전에 안전성 검증 후 제품을 생산할 수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전기준(시험·검사방법 등) 개발·보급과 어린이용품 등 안전 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

- **(품질혁신기반구축)** 산업 전반의 품질경영 확산 및 우리 제조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개선 기술 개발 및 고도화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계량·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손실 방지 및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무역상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유지・확대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시험평가 장비 국산화와 첨단 시험장비 구축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 산출내역 (‘15년 : 13,300백만원 → ’16년 : 13,745백만원)

- 신규과제 지원 : (‘15년) 1,000백만원 → (’16년) 1,245백만원
  * 국산화 개발 수요분야 평가장비 개발과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지원 등 (4건, 12.45억)
- 계속과제 지원 : (‘15년) 12,300백만원 → (’16년) 12,500백만원
  * 그린카 등 7대 신수요 산업분야 국제시험평가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시험장비 구축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안전이 취약한 위해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 등 기반조성과제 지원

○ 산출내역 (‘15년 : 4,260백만원 → ’16년 : 4,244백만원)

- 중소, 중견기업의 안전취약 위해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안전기준 병행 개발과제 지원(‘15년 : 2,740백만원 → ’16년 : 2,724백만원)
  *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품 안전성 향상 과제 : 10과제×158.4백만원 = 1,584백만원
  * 어린이용품 등 안전취약제품, 신기술 등 기술융합제품에 대한 안전성 향상 과제 : 3과제×180백만원 = 540백만원
  * 제품과 안전기준 병행 개발 과제 : 3과제×200백만원 = 600백만원
- 제품안전성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방법 개발 등 기반조성과제 지원(‘15년 : 1,520백만원 → ’16년 : 1,520백만원)
  * 신제품 또는 안전인증대상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등 : 10과제×152백만원=1,520백만원

③ **(품질혁신기반구축)** 중소·중견기업의 품질취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품질혁신기반조성을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출내역 (‘15년 : 1,500백만원 → ’16년 : 1,500백만원)

- 품질기술 공통플랫폼 개발 및 보급·확산 : 40개 과제 × 37.5백만원 = 1,500백만원

④ **(계량·측정기술고도화)**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계량·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손실 방지 및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출내역 ('15년 : 2,000백만원 → '16년 : 2,000백만원)

- 계량·측정기기 SW불법조작방지 및 성능향상, IT융합 계량·측정 기술개발 : 1,350백만원
  * 9개 과제× 150백만원 = 1,350백만원
- 계량·측정기기 검·교정 기술개발 및 신뢰성평가 기술개발 : 550백만원
  * 3과제× 150백만원 = 450백만원
  * 계량·측정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1과제× 100백만원 = 100백만
- 취약 기술분야 조사, 개발기술 전파 및 기술기준 개발 : 100백만원
  * 1과제× 100백만원 = 100백만원

⑤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신규·계속 과제 평가 및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사업비 : 6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각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제품의 시험인증수요가 증대하였고, 국제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등을 시험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하여 동등성을 갖추어야 가능

* WTO 이후 TBT 장벽은 도리어 강화추세('95년 365건 → '13년 1,626건)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제품(공산품·전기용품 등)은 인증 등 사전규제를 통한 제품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제품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 안전취약제품에 대한 기업의 제품안전 기술력 향상과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

* 특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15. 6. 4)됨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품목 급증

○ **품질혁신기반구축**

- 중소·중견기업 품질경쟁력 수준은 글로벌 선도기업의 60~80%에 불과한 반면 중국 부품·소재 산업의 빠른 품질개선속도로 인한 수출경합도는 심화되어 지속적 품질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 '14년 기준 부품·소재산업의 약 63% 품목에서 중국의 對한국 비교우위 개선
  * '15년 1분기 기준 KOTRA 품질경쟁력지수(수출선행지수)가 한국은 55.5로 前분기 대비 0.8p 하락 반면, 중국은 56.1로 0.7p 개선됨

- 개별 기업 간 품질혁신기술 공유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를 일반화하여 보급·확산할 수 있는 통합적 인프라 구축 및 이를 통한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제고 필요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계량·측정기의 조작을 방지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로 국민의 권익보호

  * '13.5월 주유기 정량미달이 이슈화(서울경제 등 언론보도)되어 이러한 부정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개발 R&D 예산 확보

- IT·SW 융합기술을 이용한 첨단 계량·측정기 개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계량·측정산업 대외 경쟁력 강화

  * 계량기 제조업체 160개 중 97%가 총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총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50%를 차지('15년 계량산업 조사)

- I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계량·측정기 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선진화된 계량행정 체계 구축

  * 계량법에 따라 산업부 및 지자체는 주유기, 전력량계, 가스미터 등 12종의 법정 계량기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정 및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18,681	21,660	22,089	429	1.9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10,856	13,300	13,745	445	3.3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3,945	4,260	4,244	△16	△0.4
▪ 품질혁신기반구축	2,000	1,500	1,500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1,450	2,000	2,000		
▪ 기획평가관리비	430	600	600		
□ 비목	18,681	29,145	22,089	429	1.9
▪ 연구활동비 등 (360-05)	10,856	13,300	13,745	445	3.3
▪ 연구활동비 등 (360-05)	7,825	8,360	8,344	△16	△0.4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기술무역장벽(TBT)을 극복하고 국제상호인정분야 확대를 위해 활용도가 높은 신수요 장비구축 지속 지원과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ISO, IEC 등 국제 규격에 대한 시험능력 확보를 위한 신수요 첨단장비구축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제품 개발에만 치중, 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의 기술 개발은 미진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미 제품이 개발되어 있어도 국민의 안전에 危害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개발(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제품의 개발 유도

○ **(품질혁신기반구축)** 부품·소재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품질기준 달성과 고품질 확보에 요구되는 기술개발 및 기술 활용 기반조성을 위한 제품·업종별·애로유형별 공통플랫폼 개발·확산을 추진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IT 융복합 응용기술 개발 및 신수요 장비의 대응을 통하여 무역수지 적자 증가 추세인 계량·측정산업을 고도화하고 대외경쟁력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16.60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3.0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 42.6 ▪ 품질혁신기반구축 : 15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 ▪ 기획평가관리비 : 6
‘16	220.89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7.45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 42.44 ▪ 품질혁신기반구축 : 15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 ▪ 기획평가관리비 : 6
‘17	220.89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7.45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 42.44 ▪ 품질혁신기반구축 : 15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 ▪ 기획평가관리비 : 6
‘18	220.89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7.45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 42.44 ▪ 품질혁신기반구축 : 15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 ▪ 기획평가관리비 : 6
‘19	220.89	▪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137.45 ▪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 : 42.44 ▪ 품질혁신기반구축 : 15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20 ▪ 기획평가관리비 : 6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법령상 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고도화의 기반확립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00.9월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 ’02.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3.4월 :「MRA사업」1차년도 추진

- ’04.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7.2월 :「시험분석서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제3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07.11월 :「시험분석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수립」제24차 경제정책조정회의 의결
- ’10.9월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제28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
- ’12.3월 :「FTA시대 국가 R&D전략」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
- ’14.1월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75.34	96.7	108.56	133.0	137.45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법령상 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 추진경위

- ‘08.3월 :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장관보고)
- ‘08.12월 : 제1차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10.2월 :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공포
- ‘11.2월 :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 ‘11.3월 : 제1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4.2월 : 제2차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공고
- ‘15.6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31.0	39.5	39.5	42.6	42.44

③ 품질혁신기반구축

○ 법령상 근거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추진경위

- '06년 :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정부예산(일반회계) 15억원) 신설
- '08.2월 : '기술이전사업화촉진(R&D)'의 내역사업으로 통합(직제개정)
- '08.10월 : '10년부터 '기술이전사업화촉진(R&D)'에서 분리
- '10년 : '기술이전사업화촉진'에서 분리하여 신규 예산 확보
- '10.6월 : 지식경제부 R&D 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0년 : 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11~'15)
- '13년 : 품질혁신기반구축 사업 2단계 4차년도 사업 실시(28.05억)
- '14년 : 품질혁신기반구축 사업 실시(20억)
- '15년 : 품질혁신기반구축 사업 실시(15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품질혁신기반구축	19	28	20	15	15

④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법령상 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7조(계량산업의 육성 지원)
  * 계량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지원 가능

○ 추진경위

- '법정계량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추진('12.2월)
- 계량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량법 전부개정('15.1월 시행)
- 국정과제 1-7(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과 부합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14.5	20	20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125.34				125.34		
	(125.34)	( )	( )	( )	(125.34)	( )	( )
'13년	164.20				164.20		
	(164.20)	( )	( )	( )	(164.20)	( )	( )
'14년	186.81				186.81		
	(186.81)	( )	( )	( )	(186.81)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상위평가 결과 : 보통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 산업인프라 구축 및 정부 시험업무 위임 시 정부 예산지원

- 미국의 경우, NTTAA(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를 제정하여, 민간시험기관에게 정부의 핵심기술 이전 및 시험분석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금 등을 지원

○ 또한, 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ndards Laboratory)라는 거대조직을 구축하여 시험분석 전문인력양성 강화

- 적합성분야 전문대학 이상의 기관을 9개 이상 설립하여 전문교육 실시

○ 글로벌

- 글로벌 시장교류 확대 및 각국의 시험·인증규제 증가로 세계 시험인증시장이 최근 5년간 급성장 추세('07년 76조원 -> '11년 132조원)로 국내시장방어 및 글로벌 시장 참여필요

* 주요국 시험인증산업 GDP내 비중 : 독일(0.52%), 프랑스(0.32%), 한국(0.19%)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 국내·외에서도 정부주도로 제품안전에 필요한 정부자금을 지원하도록 법제화

- 국내 :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할 수 있도록 규정(제품안전기본법 제18조)

- 국외 : 제조업 단체의 제품안전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美, 소비자제품안전법 섹션 5)

③ 품질혁신기반구축

○ 미국

- NIST(美국립표준기술원)를 통해 각종 품질혁신기반 구축을 해왔으며 최근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으로 제조업 품질 재도약 추진

* '87년 MBNQA(국가품질상) 제정, 국가경쟁력 위기 원인으로 진단된 '품질약화' 해결 위한 국가적 기반 마련

* '12년부터 애플, 구글, GE, GM, 포드 등 주요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미국 이전

○ EU

- 유럽 14개국 국가품질기관의 지원을 받는 EFQM(유럽품질재단) 중심으로 품질경쟁력 향상 기법 및 우수사례 전파

* '92년 유럽품질상(EQA) 제정, 매년 6월 품질혁신 우수사례 선발·확산

○ 중국

- '제품품질 업그레이드'가 포함된 中國製造2025(중국제조 2025) 8대 전략을 통해 정부 차원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노력 강화

  * 중국제조 2025는 제13차('15~20년) 및 제14차('21~25년)의 10년 동안 추진

- 완제품 조립에서 부품·소재·장비로 산업 중심을 빠르게 이동, 가격우위에서 품질 우위까지 확보하기 위한 산업 육성을 강력 추진

  * 핵심 부품과 신소재 국산화율을 향후 5년 내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독일

- '품질혁신역량 강화'가 포함된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7대 과제 및 품질 문제 발생시 즉시 추적이 가능한 ICT 기반 제조업 부흥정책 추진

  * '13년 정부에서 '인더스트리 4.0'을 발표하여 제4차 산업혁명 주도

○ 일본

- 정부와 대기업이 부품·소재 공급 협력사에 대한 경영지도 및 품질 관리 등의 지원을 통해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도모

④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실태조사)** 독일, 네덜란드 및 일본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계량·측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제도개선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전기·전자, 기계, 컴퓨터 등의 복합 첨단산업의 육성에 필요 기반산업으로 인식
- 단순하고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모든 산업현장에 필수적 기기로 인식
- 산업의 고도화에 맞춰 자동화와 연계된 계측시스템으로 전환

  *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실태조사 사례 없음

○ **(기업특성)** 국제적 계량·측정 기업은 계측기기가 기술집약적, 소품종이 주류를 이루는 특성으로 다국적 기업이 전시장의 65%를 차지

- 국내 계량·측정기는 제품별 3,000억원 이하의 시장구조로서 대기업의 참여 없이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다국적기업 : Agilent Technology(미국), Fluke Coperation(미국), Rohde & Schwarz(독일)

  * 국내 측정기 기업은 중소기업(87%) 및 중견기업(13%)으로 대기업 부재

○ **(무역규모)** 국제 계측시장은 EU가 41.5%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며, 선진국은 평균 10%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냄

* EU는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41.5%(177,518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14.7%의 성장률을 나타냄
* 중국은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26.2%(112,185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22.7%의 최고성장률을 나타냄
* 미국은 전 계측시장 무역규모의 21.5%(92,141백만불)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3년간 6.4%의 성장률을 나타냄

○ **(산업육성전략)** 세계 1, 2위의 미국과 일본의 산업육성 체계는

- 미국은 연방정부의 담당부처별로 지원하나 일본은 과학기술진흥기구의 국가주도로 산업 지원
- 미국은 연구비의 90%이상을 공모에 의해 지원하고, 일본은 기기개발과 요소 기술 프로그램을 나누어 진행

* 국내는 계량·측정기기에 대한 부처별 규제만 있을뿐,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실정임

○ **(검정장비 현황)** 독일 등 대다수의 OECD는 국제표준(OIML)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식승인 및 검정 등의 검사기법, 설비, 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는 턱없이 부족

*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기법, 설비 등이 없이 일부 계량기에 대한 시험·인증만 가능 (예 가스미터(1,000m^3/H 이하), 수도미터(350mm이하) 등 다수)

* 저울의 경우 국제법정계량기구 상호인정(OIML MAA) 대상 품목이어서 외국에 별도 시험인증 없이 수출이 가능하지만 관련 검사기법 및 설비 등이 없어 대형 저울 등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는 불가능

○ **(신기술 계량기 개발)** 미국, 일본 등 계량분야 리딩 국가들은 국가차원에서 차세대 지능형 IT 융·복합 계량·측정기 개발 등을 집중 지원

* 미국(NIST) : 지능형 전력량계 개발지원, 혈당측정기 개발지원 등
* 일본(NMIJ) : 질량 교정 기술개발(밀도 측정방법 등) 지원 등
*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IT를 융합한 계량기(지능형전력량계, 전기차 충전기 등)의 기술기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

(5) 사업추진절차

①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필요사업 수요조사, 사업기획, 당해연도 및 중기계획 등
사업계획 공고	전담기관	- 일간지,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과제명 등)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 직접접수
평가, 심의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선정 및 발표	전담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과제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	- 협약전 사전검토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성과 평가 등
최종보고 및 정산 등	전담기관, 주관기관	-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②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사업계획 수립·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시행기관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기술성·사업성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원과제선정	국가기술표준원	조정위원회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시행기관
사업수행·관리	전담기관, 수행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진도점검 및 보고(중간평가)	전담기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최종점검·최종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	전담기관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기술료 징수 등)	국가기술표준원, 전담기관	주관기관/전담기관

③ 품질혁신기반구축

사업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 일간.경제지/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과제명, RFP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 실무작업반, 평가위원회 구성.심의 - 사업성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대상과제 보고 - 국가기술표준원 검토 후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수행기관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민간부담금 입금 후 지원
과제수행	수행기관	- 협약내용 변경 신청.승인
중간보고 및 평가	전담기관	- 매 1년 단위 중간보고서 제출 - 현장실사 또는 평가위원회평가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정산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일괄 협약금액 지원 - 전년도 잔액은 이월 사용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현장실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정산
사후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	- 사업 종료 후 성과 활용 보고

④ 계량·측정기술고도화

신규사업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 신청자격, 추진 분야명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개념평가	전담기관	- 개념계획서를 검토.심의하여 신규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를 선정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사전 서면검토	전담기관	-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신규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전담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지원대상과제 보고 및 국가기술표준원 최종 확정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 ↔ 주관기관(참여기관)	- 협약전 사전검토 및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사업비 정산	수행기관 →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 수행기관 사업비정산보고서 제출 및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검토
최종 평가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기술개발목표 달성 등 실적을 종합평가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 전담기관	- 기술료대상기관에 대한 기술료 징수
성과 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 전담기관	- 정보시스템에 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1,974	2,000	4,059	2,059	1.0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6 - 301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변영만), 기술규제정책과장(김남정, 043-870-5520), 연구관(임완빈, 043-870-552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8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무역기술장벽(TBT)의 다변화 및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의 분석·전파, 국제대응·협상 및 정보제공 지원

○ FTA대상국과 전략적인 TBT 협상 방안과 효과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통한 체계적 수행을 통해 기업의 수출판로 지원 및 애로해소 추진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 지원

- TBT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분석 : 1,650백만원

  * WTO TBT 통보문 요약문 번역 및 현황조사 : 2140건 × 70,000원/건 = 150백만원

  * 주요 기술규제 조사 및 규제원문 심층분석 : 300건 × 5백만원/건 = 1,500백만원

- TBT 미 통보문 주요 기술규제 번역·심층분석 : 500백만원

  * 100건 × 5백만원=500백만원

- WTO/TBT 대응전략 및 방안마련 연구 지원 : 200백만원

  * 해외기술규제 조사·전파 : 5건 × 40백만원 = 200백만원

②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WTO TBT 위원회 및 양자협력 회의 참가 : 148백만원

  * 18.5건× 2명×4백만원 =148백만원

- TBT 저변확대를 위한 전문가그룹 운영 및 대응 회의 개최 :58백만원

  * 행사 4회×10백만원=40백만원, 수당 18회×1백만원=18백만원

- TBT 대응 관련 국제법률 자문 : 40백만원

  * 4건× 10백만원= 40백만원

- TBT 활용가이드 제작·배포 : 30백만원

  * 3건× 10백만원 = 30백만원

- TBT 중앙사무국 운영 :23백만원

③ FTA TBT 협상·이행 강화

- FTA TBT 제도분석 : 100백만원

  * 2건× 50백만원=100백만원

- FTA TBT 기술규정 분석 : 110백만원

  * 2건 × 55백만원=110백만원

- FTA TBT·MRA 공동연구 : 200백만원

  * 2건×100백만원=200백만원

④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기술표준분석실 운영 : 360백만원
- TBT 종합지원 포탈 구축 : 140백만원
- FTA TBT 애로해소 : 200백만원
- FTA TBT 교육실시 : 150백만원
- 한·중FTA TBT 공동사무국 설치 : 1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세계 각국은 안전·건강·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통해 무역기술장벽(TBT)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WTO TBT 통보문 : ('06) 875건 → ('10) 1,874건 → ('13) 2,142건→ **('14) 2,239건**

- 최근에는 기술규제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국가로까지 다변화 및 강화되는 추세임

* 現, WTO TBT 통보문의 심층분석을 통한 기술규제 대응은 300건/년 정도로 이는 100억원 이상 수출하는 기업 대상의 규제 사항이며, 20 억원 이상을 수출하는 중소기업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420건/년 정도의 심층분석이 필요

- 선진국의 기술규제는 복잡하고 파급효과가 크며, 개도국의 기술규제는 투명성이 부족으로 수출기업에 돌발적 애로 도출

* 개도국의 기술규제 적용범위도 제품에서 제조공정, 운송, 회수 및 폐기 등 제품 라이프사이클 전반으로 확대되고 사후관리도 강화되는 추세

○ WTO에 통보되지 않는 기술규제는 총 규제의 40% 정도로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미통보 기술규제의 발굴·분석을 통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

○ 양자·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무역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한편, 상대국의 새로운 기술규제 정보를 기업에 전달하여 사전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필요

○ 주요 경제대국과의 FTA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이 수출애로 주요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 FTA TBT 협상의 전략적 대응 및 시험·인증에 대한 MRA 협상등 이행업무의 효과적인 대응필요

○ 중국 비관세 기술규제로 국내 수출기업의 중국 시장진입이 지연되어 FTA 활용촉진을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 필요

- 중국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의 부합화가 저조하며, 중국은 자국과 국제표준과의 차이점을 비공개하여 정보획득 어려움

- 따라서, 中 기술표준 등 기술규제에 대하여 타 경쟁국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중국시장의 사실상 국내시장화 추구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1,974	2,000	4,059	2,059	103
▪ 해외 기술규제 조사, 분석 및 대응 지원	1,202	1,711	2,350	639	37.3
▪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271	289	299	10	3.5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원체계구축	501	-	-	-	-
▪ FTA TBT 협상·이행 강화	-	-	410	410	순증
▪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	1,000	1,000	순증
□ 비목	1,974	2,000	4,059	2,059	103
▪ 일반수용비(210-01)	104	114	272	158	138.6
▪ 임차료(210-07)	26	27	50	23	48.1
▪ 국외업무여비(220-02)	135	136	115	21	△15.4
▪ 사업추진비(240-01)	6	12	12	0	0
▪ 업무용역비(260-01)	1,703	1,711	3,610	1,899	111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정립 및 대응을 통한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향상에 실질적 지원

○ 수출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을 규제 입안 초기단계에 입수·분석하여, 협상, 공식 이의제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의견을 반영

- WTO, FTA TBT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 등 TBT 업무의 국내 총괄 조정기능 및 TBT 중앙사무국 운영
-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우리 기업의견을 반영한 양자 및 다자 협의 신속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2,000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17.1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2.9
‘16	4,059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23.5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3.0 ▪FTA TBT 협상·이행 강화 : 4.1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10.0
‘17	3,775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22.2 ▪T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3.0 ▪FTA TBT 협상·이행 강화 : 3.6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9.0
‘18	3,549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21.0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3.0 ▪FTA TBT 협상·이행 강화 : 3.5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8.0
‘19	1,374	▪WTO/FTA TBT 조사·분석 및 대응, 협상 지원 : 6.2 ▪TBT 대응 및 국제협력 지원 : 2.5 ▪FTA TBT 협상·이행 강화 : 2.0 ▪한·중 FTA TBT 종합지원 : 3.0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WTO TBT 협정 제2.2조, 제10.1조, 제10.2조, 한·미 FTA 협정(‘07)

국가표준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 (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한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 무역장벽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의2 (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훈련·조사·연구·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WTO TBT 협정문

제2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2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이하 생략

제10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정보)

10.1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국내의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아래에 관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10.2 그러나 법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인하여 회원국이 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하는 경우, 이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게 각 문의처의 책임의 범위에 한하여 완전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잘못 송부되어진 모든 문의가 정확한 문의처로 신속히 전달되는 것을 보장한다.

한·미 FTA TBT 협정문

제9.6조 (투명성) 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그 제안을 통보할 때에, 이와 동시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미합중국 질의처, 또는 이 장의 부속서 9-가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조정자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게 그 제안을 전달한다.

부속서 9-가(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는 다음이 주관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미합중국무역대표부 또는 그 승계기관

한·EU FTA TBT 협정문

제 4.10 조(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부속서 4(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1. 대한민국의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이다.

○ 추진경위

- '06.6 FTA/TBT 협상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7.4 OECD 보고서 관련 국무조정실 TBT 중앙사무국 운영 계획보고
- '08.9 TBT 중앙사무국 개설 후 무역기술장벽(TBT) 전담 대응(예산 신설)
- '13.12 WTO/FTA-TBT 협상·이행 및 TBT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규제 대응국 신설
- '15.5.29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기타결 FTA 국내보완대책』에 "한·중 FTA TBT 종합지원" 추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무역기술장벽대응지원	8.13	15	20	20	40.5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3년도 불용액 1.46억원은 예산 절감액

○ ‘14년도 0.26억원과 ’15년도 0.27억원 불용액은 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임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3년	15			15	13.54		1.46
	( )	( )	( )	( )	( )	( )	( )
’14년	20			20	19.74		0.26
	( )	( )	( )	( )	( )	( )	( )
’15년	20			20	19.73		0.27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2년도 예정처 검토 의견

-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확대·강화중인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증액 필요함

○ ‘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 등급**(82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WTO 회원국의 질의처 운영실태

◇ 사무국을 설치한 136개 국가중 113개 국가(83%)가 단일 사무국을 운영

사무국(개수)	1개	2개	3개	4개
국 가	113개 국가	13개 국가	6개 국가	4개 국가

◇ WTO/TBT 협정에 의거, 각 회원국은 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개정시 관련 정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타 회원국의 통보내용을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보급해야 함

○ **EU**

- EU 공동위 산업국에 TBT 지원팀을 운영하여 EU 회원국 27개국에 대한 의견조정 총괄기구 및 대외창구 역할 수행
- FTA 체결국간의 정보제공 및 질의회신 등의 역할

○ **미국**

- 미국 상무부 소속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에 국립표준인증정보센타(NCSCI; National Center for Standards and Certification Information)를 설치하여 연방 및 51개주를 대표하는 중앙질의처 역할 수행
- 상무부 Technical Compliance Center에서 해외기술규제, 업계의 수출애로 모니터링, 미국무역대표부(USTR)과의 협력을 통한 국익 도모

○ **중국**

-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AQSIQ; State General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Quality Supervision and Inspection and Quarantine) 소속 International Inspection and Quarantine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Research Center를 설치하여 중앙질의처 역할 수행

(5) 사업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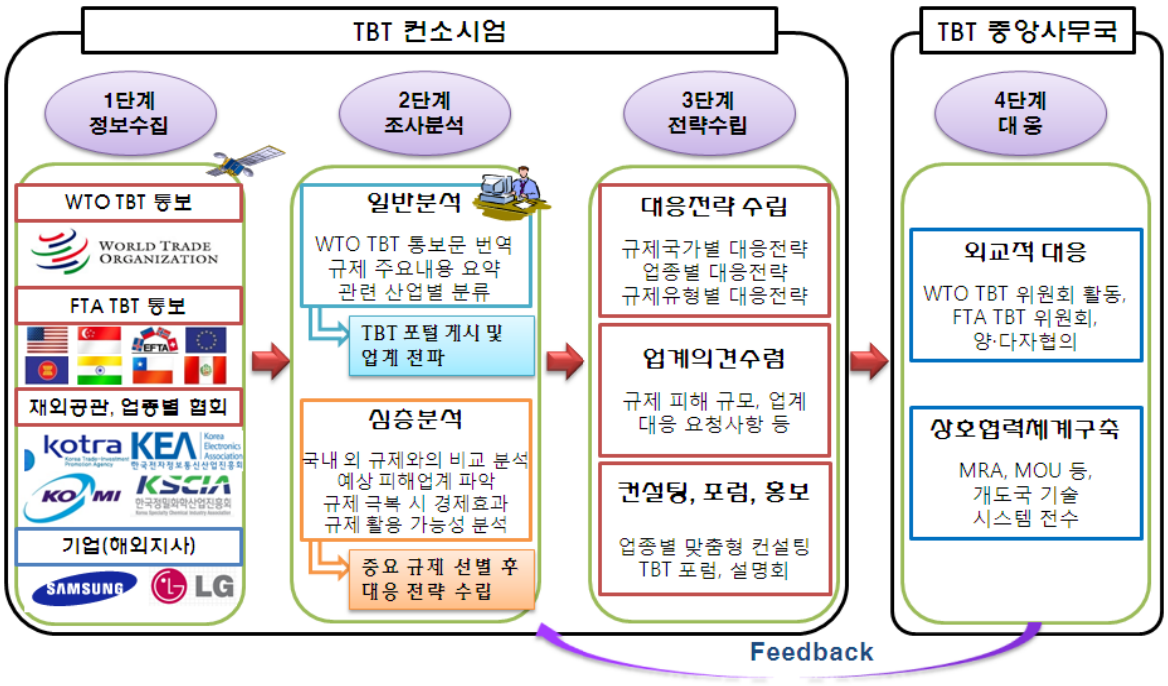

* TBT 위원회에서는 통보시점은 의견수렴 및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6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권장함(협정문 제2.9조)

▪ **TBT 대응 컨소시엄 운영** : 통보문 배포 및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전기전자 등 3개 분야의 19개 협·단체, TBT 통보문 분석 3개 기관, 통상자문 4개 기관 및 해외거점기관(KOTRA) 등 27개 기관으로 TBT 컨소시엄으로 대응활동 수행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2015년 WTO TBT 통보문 현황

< '15년 11월 TBT 통보문 : 총 1,901건 >

- 최근 3년간 TBT 통보문은 15백건 이상

→ '14년 대비 특정무역현안이 증가하고, 개도국의 TBT 통보건수가 선진국보다 크게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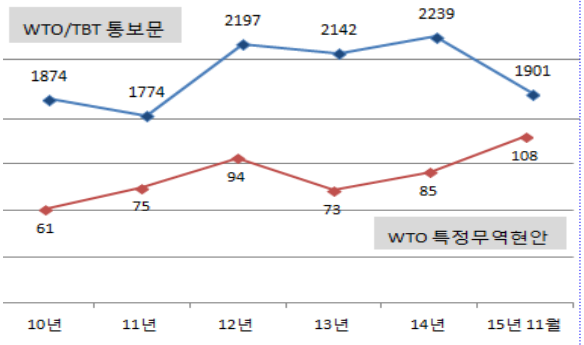

<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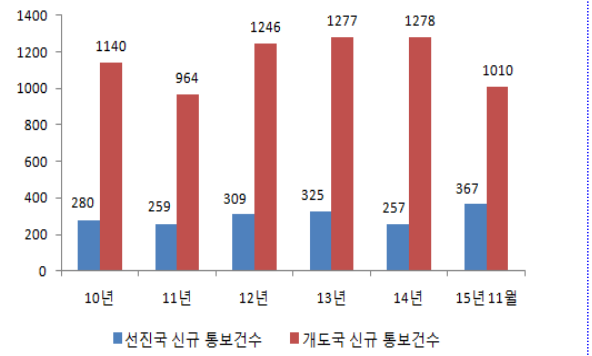

< 선진국 및 개도국의 통보문 >

○ **(국가별)** 20건 이상 TBT를 통보한 국가는 21개국이며, 통보 건수는 1,901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

* 1위 에콰도르 154건, 2위 사우디 116건, 3위 한국 85건, 4위 EU 82건

○ **(산업별)** 식의약품, 전기전자, 화학세라믹의 3개 분야가 60% 차지

- 식의약품, 농수산품, 기계, 자동차, 에너지, 정보디지털 등 6개 분야는 '14년에 비해 증가

산업	통보문	산업	통보문	산업	통보문
식품·의약품	**683건**	전기전자	252건	화학세라믹	201건
자동차	**118건**	생활용품	184건	기계	**90건**
건설	45건	소재	56건	에너지	**63건**
농수산품	**135건**	정보디지털	**35건**	바이오환경	1건

참고 2 TBT 대응 절차 및 TBT컨소시엄 운영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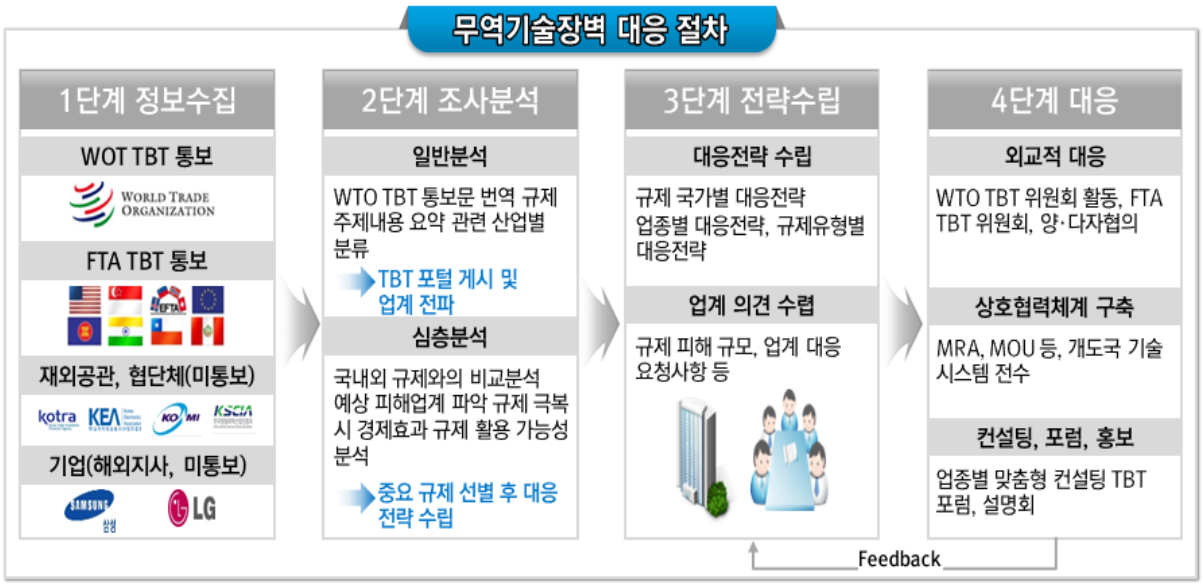

❑ WTO TBT 컨소시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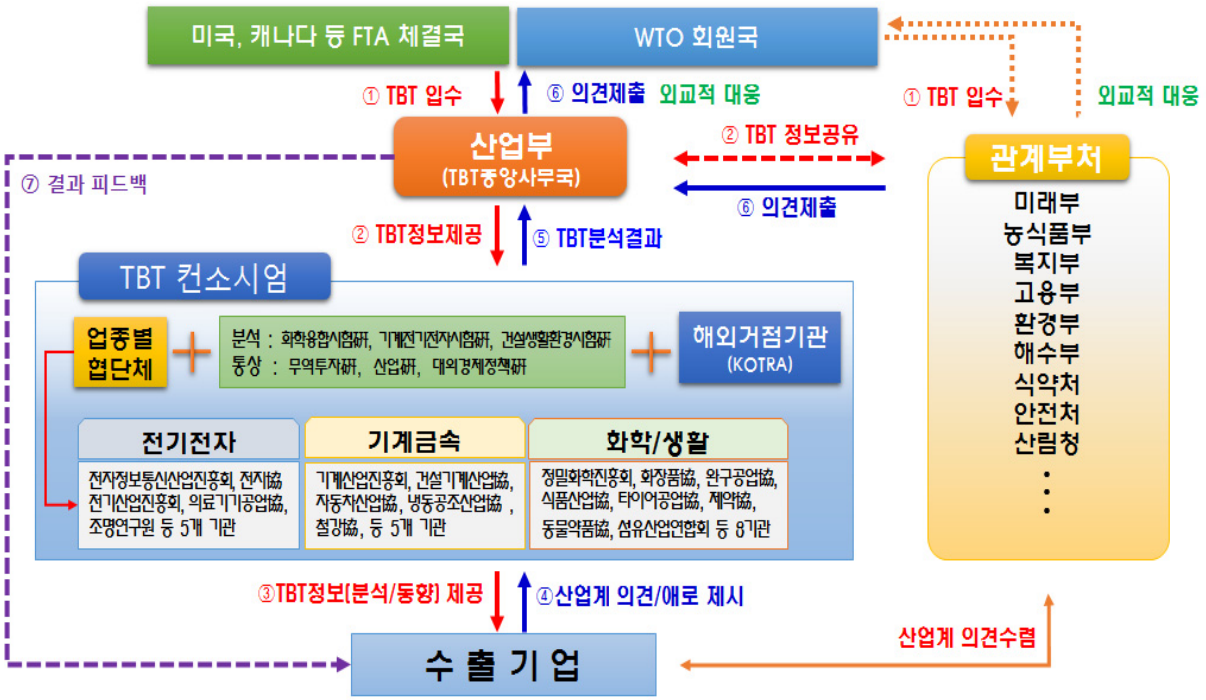

참고 3 국내 FTA TBT 진행현황

'15.12월 기준

단계	FTA	이행관련 주요현안
발효된 FTA (11개)	- 한-칠레('04.4 발효)	
	- 한-싱가포르('06.3 발효)	o 한-싱 MRA 후속조치(KT net)
	- 한-EFTA('06.9 발효)	
	- 한-ASEAN('09.5 발효)	
	- 한-인도(CEPA, '10.1 발효)	o MRA논의(전자, 정보기기)
	- 한-EU('11.7 발효)	o 전기전자 기술전문가 대화체 설치 운영 ('14. 합의사항)
	- 한-페루('11.8 발효)	o 전기제품 안전인증제도 구축지원 ('13. 페루측 요청사항)
	- 한-미('12.3 발효)	o TBT위원회('15. 上) 대응 - 업계 애로사항 수렴
	- 한-터키('13.5 발효)	o 전기전자 MRA 타당성 검토
	- 한-호주('14.12 발효)	o 규제협력방안 논의
	- 한-캐나다('15.1 발효)	o 자동차, 목재 등 기술규제 정보교환
	- 한-중('15.12 발효)	o 상호인정, TBT애로 완화, 제품안전 협력,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등
타결된 FTA (3개)	- 한-콜롬비아('13.2 서명)	o 우리나라만 비준('14.4)됨
	- 한-뉴질랜드('15.3 서명)	o MRA 공동작업프로그램 설치협의('15) - 대상분야 : 전기전자, 정보통신, 전자파, 의료기기, 알콜음료
	- 한-베트남('15.5 서명)	o 건자재분야 표준협력, 시험인증기관 진출지원 등
협상진행 FTA (3개)	- 한-중-일('13.3~'15.5, 7차)	o 3국 TBT협력체계 구축 등
	- RCEP('13.3~'15.8, 8차)	o 아세안, 인도 TBT 애로 반영 등
	- 한-중미('15)	o 한-중미 6개국 FTA 협상 개시 ('15.6)
협상재개 여건조성 FTA (4개)	- 한-인니(CEPA, '12.7~'14.2, 7차) - 한-일본('03~'04) - 한-멕시코('06~'08) - 한-GCC('08~'09)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FTA (4개)	- 한-MERCOSUR, 한-이스라엘, - 한-말레이시아, 한-에콰도르TA	o 한-에콰도르TA TOR 교환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1,119	1,119	-	-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6 - 302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변영만), 기술규제조정과장(오광해, 043-870-5550), 사무관(박재탁, 043-870-5557)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사업규모	해당사항 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관련 규제 개혁 과제 발굴·조사·연구를 통한 규제 개혁 선진화 체계 구축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기술규제 영향평가 : 840백만원

- 각 부처별 기술기준, 시험·검사·인증 관련 법령 제·개정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 : 600건 × 1.4백만원* = 840백만원

* 1건당 : 0.2백만원 × 7day = 1.4백만원

② 미검토 기술규제 발굴 : 140백만원

- 각 부처에서 기술규제 제·개정시 국조실에 미통보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사례 및 이로 인한 기업불편 제거를 위한 사업비

· 전문가 분석 : 100건 × 1.4백만원* = 140백만원

* 1건당 : 0.2백만원 × 7day = 1.4백만원

③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 139백만원

- 경제·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향후 무역마찰 가능성이 있는 신설 및 기존 기술규제 영향평가 시 전문가의 정밀검토를 위한 사업비

· 애로발굴 및 기업실태조사 : 전문가(0.2백만원 × 100건 × 4개분야) = 80백만원

- 기업현장의 기술규제 개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연계 등 현장중심의 기술규제 애로발굴을 위한 사업비

· 자문위원회 : 전문가(0.2백만원×10명×4개분야×6회)+운영비(11백만원) = 59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범부처 기술규제개혁 컨트롤 타워 구축과 규제 총량제 실시 등 국정과제(136-4)의 원활한 수행

-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신설 및 '규제총량제' 도입
- '덩어리 규제의 해제', 일몰제 개혁 추진 계획, 네거티브 규제 개혁

○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술규제 분야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 등록규제건수: ('10) 13,386건 → ('14) 14,928건
- 각 부처 운영 기술기준(2만여종) 및 국가표준(KS, 2만여종)과의 불일치 관리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1,119	1,119	-	-
▪ 기술규제영향평가	-	840	840	-	-
▪ 미검토 기술규제 발굴	-	194	140	△54	△28
▪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규제 발굴	-	85	139	54	64
□ 비목	-	1,119	1,119	1,119	-
▪ 일반수용비(210-01)	-	65	45	△20	△31
▪ 임차료(210-07)	-	30	20	△10	△33
▪ 국내여비(220-01)	-	5	5	-	-
▪ 사업추진비(240-01)	-	10	10	-	-
▪ 업무용역비(260-01)	-	1,009	1,039	30	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각 부처의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시 부적절한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범 부처 기술규제 영향평가 실시(국무총리훈령 제638호, '14.12.31)

○ 시험·검사·인증 중복, 국제표준 불일치 등의 기술규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의 이중부담 감소

○ 과도한 절차, 타 법령과의 내용 중복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행정비용 감소 및 부처 간 칸막이 해소로 기업의 애로 완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1.19	▪ 기술규제영향평가: 8.4 ▪ 국내 기술기준 과 국제기준 및 국가표준 불일치 조사: 1.114 ▪ 분야별 포럼 및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0.826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0.85
'16	11.19	▪ 기술규제영향평가: 8.4 ▪ 미검토 기술규제 발굴: 1.4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1.39
'17	10.41	▪ 기술규제영향평가: 8.2 ▪ 미검토 기술규제 발굴: 1.0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1.21
'18	9.79	▪ 기술규제영향평가: 7.8 ▪ 미검토 기술규제 발굴: 0.99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1.0
'19	9.30	▪ 기술규제영향평가: 7.5 ▪ 미검토 기술규제 발굴: 0.89 ▪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및 피해사례 조사: 0.91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38호, ‘14.12.31)

○ 추진경위

- ‘12.12.12. 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 1. 1. 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3. 2. 국정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에 ’137-5.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
- ‘13. 4.15.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로 개정
- ‘13.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 신설
- ‘14. 4.12. 국정과제 ’136.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에 ’136-4.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국정과제 번호 변경)
- ‘14. 8.27.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제7조제1항제5의2호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 작용 요소의 유무 및 그 정도’ 신설)
- ‘15. 6.12. 제348차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모든 신설 인증에 대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 등 규제심사 적용)
- ‘15.11. 6.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불합리한 기술규제로 기업부담 가중)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	-	11.19	11.19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 기술규제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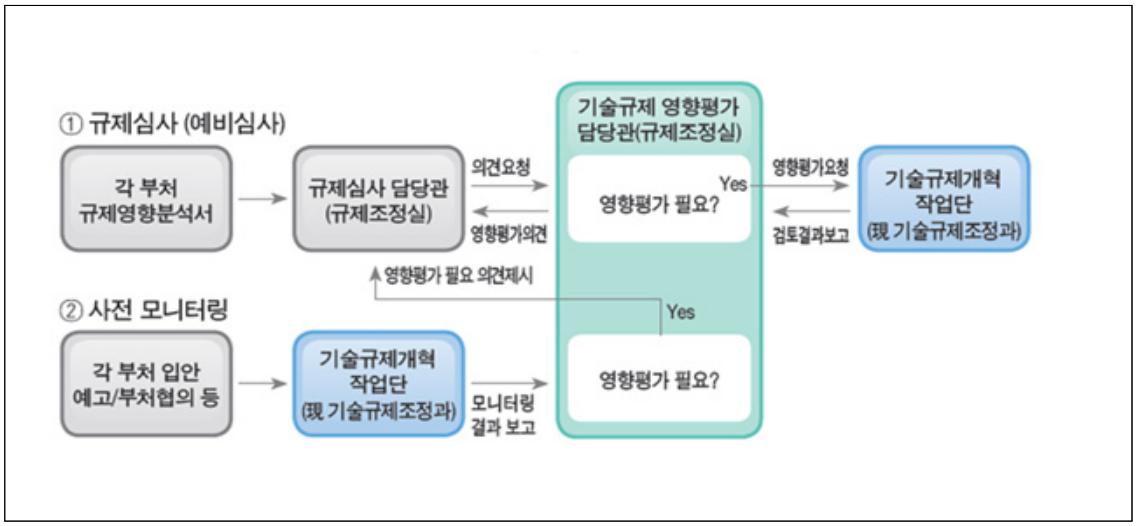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 해당없음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계속, ODA)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900	890	1,115	225	25.3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1 - 303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변영만), 기술규제협력과장(최철호, 043-870-5560), 연구관(이원식, 043-870-556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2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전액보조)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2. 사업목적

○ 개도국의 표준 및 기술규제 체계를 우리와 동질화시키기 위한 교육·컨설팅·포럼·양자프로젝트 등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협력국의 산업발전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 및 시험인증산업 진출 기반 마련

- 한국형 표준·인증체계의 개도국 전수를 통해 기술무역장벽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형 표준·인증체계의 확산 및 공동시험소 설립 지원을 통한 기술 한류의 기반을 구축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한국형 표준체계 보급 지원 : 1,115백만원

- 기술표준 초청과정 운영 : 100백만원(4개국×5명×5백만원)

* (시험시장 참여) 캄보디아, 파라과이, 미얀마, (한-페 산업위 의제 이행) 페루, (기업수출 연계) 방글라데시 등의 개도국 차관급 고위공무원 초청 교육 등

-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 : 585백만원(5개국×117백만원)

  * 개도국 표준체계 역량진단, 세부 협력과제 도출, 시험검사 선진화 마스터플랜 제공, 법령·표준 제정 등의 심화협력 비용(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페루, 파라과이 등)

-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360백만원(2개국×25종×7.2백만원)

  * 파라과이·미얀마에 『공동시험소 설립 → 표준·계량 법령에 공동시험소를 검사기관으로 지정 → 시험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이전 대상 시험장비 재생·이전비용

-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70백만원

  · 수원국 사업 만족도 조사 : 50백만원(2개국×25백만원)

  · 역량진단 전문가 교육·양성 및 포럼 운영 등 : 10백만원

  · 한국형 표준체계 전수를 위한 콘텐츠 개선·개발 : 1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최근 EU, 미국 등 선진국보다는 우리의 수출전략지역인 아세안, CIS,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국가의 기술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

- 동 지역의 표준체계 부재로 인해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무역촉진 필요

○ 수출전략지역의 표준 및 기술규제 체계를 우리와 동질화시키기 위한 교육·컨설팅·포럼·양자프로젝트 등의 협력사업 추진으로 수출시장 확대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우리 표준체계 전수, 공동시험소 설립을 통해 사전 기술무역장벽 대응, 수출활성화 추진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900	890	1,115	225	25.3
▪ 기술표준 초청과정 운영	260	160	100	△60	△37.5
▪ 양자협력 프로젝트 운영	300	300	585	285	95.0
▪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190	170	360	190	111.8
▪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기반강화	150	160	70	△90	△56.3
□ 비목	900	890	1,115	225	25.3
▪ 민간경상보조(320-01)	900	890	1,115	225	25.3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한국형 표준체계 전수)** 수출전략지역 주요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 사업을 추진,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법, 제도, 기술기준, 장비, 인력 등) 전수를 통해,

- 동 국가의 표준체계 부재·상이함으로 인해 시장진입·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및 FTA(TBT) 대응 강화

- 공동시험소 설립으로 우리 시험인증기관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 **(親한국 네트워킹 구축)** 국제표준화 분야에 친한국형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확대하여, 우방국을 확보하고 한국의 영향력 극대화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및 기술위원회 등 임원진출 확대 및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채택 강화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8.9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60백만원 (52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300백만원 (6개국×50백만) ▪ 시험인증기관 건립지원 : 170백만원 ▪ 한국형 표준체계확산 기반강화 : 160백만원
'16	11.15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100백만원 (4개국×5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585백만원 (5개국×117백만) ▪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360백만원 (2개국×25종×7.2백만) ▪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70백만원
'17	12.27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00백만원 (8개국×5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585백만원 (5개국×117백만) ▪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360백만원 (2개국×25종×7.2백만) ▪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82백만원
'18	13.12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00백만원 (8개국×5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585백만원 (5개국×117백만) ▪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360백만원 (2개국×25종×7.2백만) ▪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167백만원
'19	14.04	▪ 기술표준 초청과정운영 : 200백만원 (8개국×5명×5백만) ▪ 양자협력 프로젝트운영 : 702백만원 (6개국×117백만) ▪ 공동시험소 협력 지원 : 360백만원 (2개국×25종×7.2백만) ▪ 표준화체계 보급지원 강화 : 142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추진)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추진경위

- WTO 출범 이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를 위해 시작된「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02년)」의 일환으로, 개도국과 비정기적인 협력사업 시작

  * 2000.11월 ASEAN+3 정상회담 시, VIP께서 ASEAN 국가에 대한 적합성 평가분야 교육훈련계획 발표

-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인,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 제품 유통 등 안전문제가 발생 및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체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도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개도국의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동 사업은 '10.12.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 의해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 요구에 따라 '12년부터 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ODA사업으로 독자 추진

- 2014년 현재 국정과제 21번(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의 사업으로 포함됨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8.9	9.0	9.0	8.9	11.1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 **(지적사항)** 공동시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유휴·불용장비 재생·이전 사업은 타 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6년 협력 대상국인 미얀마로부터 공식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아 사업계획 미흡

- **(평가결과)** KOTRA의 유휴장비 이전사업과 목적 및 내용이 상이하고, 미얀마는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15.9.22)하였기에 국회(예결위, 산업위) 예산 심의시 평가 제외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UN은 UNIDO를 중심으로 시험, 인증, 계량측정, 표준화, 인가 등 5개 분야에서 필요한 TCB(Trade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을 ISO, ILAC, IAF, OIML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추진

○ EU는 EuroeAid(유럽원조협력청)을 '01년에 발족,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국인 독일, 스웨덴, 영국 등과 공동으로 표준, 적합성, 품질관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 장기 전문가파견, 집체교육, 현지워크샵 등

○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국제표준화 우군확보 및 일본기업의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해 표준 및 적합성 평가분야 교육을 추진해왔고, 특히 '01년부터 '아세안 표준인증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 전폭적 예산투입으로 전략적 협력 프로그램 추진

* METI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기구(JICA), 해외기술자연수협회(AOTS), 일본무역기구(JETRO) 등과 함께 민관합동 형태로 운영

○ 미국은 USAid(국제개발처)를 통해 표준·적합성평가 분야 협력 을 추진중이며, WTO가입에 요구되는 국제제도를 갖추도록 수원국의 제도 구축·개선을 통해 자국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

* NIST, FDA, DOC 등의 부처에서 민관합동으로 수행

(5) 사업추진절차

① 보조금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수립(전년 12월)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월)
③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④ 사업집행결과 정산 및 분석·평가 (12월-익년 1월)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1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협력개요

2 협력절차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계속, 정보화)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580	676	755	79	11.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40 - 301

* 담당자 : 기술규제대응국장(변영만), 기술규제협력과장(최철호, 043-870-5560), 사무관(박성환, 043-870-5566)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1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인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표준·인증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유사·중복인증 발굴 등을 통해 기업 규제해소를 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정보시스템(업무포털, 홈페이지 등)에 대한 기능개선·유지보수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대국민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행정·정책업무 수행을 지원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249백만원

- 범부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205백만원

⇨ **유형(유지보수), 비목(위탁사업비)**

구분	금액	요율	유지보수비
범부처 정보시스템 개발	1,948,000,000	9%	175,320,000
상용SW 도입	376,300,000	8%	30,104,000
합 계(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205,000,000

- 표준・인증 DB 현행화 자료조사(모니터링) : 44백만원

⇨ **유형(위탁운영), 비목(위탁사업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0	2.5	5
노임단가		272,075	221,371	189,174
인건비		0	553,428	945,870
월평균일수		21		
직접인건비합계		31,485,248		
제경비	직접인건비×16%	5,037,641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3,652,290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4,017,519		
합 계(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44,000,000**		

②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200백만원

- 제품안전 통합정보 연계 관리 서비스 개발 : 100백만원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업무용역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211	0.65	1.00	1.10	-	14,882,531
설계	124,609					-	18,799,137
구현	166,145					1.12	28,073,321
시험	129,801					1.12	21,932,319
개발금액(VAT포함, 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100,000,000**

- 대국민 홈페이지 ActiveX 대체기능 개발 : 100백만원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업무용역비)**

공정구분	기능점수 단가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유형	품질	언어	
분석	98,648	211	0.65	1.00	1.10	-	14,882,531
설계	124,609					-	18,799,137
구현	166,145					1.12	28,073,321
시험	129,801					1.12	21,932,319
개발금액(VAT포함, 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100,000,000**

③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SW 구매 : 76백만원

-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 52백만원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자산취득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서버	2대	26,000,000	52,000,000
합 계(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52,000,000**

- 업무용SW 구매 : 24백만원

⇨ **유형(기존 시스템 고도화), 비목(일반수용비)**

품명	수량	단가	금액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30개	300,000	9,000,000
PC용 바이러스 백신	500개	30,000	15,000,000
합 계(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24,000,000**

④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운영 : 230백만원

- 내부 정보시스템 운영 : 230백만원

⇨ **유형(위탁운영), 비목(시설장비유지비)**

업무활동		등급별 투입공수(MM)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투입인력		4	12	24
노임단가		272,075	221,371	189,174
인건비		1,088,300	2,656,452	4,540,176
월평균일수		21		
직접인건비합계		173,983,488		
제경비	직접인건비×10%	17,398,349		
기술료	(인건비+제경비)×10%	19,138,184		
부가세	(인건비+제경비+기술료)×10%	21,052,002		
합 계(백만원단위 이하 절사)		**230,000,000**		

□ 지원 필요성

○ 국정과제 수행(정부3.0, 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범정부적 협업시스템(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DB 현행화** 등을 위한 **제반 운영예산 필요**

*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사업 중 정부3.0 자율과제로 추진('14~'16, 98억원)

- 국가표준기본법 개정(2014.12.30 일부개정, 2015.7.1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15.6.30 일부개정, 2015.7.1 시행)을 통하여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확보(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동 시스템은 전자정부 지원사업 관리지침(행자부 예규)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에 따라 **사업 주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예산 확보 필요**

○ 제품안전 통합정보 연계 관리서비스 개발 등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교체 및 업무용SW 구매 등 지속적인 지출소요 발생

- 국가정책조정회의('14.8.21)에서 부처 간 협업과제로 확정된 "제품안전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동 제품안전정보의 연계·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 국표원(리콜, 인증정보), 공정위(소비자위해정보), 안전처(제품화재정보), 관세청(통관정보)
-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원활한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마련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IT기반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580	676	755	79	11.7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	249	249	순증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15	120	200	80	66.7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SW 구매	133	84	76	△8	△9.5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운영	242	300	230	△70	△23.3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	90	84	-	△84	순감
▪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구축	-	88	-	△88	순감
□ 비목	580	676	755	79	11.7
▪ 일반수용비(210-01)	25	24	24	0	전년동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42	300	230	△70	△23.3
▪ 위탁사업비(210-15)	-	-	249	249	순증
▪ 업무용역비(260-01)	115	208	200	△8	△3.8
▪ 자산취득비(430-01)	198	144	52	△92	△63.9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범정부적 협업 시스템인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표준·인증 정보제공 및 유사·중복인증 발굴 등 기업 규제해소 지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안정적 운영·관리를 통한 행정·정책업무 수행 및 대국민서비스 지원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6.76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1x12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내용연수 경과 전산장비 연차적 교체 및 업무용SW 구매(1x84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운영(1x3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고도화(1x84백만원) ▪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구축(1x88백만원)
‘16	7.55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1x249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1x2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SW 구매(1x76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운영(1x230백만원)
‘17	7.55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1x249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1x2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SW 구매(1x76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운영(1x230백만원)
‘18	7.55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1x249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1x2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SW 구매(1x76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운영(1x230백만원)
‘19	7.55	▪ 범부처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운영(1x249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기능개선(1x200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및 업무용SW 구매(1x76백만원) ▪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운영(1x230백만원)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 범정부적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경위

- ‘07.12월 : IT 기반의 국가표준 정보화 전략(’08~‘12) 수립
- ‘09.2월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부처별 실행계획(’09~‘12)에 반영

- ‘12.7월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 지시
- ‘13.5월 : 국정과제 ‘정부3.0’(행자부 주관)의 세부 사업과제로 반영
- ‘14.3월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14.5월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14.6월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IT기반 기술표준정보화체계구축	6.8	6.46	5.95	6.76	7.5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2년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백만원
○ ‘13년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6백만원
○ ‘14년 불용 : 조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5백만원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2년	6.8				6.71		0.09
	( )	( )	( )	( )	( )	( )	( )
’13년	6.46				6.1		0.36
	( )	( )	( )	( )	( )	( )	( )
’14년	5.95				5.8		0.15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201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지적사항	답변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노후서버 교체비용을 견적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조달단가에 비해 높게 편성하였으므로, 조달단가와의 차액(2,251만원)을 감액 조정 필요	○ 국가기술표준원 노후서버 신규구입은 조달품목을 구입하여야 하나, 10개 정보시스템의 실제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부득이 조달품목보다 높은 사양의 서버 구입비용 편성 - 조달품목 사양은 10개 정보시스템 탑재 시 메모리와 디스크 용량이 부족 * 조달품목 사양 : 메모리/디스크 32GB/900GB (2개 정보시스템 탑재) * 국표원 필요사양 : 메모리/디스크 64GB/2480GB (5개 정보시스템 탑재) - 조달품목과 모델명은 동일하지만 서버 사양이 달라 구매비용 차이 발생

○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우수(종합점수 83.0점)

- 지적 및 조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국내 유사사례

- 표준·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 시스템과 사업목적은 동일하지만, 단편적인 표준·인증 정보로 제한됨

기관명	개 요	제공 서비스
한국표준협회	• 산업표준본부 및 국제인증본부를 중심으로 표준·인증관련 업무 운영 • 국제표준기구(ISO)와 해외표준관련 국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표준보급 활동을 수행하며, 수집된 국제표준을 등록하여 관리함	• 국가표준정보망(KSSN) - KS, ISO, IEC, JIS 등의 최신 표준 현황 - KS 및 국제인증 온라인 구매서비스 - KS 및 해외표준 전자문서 열람서비스 • Istandard 시스템 - 단체표준 및 민간표준화 활동 내역 • KS인증지원시스템 - KS인증 신청, 발급, 재발급에 관한 통합관리 • 국제인증 조회서비스 - 국제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KSA홈페이지 - KS인증제도의 전반적인 정보 • KS 및 ISO 표준관련 교육 • 민간(단체)표준화 활동 및 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표준관련 업무 : 표준화본부를 중심으로 표준관련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시험인증관련업무 :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소프트웨어시험인증연구소	• 표준 관련 정보검색 서비스 • 용어사전 서비스 • 정보통신 부문의 시험인증관련 종합 서비스

○ 외국 사례

- 각국의 표준화 관련기관에서도 홈페이지 등 정보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해당국(기관)에서 다루는 표준·인증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

국가	기관명	소개	정보화 현황
미국	ISO	• ISO는 각국의 표준화 기관에 의해 구성된 범세계적 규모의 연합으로 한 개국 당 한 개의 단체가 가입	• 국제표준협회(ISO) 포털 운영 - 표준, 표준개발, 표준 Store 서비스 - 포털 메인 화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표준 표시 • 국제표준협회(ISO)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준관련 각종 주요 정보들을 연도별로 정리하여 PDF로 통계 정보 제공 • 국가별 진행 중인 표준 개발 현황 조회 가능
	NIST	• '96. 국가기술 이전 및 진흥법(NTTAA3))에 따라 국가표준(GUS)의 민간표준 (VCS) 부문을 활용(Use) 강화를 위해 설립	• SIBR (Standards Incorporated by Reference) DB - 국가표준, 민간표준, 국제표준과 연방규정을 연계하여 검색 - '12년 기준 9964건의 표준데이터 보유 • 참조표준 DB - 참조표준 데이터의 효율적인 배포 및 활용을 위해 1960년대 구축 • NIST 발표 최신 정보 검색기능 제공 - 키워드, 제목, 저자 등을 결합검색 제공
	ANSI	• 미국의 산업 표준 제정 기구 • 민간이면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자발적 합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조정 역할을 함	• 미국국가표준 포털 - 미국 이외에 중국, 인도, 한국의 표준 정보 제공 - 미국표준협회의 여러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음 - 표준개발조직 활동 사항, 표준 검색 방법 및 사이트, 표준 구입 사이트, 인증기관 목록 검색 사이트를 링크 제공 • 인증서비스 관리 포털 - ANSI에서 인정한 제품인증기관 목록 및 각 기관별 세부 정보 제공과 인증과 관련된 각종 사항에 대한 정보 • E-표준 교육 포털 - 표준과 관련된 약어, 키워드 별 프로그램, 교육 일정, 표준관련 수업정보를 링크 또는 직접 제공하고 있음 • 표준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
캐나다	SCC	• 캐나다 산업부 산하 표준위원회로, 국가표준 제정/운영	• Standards Store - 정부주도의 표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 민간이 주도하는 캐나다 표준협회 사이트와 링크 서비스 제공 - 캐나다 국가표준 및 국제 표준의 변경사항에 대해 '표준코드, 표준설명, ICS 코드, 시행일자, 변경 사항, 관련 키워드'별 요약 정보 제공
독일	DIN	• 민간 비영리 협회로, 기술부문 전반에 걸쳐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독일 유일 표준 제정 기관	• 표준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 및 웹사이트, C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제 표준 정보의 접근 및 이해도를 높임
영국	BSI	• 영국 산업계에 의해 형성, 조직되어 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고 있음 • 유럽통합표준의 제정 및 ISO/IEC의 국제표준화 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 담당	• BSOL(British Standards Online) - 영국규격으로 바탕으로 유럽, ISO, IEC 규격 중 영국 국가규격으로 채택된 규격에 대하여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 자국 국내/외 규격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유사아이템에 대한 검색 기능의 제공으로 보다 더 정확한 구매 규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5) 사업추진절차

○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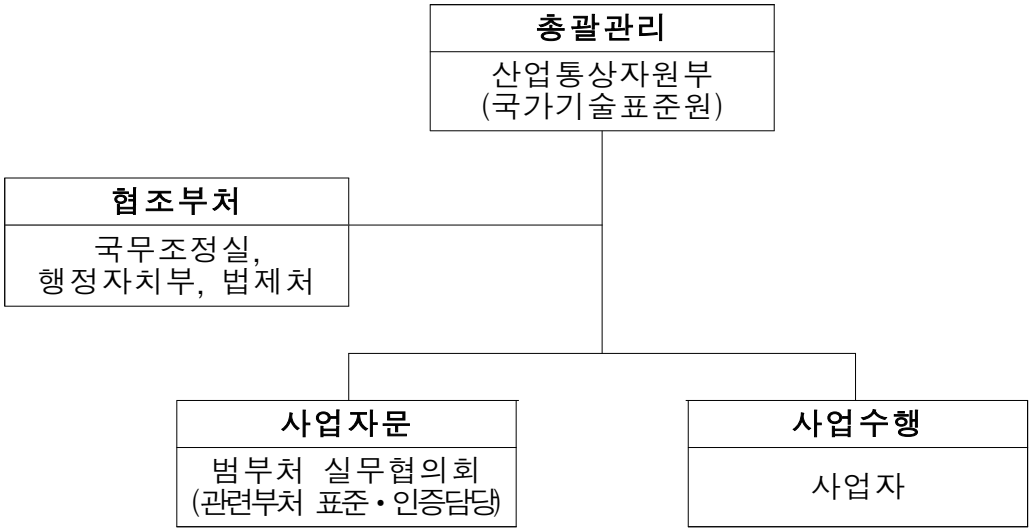

○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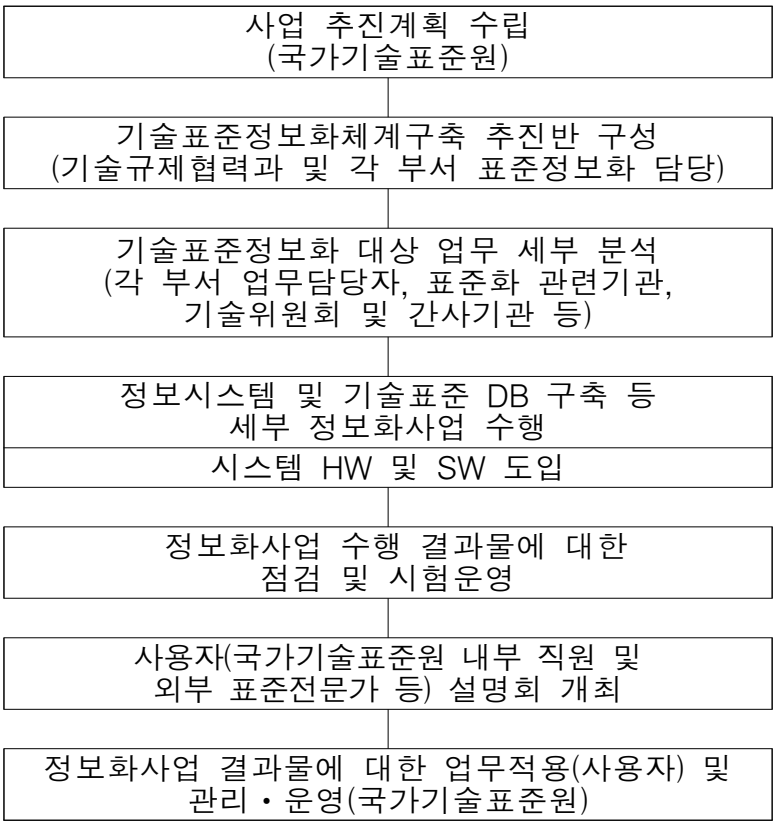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사항 없음

6. 참고자료

참고1 범부처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범정부적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표준·기술기준·인증정보 획득 및 업무처리를 단일창구에서 처리하는 원스톱지원체계 마련

□ 추진목적

○ 각 부처에서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표준·기술기준·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유사한 인증제도 및 중복시험 요구로 기업의 비용과 부담 야기

- 기업은 제품 시장출시에 요구되는 표준, 기술기준, 인증정보가 26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정보파악에 한계

  * 표준 : 2만여종(2개부처), 기술기준 : 2,324종(17개부처), 인증 : 221개(26개부처)

- 인증시험 항목과 기준이 동일해도 별도의 시험성적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반복시험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간과 비용부담 유발

  * 중소기업 평균 보유 인증 수 : 14.9개, 연간 보유비용 : 기업 당 3,230만원(대한상의,'10년)

□ 추진경과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VIP 보고(국경위, '12. 7)

  * 국가표준·인증 선진화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필요성 공감 및 조속히 구축지시

○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VIP 지시 및 후속조치 이행('14. 3)

  *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것은 의견제시 가능토록 실시간 정보 제공할 것

○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14. 5)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도입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조기구축 요구

○ 총리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14. 6)

  *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 보고 시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중요성 언급

□ 사업내용

○ 각 부처에 산재된 표준·기술기준·인증 정보를 수요자 중심(소비자, 기업, 정부 등)으로 통합하여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표준·인증 통합 업무지원시스템, 통합 DB 및 통계관리시스템 등 25개 시스템 개발

- 행자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①기반구축 → ②안정화 → ③개방·확대의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14~'16년, 98억원)

< 범부처 국가표준 · 인증 통합정보시스템 목표체계도 >

□ 기대효과

○ 표준·기술기준·인증 정보 및 관련 행정서비스를 단일창구(Single Window)에서 제공하여 기업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부처간 칸막이 해소로 유사·중복인증(기준) 해소기반 마련

* 범부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수요자 정보획득 및 인증비용 절감 등 매년 약 3,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발생

국가표준 · 인증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현황(1차,14년도)

구분	시스템명	주요 업무기능	설치장소
대국민 검색포털 구축	표준·인증 서비스 포털시스템 (e-나라표준인증)	- 사용자별 표준·인증·기술 기준 정보검색 및 관련지원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정보제공/업무지원시스템 접속단일창구 - 사용자 권한통합관리, 맞춤검색 제공	통전 (대전)
범부처 협업시스템 구축	표준업무지원시스템	- 국가표준 제·개정 등 표준개발 온라인 행정업무 처리지원(온나라시스템 연계) - 표준 신청부터 고시, 이력관리 기능포함	
	인증업무지원시스템	- 정부 법정인증 온라인 행정업무 처리지원 - 기업 인증신청, 평가, 인증서 발급 일괄 업무처리 지원 기능포함	
	전문가관리시스템	- 표준개발, 인증평가 전문가 신상정보, 경력 등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위원회관리시스템	- 표준개발, 인증평가 관련 위원회관리 지원시스템(표준회의, 인증위원회, 전문위원회, 기술심의회 등)	
	기술기준 정보관리시스템	- 정부운영 기술기준 정보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 기술기준 분류, 이력정보, 법령정보 연계 기능(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등 포함	
	인증제도 정보관리시스템	- 정부운영 인증제도 정보 통합관리 지원시스템 - 인증분야, 인증품목, 인증절차, 인센티브 현황 등 세부정보 관리	
통합 DB 체계구축	데이터표준화 관리시스템	- 표준, 기술기준, 인증 DB 통합관리 기능 지원시스템 - 데이터 중복, 불일치 제거, 오류검증 등	
정보연계 체계구축	정보연계관리시스템	- 표준·기술기준·인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련정보 연계관리 지원시스템 - '14년 6개기관 정보연계 완료 (국조실, 법제처, 표준협회 등)	
안정적 인프라구축	IT 및 보안인프라	- 서비스 무중단 시스템 운영 인프라 - 웹서비스, 서버보안, 솔루션 등 도입	

참고2 정보시스템 현황

구분	시스템명	주요 업무기능	설치장소
국표원 정보시스템 (대국민)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우리원 소개, 공지사항, 각종 행사, 기술자료 및 분야별 주요업무 게재, e-홍보관 등	원내
	TBT 종합정보허브 (www.knowtbt.kr)	TBT 중앙사무국 소개, WTO 무역기술장벽, TBT 통보문, 국내·외 기술규제정보 제공	
	e-KOLAS (www.kolas.go.kr)	인정, 평가, 사후관리 등 KOLAS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	
	한국제품인정제도 (www.kats.go.kr/kas)	KAS 소개, KAS 인정기관 및 인정분야 정보 등	
	KOLAS 사이버교육 (www.kolas.go.kr/edu)	KOLAS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시험측정자, 내부감사자 등 KOLAS 운영인력 온라인 교육	
	사이즈코리아 (sizekorea.kats.go.kr)	인체치수자료 및 표준인체 측정법 소개	
국표원 정보시스템 (업무처리)	국가기술표준원 업무포털	업무 관련 자료 공유, 업무처리시스템·홈페이지 링크 및 내부 게시판 등	
	표준화과제관리시스템	국표원에서 추진하는 경상연구, 학술연구용역사업, 표준기술력향상사업 통합관리	
	정책홍보도우미	정책고객들에게 국내외 표준동향, KS 고시정보 등 정책정보를 e-mail을 통해 일괄 발송	
	전자도서관시스템	전자도서의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조회 및 링크사이트 정보 등	

참고3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현황

□ 홈페이지, 업무처리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시스템명	전산장비	
	모델명	수량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P ProLiant BL460c Gen8	1
국가기술표준원 통합검색	HP ProLiant BL460c Gen8	1
사이즈코리아	HP ProLiant BL460c Gen8	1
TBT 종합정보허브		
KOLAS 사이버교육		
정책홍보도우미		
통합 DB	HP ProLiant BL460c Gen8	1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HP ProLiant BL460c Gen8	1
KS표준 e-Book열람시스템		
리눅스 DB	HP ProLiant BL460c Gen8	1
표준화과제관리시스템		
e-KOLAS	IBM P720	1
e-KOLAS DB	IBM P720, DS3500, SAN24B-4	1
PDF 변환	패키지 SW 제조사 납품	1
장애관리시스템	IBM X3650M3	1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비스	삼성 ZSS132-Q-001W	1
테스트서버	HP ML570 G4	1
테스트서버	IBM X3650M3	1
합 계		**13**

□ 상용 패키지 SW

패키지명	패키지 SW		
	모델명	용도	수량
제품명 : EnterPrise3.0	제조사 : Nprotect	보조기억매체 Agent	1
제품명 : IPKeeper	제조사 : INIMAX	망관리 SW	1
제품명 : e-Book열람시스템	제조사 : 이파피루스	KS표준열람 서비스 SW	1
제품명 : SOLAS	제조사 : 아이네크	도서관리SW	1
제품명 : BiglookWas	제조사 : 이븐스타	서버접근제어 및 취약점 점검	1
제품명 : ThunderMail 4.5	제조사 : (주)앤드와이즈	정책고객관리	1
제품명 : D'amo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DB 암호화	1
제품명 : DestinyEDM4	제조사 : 사이버다임	전자문서관리	1
제품명 : Oracle 9i	제조사 : Oracle	전자문서관리 DB	1
제품명 : Privacy-i	제조사 : 소만사	개인정보검색SW	1
제품명 : PDF-Gateway	제조사 : 이파피루스	PDF변환SW	1
제품명 : CharkraMax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개인정보 접근제어	1
제품명 : NetClient	제조사 : ㈜닥터소프트	SW자산관리	1
제품명 : SafeUsb	제조사 : 닉스테크(주)	보안USB	1
제품명 : Rpoint	제조사 : 코드링크	인터넷망 문서삭제SW	1
제품명 : Backup EXEC 3600	제조사 : ㈜시만텍	백업SW	1
제품명 : Jeus+Webtob	제조사 : 티맥스	e-KOLAS WAS SW	1
합 계			**17**

□ 전송·보안장비 및 기타 전산장비

구분	장비명	모델명, 제조사	수량
전송장비	업무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업무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68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
	인터넷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9700 제조사 : Alcatel Lucent	1
	인터넷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제품명 : OmniSwitch OS68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
	업무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300 제조사 : Alcatel Lucent	24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제품명 : OmniSwitch OS6400 제조사 : Alcatel Lucent	40
	업무망 L4 스위치	제품명 : PIOLINK 제조사 : Application Switch 3000	1
	소계		75
보안장비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Secureworks 2500 제조사 : 어울림정보기술	1
	업무망 방화벽	제품명 : Secureworks 4.0 K1000 제조사 : 어울림정보기술	1
	인터넷망 방화벽	제품명 : WeGuardia 제조사 : 퓨처시스템	1
	인터넷망 웹방화벽	제품명 : 와플2.0 제조사 : 펜타시큐리티	1
	업무망 망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인터넷망 망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업무망 PC보안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인터넷망 PC보안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업무망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인터넷망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서버	제품명 : X3550M3 제조사 : IBM	1
	소계		10
스토리지	보조기억매체스토리지	제품명 : DS3512 제조사 : IBM	1
백업장비	백업장비	제품명 : DL180 G6 제조사 : HP	1
합 계			**87**

참고4 국가기술표준원 전산장비 사용연수 현황

구분 (내용연수)	장비명	모델명	수량	도입연월	사용연수 ('16년)	비고
컴퓨터서버 (6년)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HP ProLiant BL460c Gen8	1	2013.12	3	사용
	국가기술표준원 통합검색	HP ProLiant BL460c Gen8	1	2013.12	3	
	사이즈코리아	HP ProLiant BL460c Gen8	1	2013.12	3	
	TBT 종합정보허브					
	KOLAS 사이버교육					
	정책홍보도우미					
	통합 DB	HP ProLiant BL460c Gen8	1	2013.12	3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HP ProLiant BL460c Gen8	1	2013.12	3	
	업무포털시스템 통합검색 검색엔진					
	국가기술표준원 통합검색 검색엔진					
	표준정보 통합연계검색 검색엔진					
	업무포털시스템					
	리눅스 DB	HP ProLiant BL460c Gen8	1	2013.12	3	
	표준화과제관리시스템					
	e-KOLAS	IBM 8202-E4C	1	2012.12	4	
	e-KOLAS DB	IBM 8202-E4C	1	2012.12	4	
	PDF 변환	패키지 SW 제조사 납품	1	2009.01	7	교체
	장애관리시스템	IBM X3650 M3	1	2010.08	6	사용
	홈페이지 다운로드 서비스	삼성 ZSS132-Q-001W	1	2007.12	9	교체
	테스트서버	HP ML570 G4	1	2007.12	9	
	테스트서버	IBM X3650 M3	1	2010.08	6	사용
서버 소계		13대(교체대상 3대)				

네트워크 서비스 집중장치 또는허브 (7년)	업무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Alcatel Lucent OmniSwitch OS9700	1	2006.09	10	교체
	업무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Alcatel Lucent OmniSwitch OS6800	4	2006.09	10	
	인터넷망 백본스위치(메인백본)	Alcatel Lucent OmniSwitch OS9700	1	2010.12	6	사용
	인터넷망 백본스위치(서브백본)	Alcatel Lucent OmniSwitch OS6800	4	2010.12	6	
	업무망 액세스스위치	Alcatel Lucent OmniSwitch OS6300	24	2006.09	10	교체
	인터넷망 액세스스위치	Alcatel Lucent OmniSwitch OS6400	40	2010.12	6	사용
	업무망 L4 스위치	PIOLINK Application Switch 3000	1	2006.09	10	교체
전송장비 소계		75대(교체대상 30대)				
방화벽장치 (6년)	업무망 방화벽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2500	1	2010.12	6	사용
	업무망 방화벽	어울림정보기술 Secureworks 4.0 K1000	1	2008.11	8	교체
	인터넷망 방화벽	퓨처시스템 WeGuardia	1	2010.12	6	사용
	인터넷망 웹방화벽	펜타시큐리티 Wapples 2.0	1	2006.12	10	교체
컴퓨터서버 (6년)	업무망 망관리시스템서버	IBM X3550 M3	1	2010.12	6	사용
	인터넷망 망관리시스템서버	IBM X3550 M3	1	2010.12	6	
	업무망 PC 보안서버	IBM X3550 M3	1	2010.12	6	
	인터넷망 PC 보안서버	IBM X3550 M3	1	2010.12	6	
	업무망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서버	IBM X3550 M3	1	2010.12	6	
	인터넷망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서버	IBM X3550 M3	1	2010.12	6	
하드디스크 어레이(6년)	보조기억매체스토리지	IBM DS3512	1	2010.12	6	사용
컴퓨터서버 (6년)	백업장비	HP DL180 G6	1	2010.12	6	
보안장비 및 기타 전산장비 소계		12대(교체대상 2대)				
합계		**100대(교체대상 35대)**				

참고5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개요 및 계획

□ 추진개요

○ 제품안전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동 제품안전 정보**의 **연계·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 "수입제품안전관리 협업" 등 4개 과제에 대해 "국가정책조정회의('14.8.21)" 상정

** 국표원(리콜, 인증정보), 공정위(소비자위해정보), 안전처(제품화재정보), 관세청(통관정보)

○ 이를 통해 공유된 정보는 제품안전정책에 활용하고, 소비자·기업에 "**정부3.0**" 차원의 **정보제공서비스 제공 추진**

□ 추진경과

○ '14. 4. 10. 관계기관 담당자 회의, 동 협업과제 초안 검토

○ '14. 7. 11. 관계기관 과장급회의, 협업안 최종협의

○ '14. 8. 21.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토론

* **기재부 차관님 말씀내용** : 사고정보 등에 대한 내용은 다함께 공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확대 추진하기 바람

「붙임 1」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업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자료 중 일부)

과제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부(국표원), 공정위·소비자원, 안전처, 관세청)

□ 현황

○ (국표원) 인증정보, 리콜정보 등 제품안전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시스템"** 운영

* (년간) 인증정보 약 5만건, 국내·외 리콜정보 약 2천건, 소비자 사고조사 의뢰 약 100건 등

○ (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해, 각종 소비자 피해 및 위해정보 수집·관리

* 전국 66개병원, 소방서,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관리, 연간 약 2만건(식·의약품, 자동차 등 제외)

○ (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화재정보 및 통계자료 운영

* 연간 전기제품으로 인한 화재 약 7천~8천건 (화재요인별, 제품별 등 통계자료 운영)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수입 통관정보 관리·운영

* 세관장확인 대상 주요 생활제품(348개)의 년간 수입신고 건 약 190만건

□ 검토배경

○ 분산된 정보를 연계한 통합관리·운영으로 제품사고조사 및 제품안전 관련 제도개선 등에 적극 활용할 필요

- 또한, 관련정보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 및 기업에 대국민 정보 공개서비스 필요(**"정부 3.0"**)

□ 협업방안

○ “국표원”이 관련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품안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정보는 **기관 간 실시간 공유**

- 수집된 정보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위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소비자 및 기업에 공개

<부처별 공유대상 정보>

부처	공유대상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시스템”의 사업자 제품사고 보고정보, 사고조사 정보, 리콜정보, 제품인증정보, 수입정보 등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정보 중 어린이 및 생활가전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정보
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생활제품 사고발생 현황 및 통계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의 통관정보(수입자, 통관 수량, 제품정보)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체계도>

「붙임 2」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도별 소요예산

(백만원)

년도	금 액	산 출 근 거
‘16년	100	○ **제품안전 통합정보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제품안전 유관기관 간 시스템 연계(10개 기관) : 60백만원 - 인증・리콜・위해・안전성조사・불법제품 통합DB 구축 : 40백만원
‘17년	100	○ **제품안전 통합정보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정보연계 확대(20개 기관) : 50백만원 - 통합모니터링 및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50백만원
‘18년	100	○ **제품안전 통합정보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60백만원 - Open API 서비스 확대 : 40백만원
‘19년	100	○ **제품안전 통합정보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제품안전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 확대(30개기관) : 80백만원 -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20백만원
‘20년	100	○ **제품안전 통합정보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IT인프라 구축 : 50백만원 - 보안인프라 강화 : 50백만원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 감 (B-A)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33	1,468	1,451	△17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6 - 7100 - 7134 - 301

* 담당자 : 지원총괄과장(이용구), 사무관(이승준, 043-870-5328), 주무관(염동석, 043-870-5331)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 '16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임차료 : 400백만원

- 청사이전에 따른 통근버스 4대 운영

② 시설장비유지비 : 987백만원

- 산출내역 : 건물유지비(49백만원), 기계,통신 및 전기시설유지비 (102백만원), 청사관리용역비(836백만원)

③ 차량선박유지비 : 20백만원

- 산출내역 : 평균연간유류비(3백만원) x 6대, 평균연간수리비(0.3백만원) x 6대

④ 연금지급금 : 42백만원

- 산출내역 : 일용직퇴직금(32백만원), 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료(10백만원)

⑤ 지식관리 포상금 지원 : 2백만원

▪ 산출내역 : 포상금 등(2백만원)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33	1,468	1,451	△17	
▪ 임차료		399	400	1	
▪ 시설장비유지비	1,044	1,003	987	△16	
▪ 차량선박유지비	27	21	20	△1	
▪ 연금지급금	60	43	42	△1	
▪ 지식관리포상금지원	2	2	2		

4. 중기재정 소요전망('15~'19)

□ 사업운영 기본방향

○ 국가기술표준원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 예산사업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14결산	'15예산 (A)	'16예산 (B)	증감 (B-A)	%
□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33	1,468	1,451	△17	
▪ 임차료		399	400	1	
▪ 시설장비유지비	1,044	1,003	987	△16	
▪ 차량선박유지비	27	21	20	△1	
▪ 연금지급금	60	43	42	△1	
▪ 지식관리포상금지원	2	2	2		

(억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15	14.7	▪ 임차료 : 399백만원 (버스 4대×99백만) ▪ 시설장비유지비 : 1,003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1백만원 ▪ 연금지급금 : 42백만원 ▪ 지식관리포상금지원 : 2백만원
‘16	14.5	▪ 임차료 : 400백만원 (버스 4대×99백만) ▪ 시설장비유지비 : 987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0백만원 ▪ 연금지급금 : 42백만원 ▪ 지식관리포상금지원 : 2백만원
‘17	14.5	▪ 임차료 : 400백만원 (버스 4대×99백만) ▪ 시설장비유지비 : 987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0백만원 ▪ 연금지급금 : 42백만원 ▪ 지식관리포상금지원 : 2백만원
‘18	14.6	▪ 임차료 : 400백만원 (버스 4대×99백만) ▪ 시설장비유지비 : 987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1백만원 ▪ 연금지급금 : 42백만원 ▪ 지식관리포상금지원 : 2백만원
‘19	14.6	▪ 임차료 : 400백만원 (버스 4대×99백만) ▪ 시설장비유지비 : 987백만원 ▪ 차량선박유지비 : 21백만원 ▪ 연금지급금 : 42백만원 ▪ 지식관리포상금지원 : 2백만원

5. 고려사항

(1) 추진경위

- 표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 및 표준정책 관련한 신속한 이동성 확보를 위한 차량지원 필요

- 표준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포상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포상제도 운영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5	11.6	11.3	14.7	14.5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해당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없음

(4)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